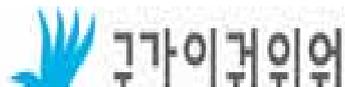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2005년도 국가인권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5. 12.

연구수행기관 천안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 상 균(천안대학교)
연구원 이 성 호(한국외국어대학교)
송 병 호(천안대학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
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요약

(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제1장 서론

한국의 전투경찰제도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이다. 전·의경의 복무는 각종 시위진압작전, 야간방범순찰, 상황대기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등 과중한 격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수한 조직문화와 업무특성 등으로 전·의경은 구타·가혹행위 등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이는 인권침해 뿐 아니라 자살·복무이탈 등의 제2차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의경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기본적인 인권침해실태는 물론이고 내무생활, 근무관계, 복지 및 의료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서 현재 복무 중에 있는 전·의경대원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인권상황의 현재적인 실태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현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응답의 불실성에 따라 인권실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조사결과와 통계수치에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또 경찰당국에 연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협조가 미흡하여 경찰의 공식적인 자료를 연구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연구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제2장 전·의경 인권에 관한 기초연구

제1절 전·의경 제도의 연혁

1970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일반경찰관으로 구성된 전투경찰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병력자원으로 전환되어 군대식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전경제도의 근거법률은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동시행령으로서 주요임무는 대간첩작전(대비정규전, 국가중요시설방호, 요인 및 신변보호, 작전상 취약요소제거 및 경비임수수행)이며, 1976년 9월1일 창설하였다. 의경은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동시행령에 의해 시위진압, 범죄예방순찰, 교통, 유치장근무 등 치안보조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1982년 12월 31일 창설되었다.

제2절 전·의경의 인권현황과 보호실태

전·의경의 휴가, 외출·외박제도 등 기본적인 휴가및 외출, 외박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월급여와 개인용품비, 기본급식비 등이 매월 지급되고 증식비, 특식비, 휴가비, 의료비 등은 개인별로 해당항목이 발생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전의경의 시위진압출동이 매우 빈번히 동원되며, 경찰인력은 시위인원 대비 약 1:1.3정도로 인해전술식 시위진압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의경의 사고발생은 자살은 10개년 평균 10.6명이고, 자해는 년평균 8.3명이었다. 구타 및 가혹행위는 10년 평균 435.3명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었으며 복무이탈은 연평균 343.3명으로서 군과 비교하여 오히려 사고발생지수가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중요위반자는 무단이탈은 106건, 휴가·외출 등 영외출타 후 복귀하지 않은

미복귀자는 101건, 하급상과 하급자 구타는 362건 등이었고, 지시명령위반 및 허위보고는 1,034건, 근무태만 785건, 두발불량 649건, 복장위반 536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준법상태가 불량하였다.

또한 복무규율위반자 처리실태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구타로 인하여 형사입건된 건수는 전체 156건 중에서 6건(구속1건, 불구속5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영창내지 근신의 징계처분으로 형사입건의 비율은 3.8%에 그쳐 구타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오히려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전·의경의 징계제도 중 영창과 관련된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지적할 수 있다. 영창제도 자체는 위헌의 소지가 상당하다.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대원을 징계하기 위해서 감금 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법적 권한이 없는 지휘관이 일방적으로 대원을 감금하기 때문이다.

전·의 경의 복무 중 부상자 중 공상과 순직현황은 매년 약 10여명이 공무수행중에 사망하고 있으며, 시위진압 중에 부상을 당하는 전·의경의 수는 200여명이었다. 이외에도 교통단속, 방범순찰 등 일반근무 중에 다치는 경우도 매년 600여명 이상이였다. 이는 대부분의 전·의경이 시위현장 등 최일선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권보호를 위한 매뉴얼이나 관심이 부족한 것이 그 이유이다.

경찰병원 치료현황을 매년 29만 여 명이 외래 내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형외과, 방사선과 등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신경정신과를 이용하는 환자는 외래진료가 1,719명, 입원이 4,313명으로 복무 부적응적인 성향을 보이는 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자체에서 전·의경의 사고예방을 위해 부대정비의 날, 이경의 날, 한마음체육대회, 전·의경 어머니회 등 나름대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문제는 제도의 시행을 위한 의지가 약하고, 제도시행을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단위부대는 잦은 출동과 순찰로 인하여 형식적인 행사에 거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전·의경은 전체경찰인력의 약35%를 차지하고 정식경찰관의 임무를 대행내지 보조하는 등 경찰조직에서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술적 연구로는 전·의경의 사기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등 일부가 있으나 전·의경의 인권실태를 연구한 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전·의경에 대한 논의들은“ 전·의경 경찰봉이 서럽다”, “이리 채이고 저리 맞고, 전투경찰은 괴로워”, “전·의경제도 폐지검토필요”, “혈값에 경찰머슴살이, 할일 없는 전경, 시위진압 중” 등 신문이나 잡지 등 보도에 그치고 실질적인 연구와 인권보호대책의 강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제3장 전·의경의 인권실태 조사 및 분석

제1절 조사방법

조사의 방법은 설문에 의한 조사와 현장실사를 통한 방문조사의 방법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05년 9월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연구자가 직접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위하여 전국 14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지역별·부대유형별로 구분하고 전·의경 대원수에 비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부대별 조사대상수는 계급별로 15명씩으로 하여 60명 내외로 정하였다. 전국의 전·의경 부대 중 전경대 8곳, 기동대, 10곳, 방순대 8곳 등 총26개의 부대를 조사하였다. 설문은 총 26개 부대에 1,540부를 설문하였고, 총 1,344부(87.2%)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통계적 처리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12.0K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한 현장조사는 설문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시설의 규모와 설치 및 운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의 항목은 시설물의 건축년도, 형태, 내부반의 실면적과 1인당 면적, 침상형태, 휴게실, 면회실, 매점, 식당 및 급식시설, PC방 등 전·의경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편의복지시설의 현황이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현장방문조사는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위해 방문한 부대는 실제조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방문하지 못한 부대는 각 지방경찰청에 협조하여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 및 진단

1.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상존

첫째, 구타·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응답자 중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은 12.4%로 현역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을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구타당한 회수는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일에 1회’는 5.6%이고, 가혹행위는 7.9%가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일에 1회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타 및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만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타 또는 가혹행위 피해자 계급은 이경이 68.7%이었고, 특히 전입 100일 미만 신입이경이 응답자의 47.5%로서 경찰의 신입대원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발생시간은 점호전후가 46.7%로 가장 많았고, ‘시위진압 대기 중 혹은 출동전후’가 39.0%로 경찰의 구타 및 가혹행위 차단노력이 형식적임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다. 구타이용 도구는 ‘손/발 등 신체’가 83.8%로 가장 많아 처벌적인 목적보다는 감정적인 폭행이 많아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의 정도 훨씬 많았고 할 수 있다.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했을 때의 심정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폭행하고 싶었다’거나 ‘가해자를 죽이고 싶었다’ 등 가해자에 대한 응징 내지 보복하려는 강한 심리적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심지어 복무이탈이나, 자살 및 자해를 할 생각을 하는 등 구타및 가혹행위가 제2차 사고의 동인(動因)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개인에 의한 사적 제재(制裁)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부대 내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부대원 상호 간의 집합행위, 지시행위, 얼차려/군기교육행위, 암기강요행위 등의 사적 제재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사적 제재의 일반적 태양은 집합행위 16.6%, 지시행위 16.5%, 얼차려/군기교육행위 12.1%, 암기강요행위 17.0% 등이 골고루 자행되고 있었다.

사적 제재를 당한 회수를 보면 집합행위는 1주에 1회 이상이 31.8%이었고, 거의 매일도 17.8%로서 약 50%가 적어도 1주에 1회 이상은 선임병의 집합행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원간에 엄격히 통제되어 있는 얼차려/군기교육행위도 1주에 1회가 28.4%, 거의 매일이 11.5%로서 약 40%가 적어도 1주에 1회 이상 당하고 있었다.

암기강요행위는 매일이 21.2%, 1주에 1회가 18.2%로 약 40%가 적어도 1주에 1회 이상 선임별로 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사적 제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적 제재가 폭행, 자살, 복무이탈 등을 야기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성적 괴롭힘이 만연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신체비하 내지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5%였고, ‘성경험이나 애인소개 등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4%였다. 성적 접촉유형은 포옹 41.5%로 가장 높았고, 신체의 일부분을 만지기는

31.9%, 심지어 성기만지기도 8.9%가 있었으며, 가장 수치스러운 자위행위를 강요당한 경우도 있는 등 부대 내에서 성적 괴롭힘현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 괴롭힘을 당한 전·의경은 ‘수치심을 느낀다’가 40%로 가장 많았고, ‘부대생활에 지장을 많이 느낀다’(12.4%)거나 심지어 ‘자살이나 복무이탈을 시도’(5.1%)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변사람으로부터 왕따 당한 경험’(2.5%) 등 성적 괴롭힘이 심리적·행동상의 부적응을 초래하고 있었다. 부대 내에서의 성적 괴롭힘의 만연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적 괴롭힘을 인권침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부대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9.5%)’거나 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성적 비유 등이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45.1%로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대 내 성적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음성적인 금전각출 행위도 여전하였다. 부대의 상급자로부터 금전각출을 강요받은 경험은 전체 4.3%이었지만, 부대 지휘관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여겨진다. 금전각출의 이유는 ‘부대회식’이 가장 많은 43.5%, ‘선임병 전역시’가 21.6%, ‘외근 중이 21.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기간요원의 관심과 관리소홀로 인하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시위진압 등 격무로 인한 피로누적

전·의경은 비교적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는 군인과 비교해도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전·의경은 시위진압 등 과도한 근무와 부족한 휴식과 수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근무시간은 하루평균 11시간이상 과잉근무를 서고 있는 경우가 26%로서 상당히 높았다.

휴식시간은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1.8%가 하루에 2시간 미만이고, 수면시간도 5시간미만이 6.3%이고 5-7시간은 절반을 넘는 54.7%로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생리적 욕구들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았다. 전·의경의 복무생활 불만족 원인으로 ‘집회/시위의 진압 등 업무가 힘들기 때문’이 47.4%로 가장 많고, ‘휴게 및 자유시간의 부족’이 13.1% 등 격무와 휴식시간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전·의경은 근무특성 상 야간근무나 집회/시위 진압 등을 위한 출동과 부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야간 근무회수가 월 15회 이상이 21.5%로서 이틀에 하루 꼴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시위출동도 월 15회 이상이 19.1%나 되었고, 시위진압작전 중에 부상당한 경험은 19.9%로서 5명중 한명은 부상당한 경험이 있는 셈으로 격무로 인한 피로누적과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열악한 내무생활

내무생활 중 취침 시 침상의 선택을 선임병의 임의대로 정하는 경우가 14.7%, 내무반 청소도 계급별로 담당구역을 정하여 하는 경우가 43.2%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내무생활이 아니라 선임병에 의한 음성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내무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내무반의 사생활보장 정도를 조사한 결과 32.8%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내무실의 환경적 조건이나 질적인 조건이 열악하였다.

특히 전·의경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상당수 차지하였다. 40여명이 한 내무반에서 집단 수용생활을 하는 등 개인공간이 0.7평 미만인 부대가 52.3%를 차지하여 사적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소음, 환기, 조명 등 모든 부분에서 내부반이 취침공간으로서 부적합하여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4. 편의 및 복지의 미흡

첫째, 영양사가 없어 급식관리 체계가 허술하였다. 전·의경 부대의 조리는 영양사 없이 조리병(부대자체에서)의 임의로 메뉴가 선택되고 취사를 하는 등 대부분 전문성이 없는 조리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식당의 청결상태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32.3%로 많은 등 식당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대에서 지급되는 보급품의 수량과 품질에 대해서도 약 25.0%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대원들이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종교활동의 자유로운 보장이 미흡하였다. 기동대 등 경찰기관은 목사·승려·신부 등을 위촉하여(경목·경승·경신으로) 소속경찰관의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사업과 신앙적 교화사업 및 경찰행사시 필요한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종파별 종교행사나 신앙상담 등 실질적인 종교의 활동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였다. 실제 조사에서도 전체 42.5%가 종교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외출/외박/휴가 등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았다. 휴가 등이 원칙적으로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19.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아, 휴가 등에 대한 공정하고 원칙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였다. 전·의경의 복무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하나,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PC방의 경우 정식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적은 수의 중고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상당히 열악한 형편으로서 신세대 대원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5. 형식적인 부대관리

첫째, 전문상담인력이 전무하여 체계적인 상담이 미흡하였다. 응답자의 26.6%가 상담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있었으며, 직속상관과 원하는 시기에 면담이나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있었고(12.2%), 상담회수도 '4개월 이상에 1회'인 경우가 12.0%로서 원하는 시기에 직속상관과 면담이 이루어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상담인력이 전무하여 체계적인 상담관리가 미흡하였다. 구타 등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면담도 미흡한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사적 제재 등 피해를 입어도 대부분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대관리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둘째, 구타 및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구타 및 가혹행위자의 처리현황을 보면 구속되어 형사 처리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가벼운 징계처리에 그치고 있었다. 구타나 가혹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부대차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 중 25.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의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기간요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부대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기간요원의 인사관리가 원칙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부대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기인사 시즌인 1월과 7월에 한꺼번에 많은 기간요원의 전·출입이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부대관리가 미흡하였다. 기간요원 인사관리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 왜곡된 조직문화와 인권교육의 미흡

구타나 가혹행위의 발생원인으로 ‘맞아야 말을 잘 듣는다’거나 ‘구타나 가혹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구타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욕설이나 폭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43.0%이었다. 구타나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의 40%가 스스로 인권의식 미흡을 지적한 것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전·의경들의 인권의식 부재의 원인은 인권교육의 불충분내지 형식적인 교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부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경우가 응답자의 19.1%를 차지하는 등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의경의 정훈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중대 단위에 정훈관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전혀 없고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으로 인권의식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제4장 전·의경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내무실 등 생활공간의 획기적인 개선

첫째, 노후시설의 전면적인 신·개축이 필요하다. 기존 노후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노후건물은 신축하고 기존건물도 리모델링을 통하여 전·의경의 주거 및 생활공간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신·개축시 내무반을 안락한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소음·조도·환기·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내무실의 소단위화와 ‘침대형’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내무반의 구성인원은 7-8명 내외의 소단위로 축소하여 충분한 개인공간을 충분히 확보(2평이상)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의 집단 침상형에서 신세대 대원들에게 익숙하고 편리 ‘침대형’으로 바꾸는 등 내무반 구조를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환경의 생활공간과 개인 사생활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2. 전·의경의 복지혜택의 현실화

첫째, PC방의 설치가 필요하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PC방의 설치는 군복무로 인한 사회의 단절감 해소 및 가족, 친구 등과의 메일교환과 화상 통화로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므로 예산확보를 통한 PC방의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양사 배치 및 식비와 급여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중대별 영양사의 배치하거나 지방경찰청별로 배치하여 전·의경의 영양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전·의경의 식비와 월급여이 대폭적인 인상이 요구된다.

셋째, 생활필수품의 면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전·의경들에게도 군대처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매장의 설치가 필요하다. 단독으로 면세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면 국방부와의 계약을 통해 복지근무지원단을 통하여 전·의경 부대에 면세물품을 수급 받아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넷째, 자격증과 학점취득 등 자기개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 각종 자격증 취득과 학점은행제도의 운영과 학점인정제를 도입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방송통신대 강좌, 대학의 온라인강좌 수강허용, 학점은행제 방식으로 소속 경찰관서의 교육훈련 및 인근대학(교)나 전문교육기관의 수강과목 대학 학점 인정을 들 수 있다.

3. 근무 및 휴식의 철저한 보장

전·의경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40시간·교대근무제가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시위규모와 빈도, 발생시기 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면 적절한 인원의 출동이 가능하고 나머지 인원의 경우 철저한 휴식이 보장되도록 주40시간 교대근무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야간 방법순찰 등의 경우는 지휘관의 의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4. 의료체계의 개선을 통한 의료권의 실질적인 보장

첫째, 의무관 확보 및 시위진압 현장 응급 의료진 배치 의무화가 필요하다. 전·의경 부대에 공익의무관을 상시 배치 운용함으로써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부상이 많은 전·의경 대원들에게는 적시적인 진료와 의료 상담 등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찰병원의 지방분원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에 복무하는 전·의경들은 서울의 경찰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복무 전·의경의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전라 및 경상권에 각각 경찰병원의 지방분원을 설치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비 예산 증액과 민간상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의경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는 월 5,400원으로서, 실질적인 치료비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다. 전·의경 대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비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고, 시위진압과정에서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은 바,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민영보험 가입제도의 의무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 전·의경 인권보호법의 제정필요

군형법의 처벌조항을 포함한 가해자 처벌법과 피해자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법안의 기본방향은 전·의경의 복무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상황에 따른 인권보호방안이 전반적으로 포함하면서 구타 등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인권의식함양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에는 인권침해행위를 한자에 대한 처벌조항(구타, 가혹행위, 성적 괴롭힘, 사적 체재 등), 복무이탈자의 처벌조항(군대내 군무이탈자에 준하는 처벌), 전·의경 범죄피해자의 보호, 피해사실 인지시 신고의무, 인권전담조직설치, 근무 및 휴식시간의 보장, 휴가, 외출, 외박 등에 대한 보장, 의료권의 보장, 내무생활에 필요한 기본환경 등 일반적인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항과 경찰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제정함으로써 전·의경의 인권보호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전·의경 인권보호 전담기구의 설치

전·의경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전·의경의 인권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경비국 산하에 전·의경 인권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경비국 산하에 '전·의경인권보호과'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인권보호 전담기구에 경찰과 일정수의 외부전문가를 혼합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설되는 '인권보호과'는 전·의경 인권에 관한 정책의 총괄,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단위의 인권보호전담기구의 지도·감독, 가칭 '인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도 등의 기능을 갖게 한다. 또한 가칭 '인권보호위원회'는 전·의경의 인권과 관련된 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자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전·의경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기능을 맡도

록 한다면 전·의경의 인권보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전·의경 전문상담관제의 상설화

첫째, 상담심리 전문가의 채용 및 활용이 필요하다. 상담심리전문가를 일반적 공무원인 상근직으로 채용하여 전·의경의 심리상담은 물론이고 심리검사, 부적응자에 대한 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종장교제도와 유사한 경목 등 경종제도(警宗制度)의 신설이 필요하다. 군대는 군종장교를 두어 군의 종교집회나 병사들의 신앙활동은 물론 신상상담 및 인격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의경 조직에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군의 군종장교제도와 유사한 가칭 ‘경종관(警宗官)제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전·의경의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상근직 전문가의 활용과 병행하여 지역사회의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통하여 전·의경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훨씬 많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8. 전·의경 징계 영창제도의 폐지

영창제도가 자의적인 인신구속 등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있는바, 전·의경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여 징계 영창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합리적인 대체징계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의경의 경우 중앙경찰학교에 중앙기율교육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데 대체징계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9. 전·의경 계급제의 폐지

전·의경의 계급제의 완전폐지는 서열의식과 그로 인한 폐해에서 기인하는 구타나 가혹행위, 자살, 복무이탈 등 각종 인권침해행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군과는 달리 전·의경조직은 적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며,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급제의 완전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제 의무경찰은 계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경’으로 호칭하도록 한 호칭규정을 볼 때도 전·의경대원간의 계급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10. 경비전문 특기경찰의 신설

전·의경 관리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비경과와 경비전문특기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비경찰 특히 전·의경관리 기간요원은 전·의경의 교육, 관리 등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경비경과와 가칭 ‘전·의경관리 전문특기’ 등이 신설된다면 전·의경의 관리·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1. 광역시 관할 지방청의 기동대와 전경대의 통합운영

방순대의 경우 치안보조업무가 주 임무로써 경찰서 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으나, 시위 진압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가 주 임무인 기동대와 전경대의 경우에는 부대유형별로 한 장소에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광역시 도심에 산재해 있는 지방경찰청 관할 전·의경부대를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하여 집중 운용함으로써 전·의경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2장 전·의경 인권에 관한 기초연구	4
제1절 전·의경 제도의 개념과 구성	4
1. 연혁과 도입배경	4
2. 법적근거	6
3. 조직의 구성	7
4. 외국의 유사 조직	11
제2절 전·의경 기본적 인권현황 및 보호실태	12
1. 기본적 인권현황	12
2. 전·의경사고예방을 위한 자체활동	22
제3절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의 검토	24
제3장 전·의경의 인권실태 기초조사	27
제1절 조사방법	27
1. 표집 및 조사항목	27
2. 조사 및 분석방법	29
3. 인구통계학적 특성	30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31
제3절 방문조사 결과 및 분석	101
제4장 전·의경인권상황의 진단 및 정책적 제언	108
제1절 전·의경의 인권상황의 진단	108
1.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상존	108
2. 열악한 근무여건	110
3. 내무생활여건 불비	111

4. 편의 및 복지 분야의 미흡	112
5. 형식적 부대관리	114
6. 미흡한 인권의식 및 태도	115
제2절 정책적 제언	116
1. 내무실 등 생활공간의 개선	116
2. 전·의경의 복지혜택의 현실화	117
3. 근무 및 휴식의 철저한 보장 : 주 40시간 · 교대근무제의 시행	119
4. 의료체계의 개선을 통한 의료권 보장	120
5. 전 · 의경 인권보호법(안)의 제정	121
6. 전 · 의경 인권보호 전담기구의 설치	123
7. 전 · 의경 전문상담관제의 상설화	124
8. 전 · 의경 징계영창제도의 폐지	125
9. 전 · 의경 계급제의 폐지	126
10. 경비전문특기제의 신설(전 · 의경관리전담경찰)	127
11. 전 · 의경부대의 통합운용을 통한 근무여건의 개선	128
제5장 결 론	129
참고문헌	130

제 1 장 서 론

우리한국의 전투경찰제도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이다. 전투경찰대원은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여 평시 치안활동에 투입되고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면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의 주 임무는 대간첩작전이고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은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전·의경은 경찰인력의 약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시위진압 등 치안업무수행에 중요한 자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위진압과 방법순찰, 시설경비 등에 주로 동원되는 등 정규경찰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은 전·의경이 대신하여 임무를 맡는 보조적 내지 주도적인 경찰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 탓(특히 시위진압에 많이 동원되는 관계로)에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의경의 지원율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¹⁾ 군 현역으로 입대한 자원 중에 차출되는 전경은 훈련병들의 기피대상이기도 하다.

1970년 12월에 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 도입된 전투경찰은 과거군사정권 하에서는 정권안보의 방패막이로 활용되었고, 국민적 지지 기반에 정통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국민의 정부 이후에도 여전히 전투경찰은 시위진압 등 시국치안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²⁾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있는 현시점에서 전투경찰제도의 폐지 내지 감축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는 전투경찰은 당초의 입법 취지를 따르도록 운용방법을 대폭 개선하든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³⁾.

'전투경찰'은 '특수경찰'로서 '대간첩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의무경찰'(의경)은 일반치안업무보조가 그 임무이다. 전투경찰은 현역군인으로 입대한 사병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여 파견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각급 경찰관서에 배치된 후 경찰지휘관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이들은 군인수준의 월급과 군복을 지급 받으며, 현역군인에 준하는 계급(특경, 수경, 상경, 일경, 이경)도 부여되어 현역군인과 유사한 병영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두고 군사와 치안의 영역이 구분되지 못하고 혼동상태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⁴⁾

그런데 현재 운용되는 전투경찰제도는 입법취지와 실제운영상에 괴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⁵⁾ 일부는 전투경찰제도는 대간첩작전을 명분으로 반정부 시위현장이나 노동자들의 쟁의현장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도 군인을 동원하려는 낡은 발상에서 나온 편법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시위문화와 시위진압을 볼 때 정규 경찰력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의경을 치안보조업무 뿐 아니라 시위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국방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투경찰제의 폐지는 곤란하다고 경찰당국은 주장한다. 또 현시점에서 경찰관으로 대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투경찰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등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으로 검토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의경제도의 폐지논란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전·의경의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의경 대원의 구타 및 가혹행위, 그로 인한 복무이탈과 자살사고의 발생, 알몸 사진의 인터넷유포, 각종 시위현장에서의 부상⁶⁾ 등에서 보듯이 전·의경의 복무 중 사고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1) 2004년도 의경모집인원은 14,012명이고 응시인원은 15,345명으로 경쟁률은 1.09:1에 불과하였다.

2) 송기춘,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시민의신문/인권실천시민연대, 경찰개혁연속정책토론회제4차발표자료집, 2005. 8, pp. 30-31.

3) 최창동, "전투경찰제 개혁하고 위수령 폐기해야", 월간 말지 1998년 8월호에 실린 내용에서 발췌

4) 이계수,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군사와 치안의 착종과 민군관계의 전도, 공법연구제31집 제4호, 2003. p. 237.

5) 1991년 당시 전경이었던 박선진씨의 헌법소원제기를 계기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바 있다.

있는 실정이다. 전·의경조직에서 발생하는 사고비율은 군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발생율에 견주어 결코 적지 않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⁷⁾

여하간에 전·의경의 복무는 각종 시위진압작전에의 투입, 야간방범순찰, 상황대기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관계에서 오는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은 더욱 심각한 수준임에 분명하며, 이러한 특수한 조직상황과 업무특성 등으로 전·의경은 구타·가혹행위 등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이는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살·복무이탈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의·식·주이다. 군인에 버금가는 병영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열악한 취침시설이나 편의시설의 부족, 근무관계, 보급품의 질저하, 급식비의 문제 등⁸⁾은 현직 경찰관의 복지수준에도 미흡할 뿐 아니라 현역군인과 비교해도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⁹⁾ 또한 출동 시 길거리에서 또는 버스 뒤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전·의경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경우이다.

전·의경이 생활하는 장소는 유형별로 기존의 경찰서내의 경우와 독립 부대 건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건물은 10~15년의 건물이 많으며 신축한 경찰서의 건물은 그나마 형편이 양호하지만 근무위주로 건축되어 휴식, 취침 등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의경은 엄밀히 따지면 군복무를 대신하여 복무를 하고 있는 조직이고, 군 조직과 유사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전의경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또 다른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군과 관련된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기위한 작업은 일부 진행된 바 있으나, 전·의경조직에 대한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다시피하다. 본 조사는 군복무에 버금가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의경의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통하여 인권상황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전·의경 조직에 대한 의식주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생활환경면에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파악할 것이다.

한편 개략적인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한국 전·의경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초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으로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기본적인 인권침해상황은 물론이고 내무생활, 근무관계, 복지 및 의료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관한 것들이 망라하였다. 그 이유는 인권이라함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고 있는바, 전·의경의 인권상황을 어느 한 부분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군복무생활 전반에 걸쳐있는 인권상황을

6) 한편 최근 5년간 전의경의 사망과 부상 및 그 원인별 현황으로는 매년 평균 20명이 사망하며, 평균 1,702명이 부상을 당하는데, 시위진압도중 사망하는 경우는 전무하였으나 부상을 입는 경우는 평균 207명이었다. 이러한 근무상황과 업무 및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전의경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어느 조직에서보다 높은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자살이나 복무이탈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까지 이른다. 전의경의 정신과치료자 및 사유별 현황을 보면 2002년 113명, 2003년 148명, 2004년 6월까지 92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또한 치료사유로 적응장애, 정신분열, 우울증, 기타 등이 있었다.

7) 최근 5년간 전의경 자살, 자해, 구타 등 자체사고 현황의 경우 자살 39건, 자해 29건 구타 및 가혹행위 1963건, 탈영 등 복무이탈 1337건 등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1999-2003) 전의경과 비슷한 연령대(20-24세)의 인구10만명당 자살자는 평균 11.4명이었다. 위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의경의 경우는 평균 16명에 이른다. 또한 군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와 군무이탈 현황에 대한 국방부 국정감사자료와 비교할 때도 전의경의 경우가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방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구타는 1996년 1,311건, 1997년 1,146건, 2000년 1,073건, 2001년 878건으로 매년 1,000여건의 구타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군대와 전투경찰의 사고비율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전의경의 수와 군인의 수를 비교할 때 전의경의 사고발생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8) 인천지방경찰청, “2005년도 전·의경 예산집행 기준”

9) 2005. 10. 27일자 국방부보도자료에 의하면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장병인권보호를 위하여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된다고 하며, 이를 위해 2006년도까지 3,220억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이에 비해 군 병력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전의경에 대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다 연구내용에 포함하였다. 특히 흔히 인권침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 복무이탈 등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복무생활의 스트레스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스트레스의 중요한 원인은 복무생활의 불완전과 불편함 등 환경적·신체적·심리적인 요인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전·의경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복무와 관련된 병영내부 환경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현재 복무 중에 있는 전·의경대원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인권상황의 현재적인 실태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¹⁰⁾.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제2장에서는 전·의경인권상황에 대한 기초연구, 즉 전투경찰제도의 연혁과 도입배경, 전·의경 운용상황, 인권실태와 경찰의 정책,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가 주요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본론으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였고, 제4장은 기초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전·의경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언급하였다. 한편, 연구는 문헌조사의 방법과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와 같은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제시한 공식통계자료와 국정감사자료, 기존의 전·의경관련 선행연구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분석을 하였고, 현재 복무중인 전·의경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현지 부대를 방문하여 근무환경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인권상황실태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조사의 방법은 제3장에서 제시하였다.

10) 물론 조사대상이 복무중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설문응답의 불성실과 왜곡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제2장 전·의경 인권에 관한 기초연구

제1절 전·의경 제도의 개념과 구성

1. 연혁과 도입배경

(1) 연혁

전경과 의경의 인권문제를 다루기 전에 전투경찰제도의 연혁과 도입배경을 검토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전투경찰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해방 후 4·3사건, 여순반란사건 등 좌우익의 대립상황에서이다. 1948년 10월 치안국에 비상경비총사령부가 설치되어 전국의 모든 전투경찰을 지휘하게 하였고,¹¹⁾ 1950년 한국 전쟁시에 태백산과 지리산에 은거하고 있던 적의 패잔병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1950년 12월에 태백산 지구경찰대, 지리산 지구경찰대가 편성되어 활동을 하였고, 1951년 1월 운문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가 설치되었다.

한국전쟁시기에 군 병력만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경찰의 임무가 일부 전투임무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1950년 48,010명이던 경찰의 정원이 1951년에는 63,427명에 이르게 된다.¹²⁾ 정전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행정구역이 접하는 지리산지구에서 경계의 불명확으로 인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한 작전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 지역을 총괄하는 서남지구전투경찰대가 1953년 5월에 창설되어 지리산주변지역에 대한 전투와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1953년 5월 14일 전투경찰의 기본 조직을 혁신하고 유기적인 부대 운용을 목적으로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동시에 서남지구 전투 경찰대 사령부가 남원에 설치되어 휴전까지 활동·존속되다가 1955년 7월에 해체된바 있다.¹³⁾ 이와 함께 같은 날 경찰직무공무원법 제4조에 의거 경찰기동대가 설치되어 공비토벌과 후방경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동법은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의 교란 또는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의 경비에 있어서 소관 경찰력으로써는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¹⁴⁾ 위법에 근거하여 1962년 11월 청와대 근처에서 경찰기동대 1개중대의 규모로 편성되었고, 1966년 7월부터는 대통령령 제2665호에 의거하여 전투경찰대가 경찰의 비정규전 작전대로 인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간첩침투사건을 겪어면서 1970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일반경찰관으로 구성된 전투경찰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병력자원으로 전환되어 군대식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¹⁵⁾. 전투경찰대에 관한 연혁을 <표2-1>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1) 경찰사편찬위원회, 경찰50년사, 경찰청, 1995. pp. 116~117

12) 이후 감소하여 1960년에는 33,035명, 1961년에는 29,835명으로 줄어들었다.

13) 당시 국회의회의록을 보면 국회 내무위원장인 이석기(李錫基)의원은 지리산 공비토벌을 위해 군과 경찰이 전국 각지에서 파견되어 구성되어 있어 급작스런 조직의 편성으로 인해 장비·예산에 문제 발생하고 있고, 법률로 정하여 장비·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국회의원인 유승용과 박정규의원은 전투목적의 경찰대의 조직과 경상도, 전라도 경찰이 관할 등의 문제로 인해 책임 회피 등의 문제발생, 소속 경찰의 책임감으로 조속한 시일에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서남지구전투경찰대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14) 송기춘, 전개논문, pp.30-31.

15) 남한사회의 법현실과 이데올로기 비판, 민주법학 창간호, 1989, p.38.

<표 2-1> 전투경찰대의 연혁



(2) 도입배경¹⁶⁾

전투경찰대의 도입배경을 전경과 의경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규정에 의하면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전경)과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의경)로 구성된다.

① 작전전경

작전전경 제도의 근거법률은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동시행령으로서 도입배경의 경우 당시 국회의회의록을 보면¹⁷⁾ 대간첩작전 등을 위해 전투요원 확보, 전투능력의 향상, 조직적인 경찰력의 필요 및 전사상자에 대한 급여금 지급 근거마련 등을 위해 근거법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임무는 대간첩작전(대비정규전, 국가중요시설방호, 요인 및 신변보호, 작전상 취약요소제거 및 경비임수수행)이며, 1976년 9월1일 창설하였다.

② 의무경찰

의무경찰 제도의 근거법률은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동시행령으로서 도입배경은 경찰조직의 이원화,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가능, 부조리 유혹 근절, 경찰에 대한 사회의 친밀감 조성, 국가 재정상 치안 수요증가에 따른 직업경찰의 증원곤란 및 경찰 내륙지 작전수행에 따른 전력증강 등의 이유로 의무경찰모집을 위한 근거법률이 필요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¹⁸⁾ 주요임무는 시위진압, 범죄에 방순찰, 교통, 유치장근무 등 치안보조업무수행이며, 1982년 12월 31일 창설하였다.

2. 법적근거

전·의경제도의 법적근거는 병역법 제24조 제2항과 제25조 제1항과 1970년에 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제1항과 의무경찰의 모집근거가 되는 동법제2조의3 제2항이 근거법률이며, 전투경찰순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투경찰순경관리 규칙이 있으며, 경찰기동대와 방범순찰대의 관리를 위해 경찰청훈령으로 기동대관리규칙과 방순대관리규칙이 있다.

이를 표로 구성하면 <표2-2>와 같다.

16) 법률제정 당시 국회의회의록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17) 제75회 국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18) 제114회■■■제10차■■■국회본회의 ■■■(1982년10월12~13일) 회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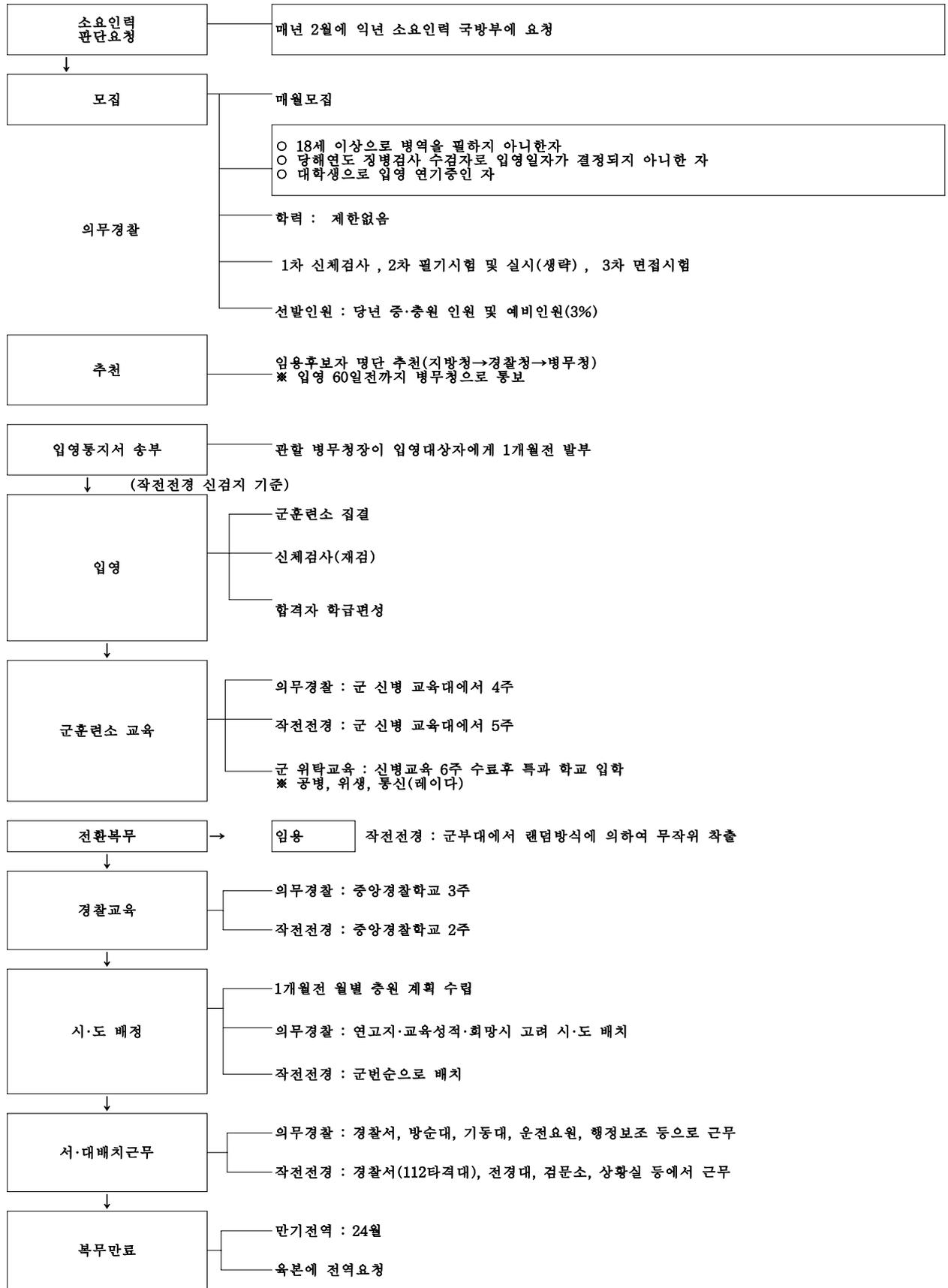
<표2-2> 전·의경 제도의 법적근거

근거법령		내용	세부내용
병역법	제24조제2항	대간첩 작전 수행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에서 요청받은 소요인원을 전환복무
	제25조제1항	추천 받은 자의 전환 복무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전환복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제1항	간첩(무장공비 포함)의 침투거부·포착·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2조의3 제2항	치안 업무 보조	
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	제2조	전투경찰순경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 임용된 작전전경은 대간첩작전, 의무경찰은 치안업무보조를 주임무 등으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의 정의(작전전경, 의무경찰, 전투경찰순경, 대간첩작전 등) ○ 전투경찰의 호칭 ○ 작전전경 선발 및 교육 ○ 전경사고예방과 전경기울대 운영, 징계
기동대관리규칙	제2조	경찰기동대의 조직과 기능, 기동대원의 복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편성, 임무, 및 복무 ○ 장비, 교육 훈련 및 사열 ○ 사기, 복지, 상훈 및 징계
방순대관리규칙	제2조	방범순찰대의 기능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방범활동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 및 운영 ○ 근무요령 ○ 복무규율 및 인사관리 ○ 숙식 및 내무생활

3. 조직의 구성

(1) 입대경로¹⁹⁾

19) 경찰청, 전경관리요령 : 신지식 경찰관 육성(서울: 경찰청, 2000). pp.115-116.



※ 지방청별 2개월 전 전역대상자 명단보고→경찰청→육군본부(전역명령)→경찰청

(2) 운영총괄

<표2-3> 전·의경 운영총괄

구분	계	작전전경	의무경찰					
		전투경찰	계	상설부대		민생치안		
				기동대	방순대	교통	유치장	전산
인원	51,419	18,984	32,435	12,896	14,357	1,553	958	2,671
부대수	309	119	190	88	102	의무경찰		
임무		대간첩작전 시위진압 치안보조업무		대간첩작전 시위진압 치안보조업무 경비	대간첩작전 시위진압 치안업무보조 경비,방법순찰	교통단속 유치장근무 행정업무수행		
지휘관계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서장		

※자료 : 2004년도 국정감사자료

<표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전전경은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창설된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어 임무를 수행하며, 평시 대부분 시위진압작전에 동원되거나 상황이 없을 때에는 방법순찰, 주요시설경비, 범죄현장주변 증거물수색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전투경찰대의 편성을 보면 군대편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1개중대에 3개소대와 소대는 4개분대로 편성되어 있고, 대장은 경감급 간부가 보임되며, 소대장은 경위 내지 경사급에서 보임되고, 각 소대에 부소대장격인 소대행정관이 경찰직원으로 편제되어 있다.

1개 전투경찰대는 부대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지만 보통 1개 소대에 약 40명씩 120여명이 1개 전투경찰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기간요원인 경찰관은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 근무하고 있다. 각 경찰기동대와 방법순찰대로 전투경찰대와 유사하게 편성되어 있다. 각 부대의 지휘관계를 보면 전투경찰대와 경찰기동대는 각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방법순찰대와 기차 교통의경 등 경찰서 내에서 근무하는 의경은 경찰서장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투경찰대 및 기동대 등은 해당지역의 경찰서장이 시위현장출동 등 특별한 업무가 없을 때에는 관할경찰서지역내에 방법순찰 등 치안보조업무를 사실상 운용하고 있다.

(3) 배치 및 운영현황

<표2-4> 지방청별 전·의경 배치현황

구분	작전전경			의무경찰			
	인원(명)	비율(%)	중대수(개)	인원(명)	비율(%)	기동대	방순대
	18,984	100	119	32,435	100	88	102
서울지방경찰청	4,104	21.6	27	11,327	34.9	30	35
부산지방경찰청	920	4.8	6	3,013	9.3	8	11
대구지방경찰청	667	3.5	4	1,533	4.7	4	7
인천지방경찰청	558	3.0	4	1,685	5.2	5	7
경기도지방경찰청	1,605	8.5	11	4,603	14.2	12	15
강원지방경찰청	714	3.8	4	809	2.5	2	3
충북지방경찰청	703	3.7	4	610	1.9	2	3
충남지방경찰청	1,372	7.2	9	1,568	4.8	5	6
전북지방경찰청	993	5.2	6	960	3.0	3	3
전남지방경찰청	2,077	10.9	13	2,049	6.3	6	7
경북지방경찰청	1,256	6.6	8	1,223	3.8	4	4
경남지방경찰청	1,115	5.9	7	1,499	4.6	4	5
울산지방경찰청	134	0.7	1	811	2.5	2	3
제주지방경찰청	2,246	11.8	15	244	0.8	1	3
기타(학교, 병원등)	520	2.7		501	1.5		

※참고 : 2004년도 국정감사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위의 <표2-4>는 전·경의 지방경찰청단위로 배치운용하는 현황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은 작전전경인 전투경찰대는 27개 중대, 약 4,100여명으로 전체 21.6%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다음으로 많이 배치된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의 경우 전투경찰대 15개 중대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은 해안경비의 소요가 많고, 육군의 전투부대가 주둔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투경찰대가 많이 배치된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13개 중대 약 2,000여명의 전경이 배치되어 전체 10.9%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지방경찰청은 11개 중대 약 1,600여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의무경찰의 경우를 보면 서울지역에 경찰기동대와 방법순찰대가 각각 30중대와 35개 중대가 배치되어 있고, 인원은 11,000여명으로 전체 34.9%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경기도지방경찰청에 기동대 12개 중대, 방순대 15개 중대 등 4,600여명으로 전체 14.2%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은 기동대 8개 중대, 방순대 11개 중대 등으로 전체 9.3%의 의무경찰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청에서 지역별로 전·의경의 인력배분기준이 모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경의 경우 대간첩 작전 등이 주 임무라면 대침투작전이 예상되는 해안²⁰⁾과 국가중요시설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경의 지역별 배치현황을 보면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시위다발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지휘감독체계

이미 설명한바와 같이 전·의경은 전투경찰대설치법의 목적에 따라 대간첩작전임무 및 치안보조 임무를 담당한다. 전투경찰대에서 복무하는 전경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 하에 작전경비임무 및 치안

20) 1971년 이후 간첩 침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0년대 간첩침투사건은 총 7건(육상6, 해상1), 80년대 8건(육상1, 해상8), 90년대 18건(육상7, 해상11)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대간첩작전이 수행된 적이 없는 실정이다.

업무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²¹⁾ 한편 방법순찰대의 경우 경찰서에 소속되어 경찰서장의 지휘감독하에 치안보조업무를 주로하고 기타 작전경비업무를 보조적으로 하고 있다. 부대의 편성과 각 관의 임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2-5> 직책별 임무²²⁾

직 책	임 무
중대장	각 부대를 총 책임지고 지휘하는 경찰관
소대장	소대장은 각 소대를 관리·책임지고 지휘하는 경찰관
행정반장	중대 행정반의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 처리하는 경찰관
부소대장	소대장을 보조하며 소대를 관리·감독하는 경찰관
운전반장	상황출동 및 기타 이동 시 차량을 책임지고 운전·관리하는 경찰관
기울경	타의 모범이 되는 선임대원중 대원들의 사기진작·복무규율을 담당하기 위해 선발

4. 외국의 전투경찰 유사조직²³⁾

(1) 영국

영국 우리의 경비와 같은 분리된 단일한 경비기구가 없고 경비의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한다. 예컨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는 공공질서과(public order department)에 공공질서훈련센터(public order training center)두고 있다. 경비관련업무를 총괄적 운영 위해 런던경찰청 산하에 일종의 종합상황실(national reporting center)을 설치하여 전국적인 대규모 다중범죄 진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미국

미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찰청 경비과와 같이 독립적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없다. 시위진압의 주력은 주병(national guard)이라는 조직인데, 이 조직은 1936년 설치 이후 현재 구성원 약 44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병조직에는 육상경비대와 항공경비대라는 두 조직이 있다. 또한 주병조직은 평시에는 주지사의 지휘하에 있지만, 전시 혹은 비상시엔 미군에 편입된다.

주병활동은 주로 치안활동(시위진압 등), 재해활동, 지역사회에의 봉사활동이 주역할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국방성에 국가경비대 사무국을 두고 각 주의 주병의 유지·관리를 감찰하는 한편 훈련 상의 감독/재정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연방경찰은 전국적 사항, 긴급사태 등을 대비한 조직인바 연방에 관한 경비, 공안 등 제한된 범위에서의 독자적 경찰기관이다. 그리고 독일의 주경찰은 주를 국가로 하는 국가경찰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주는 시·면 자치체경찰을 가미하고 있다. 주에는 주경찰기동대(bereitschaft polizei)가 있는데 이 조직은 폭동이나 시위 등 전국적인 긴급치안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1950년 연방과 각 주간의 행

21)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7조 1항.

22) 인천지방경찰청, “부대적응을 위한 신입대원 부대생활 길라잡이”, p.6

23) 경찰대학, 경찰경비론, 1998. 11, pp. 54-96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정협정에 의하여 설립됨.

각 주에는 기동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임무는 국가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의 대형 사고에 전국적인 경찰력 지원으로 최고의 국가기관 및 관청과 중요한 조직 및 시설경비, 대형사고, 대규모시위, 스포츠 및 각종 행사에서의 경찰력 지원 등이다.

(4)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경비업무담당 기관은 국가경찰기동대(compagnies républicaines de sécurité)와 헌병대라는 독특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국가경찰기동대는 1948년 창설된 이래 내무성 직속부대로 활약해 오다가 1968년 법령개정으로 경찰총국 아래 편입되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전경복장처럼 특수복장을 한 경찰관으로 편성된 부대이며, 시위 및 폭동진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국가경찰기동대는 전국에 61개 기동중대와 본부대 및 대원교육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을 10개 방면으로 구분하고 각 방면마다 4-8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다. 표준편제 1개 중대는 정복 총경 또는 정복경정을 대장으로 210-225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어, 총무반, 4개 소대, 교통전담 오토바이 1개 소대로 구성되어 있다.

또 헌병대는 국방성에 국가헌병총국산하 기관으로서 전국 22개 군관구산하 인구1만명의 코뮌에서 행정, 사범의 일반경찰업무와 함께 육군헌병대의 역할도 한다. 통상의 임무는 순찰이며 중대범죄나 대규모 사고 발생시 출동하는 특별부대를 가지는 중대도 있다.²⁴⁾

(5) 일본

일본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연한 데모사태의 진압을 위해 1957년 동경경시청에 기동대를 창설 하였으며, 1969년에는 관구경찰국에도 기동대를 설치하였다. 주요임무는 시위진압경비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발생시 구조나 원조활동을 비롯하여 대사관이나 관공서 등의 경비, 외국요인의 경호, 일상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지원 등도 수행한다.

기동대 편제는 경찰청 경비부 하부조직으로 9개 기동대와 특과차량대가 있다. 1개 기동대는 약 500명씩 1개 대대로 편성되고 대대장은 경시정(총경)으로 배치하여 집단사태의 진압지휘책임을 부여함. 또한 경찰청 기동대는 특수부대로서 각 기동대 내에 1개팀씩 총병력 약 700명의 특수경비대와 폭발물이나 총기에 대항할 수 있는 K부대가 있다.

그리고 동경경시청은 약 5,000명의 기동대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1기동대는 경찰청 본부의 경비, 제2기동대는 잠수용 수중호흡기부대의 관장, 제6기동대는 인질, 테러 및 폭발물 전담의 특공부대, 제7기동대는 레이저 소대의 운영 및 납치대책 특수본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2절 전·의경 인권현황과 보호실태

1. 기본적인 인권현황

(1) 휴가²⁵⁾

24) 이외에도 기동헌병대는 집단경찰력의 행사를 위하여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폭력진압, 각종집회 및 시위의 경비 등과 같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5) 전투경찰순경등 관리규칙 제190조 및 인천지방경찰청, “2005년도 전·의경 예산집행 기준”

<표2-7> 전·의경 휴가와 휴가비

정기휴가	1차	입대 11개월~13개월 사이	15일
	2차	입대 19개월~20개월 사이	10일
	3차	입대 23개월 이후	10일
청원 휴가	본인의 상이·질병·기타 심신장애		연 2월내
	직계가족(부모, 처, 자)의 상이·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때		연 20일내
	직계가족의 사망·본인의 혼인		연 14일내
포상휴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타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어 경찰서장 이상 의 표창을 수상한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1회 10일내
위로휴가	훈련·검열·기타 특별한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심할 때 허가 (태풍·폭설)		7일 내
병가	상황 출동 및 각종 근무 중 발생하는 질병이나 부상 시 경찰병원 또는 국·공립병원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입원, 병가가능		

(2) 외출·외박제도²⁶⁾

<표2-8> 전·의경 외출·외박제도

외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192조)	영내면 회	전입 후 6주가 경과하지 않은 대원들이 실시하며, 주로 부대정비의 날에 실 시
	면회외 출	전입 후 6주가 경과한 대원들은 면회외출이 가능하며, 규정 면회시간은 2시간 이나, 원거리 가족면회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휘관의 승 인을 얻어 연장실시 가능
	병원외 출	본인의 신상에 이상이 생겨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휘관의 승 인을 얻어 지정병원을 방문·치료한다.
	정기외 출	휴일 또는 부대 휴무 등 지휘관이 정한 휴무 당일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출 (예: 목욕외출 등)
	공용외 출	업무 연락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는 외출
첫 외박	전입 후 1~2개월 쯤 실시(각 부대마다 실정에 따라 조금씩 상이 함)	
정기외박	신임대원 : 전입 후 1개월 일반대원 : 60일 전후 1회(72시간)	
특별외박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한 사정이나 공휴일에 대원들의 사기를 위하여 허가 하는 외박 (예: 범인검거·체육대회 특박 등)	

26) 인천지방경찰청, “부대적응을 위한 신입대원 부대생활 길잡이”. pp.43-44.

(3) 월급여 등 지급액 현황²⁷⁾

<표2-9> 전·의경 월급여 지급현황

월급					
	봉급	개인용품비			계
이경	33,300원	합계 25,580원	이발비	4,500원	58,880원
일경	36,100원		목욕비	4,500원	61,680원
상경	39,900원		사기진작비	16,580원	65,480원
수경	44,200원				69,780원
기본급식비 ²⁸⁾	4,307원 (주식비+부식비+연료비)				
증식비	금액(1인1일)		565원		
	(증식비 예산 1,402원중 565원 증식비 집행, 837원을 기본급식비에 충당)				
	집행방법		빵, 음료(우유 등), 과일등 구입지급		
경축일 특식비	500원(1인 1회-연6회)				
	신정,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1,000원(1인 1회-연3회) 설날, 추석, 경찰의 날				
휴가비 ²⁹⁾	3,600원				
의료비 ³⁰⁾	5,400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의경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급여와 개인용품비, 기본급식비 등이 매월지급되고 증식비, 경축일특식비, 휴가비, 의료비 등은 개인별로 해당사항이 발생시 지급하게 된다. 월급여는 보너스를 제외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이경은 33,000원이고 수경은 44,200이며, 이외에 이발비, 목욕비, 사기진작비가 25,800원이 지급된다. 기본급식비는 1일 4,307원으로 한끼당 약 1,435원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보급품은 매월 1개씩 지급되는 품목은 치약, 세면비누, 구두약 등이고, 칫솔은 2개월에 1개씩 지급되고, 수건, 구두솔은 3개월에 한개씩 지급되고 있어 대부분의 전·의경은 개인 사비로 부족한 양을 보충하거나 보급품의 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개인적으로 사제물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4) 출동현황

27) 경찰청, 2005년도 전·의경 예산집행 기준.

28) 소단위부서 특식비 1,300원 추가 (검문소, 해안초소, 통신중계소, 항포구경비, 낙도출장소, 공항기동대, 가가도경비, 항공대경비, 보안분실, 고속도로 T/G).

29) 매월 적립 후 휴가자에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휴가비지급은 육지의 기본거리와 도서벽지를 고려하여 지급된다.

30) 의료비 5,400원 중 2,000원 지방청 배정. 3,400원 건강보험료 부족예산 충당, '05년도 전·의경 건강보험료 요구예산 삭감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족예산을 부득이 개인용품비 중 의료비에서 충당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표2-10> 연도별 출동 회수

년도	시위회수	연시위인원	연동원경찰	진압비율	월평균 출동회수	전·의경 동원현황 ³¹⁾ (중대수)
1995	6,857	2,136,700	2,487,120	1:1.2	571	
1996	6,510	2,182,800	2,541,240	1:1.2	542	
1997	6,179	1,993,100	2,914,320	1:1.5	512	
1998	7,684	2,039,300	3,133,560	1:1.5	640	26,113
1999	11,750	3,387,700	3,241,800	1:1	979	27,015
2000	13,012	4,423,000	3,481,551	1:0.8	1,084	29,098
2001	13,083	2,879,840	4,603,060	1:1.6	1,090	34,277
2002	10,165	2,682,857	3,550,800	1:1.3	847	29,590
2003	11,837	2,912,260	4,279,920	1:1.4	986	35,666
2004	11,338	3,034,660	3,965,760	1:1.3	945	19,251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48호(2005.7)내용을 재구성 한 자료임

경찰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시위회수는 2000년과 2001년에 13,000여회에서 지난해 11,000여회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불안원전폐기물관련 시위처럼 지역단위의 대규모, 장기적인 시위형태를 띠고 있다. 연동원경찰인력은 시위인원대비 약 1:1.3정도로 경찰의 시위대응양식은 많은 경찰력(대부분 전·의경)을 동원하여 시위차단 및 해체작전을 전개하는 인해전술에 가까운 대처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자료는 먼저 시위문화의 건전성, 합법성, 합목적성과 아울러 경찰의 시위진압 대처방식에서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5) 사고발생현황

<표2-11> 각종 사고 현황

구분	평균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자살	10.6	13	15	12	12	15	5	10	7	11	6
자해	8.3	14	7	16	8	7	4	10	8	6	3
구타 및 가혹행위	435.3	254	186	291	396	472	623	773	503	499	356
복무이탈	343.3	440	433	443	380	358	333	335	285	219	207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48호(2005.7)내용을 재구성한 자료임

군복무를 대신하여 전환복무하고 있는 전·의경이 부대생활 중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자살은 10개년 평균 10.6명이 부대적 원인 또는 개인적 원인에 의해 자살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자해는 년평균 8.3명이었다. 다음은 전의경의 인권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31) 2004년도 국정감사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임, 2004년도는 1월부터 7월말까지 통계임.

있는 구타 및 가혹행위는 10년평균 435.3명으로 118명에 한명 꼴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복무이탈은 연평균 343.3명으로 이는 150명에 한명 꼴로 복무이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³²⁾

최근 구타 및 가혹행위, 복무이탈의 빈도가 감소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적 행위가 많다고 하는 군과 비교하였을 때 전·의경인원 대비 발생지수는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사고예방대책이 요구된다.³³⁾ 예를들어 전·의경 및 군인 1만명당 자살자수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2003년도는 군인이 1.32명인 반면에 전·의경은 2.30명이었으며, 지난해는 군인이 1.26명, 전·의경이 1.27로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금년 8월까지를 비교하면 군인이 0.71명인데 반해 전·의경은 1.48명으로 전·의경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³⁴⁾ 구체적인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2-12> 세부 사고유형

	순직	사고유형												
		계	총기	자살	살인	과실 치사	자해	강도	절도	강간 추행	폭력	교통 사고	방화	기타
1995	15	158		13	1		14	7	22	7	55	24	1	14
1996	22	136	2	15	1		7	12	19	3	37	25		15
1997	14	117		12	1		16	5	17	7	20	21		18
1998	20	114		12			8	6	23	10	28	14		13
1999	7	70		15	3		7	4	12	3	12	9		5
2000	11	45		5		1	4	7	10	3	5	5		5
2001	5	59	1	10			10	2	11	6	5	7		7
2002	12	58	1	7	1		8	3	13	4	4	7		10
2003	10	54		11		2	6	5	7	4	6	11		2
2004	6	37		6			3	1	6	4	6	6		5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48호(2005.7)내용을 재구성한 자료임

(6) 복무규율위반자 처리

가. 복무규율위반자 현황

다음은 전·의경의 복무중 규율을 위반한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한 자료이다.

32) 2004년도 기준으로 전의경의 인원이 51,419명으로 추산하여 계산하였음. 복무이탈의 중요한 원인은 부대부적응, 복무기피 등 부대적원인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003년도 국정감사자료)

33) 구타·가혹행위의 유형에는 복무생활의 불만족, ·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 집회·시위 진압 등의 업무가 힘들기 때문에, · 업무 이외의 사역(설거지, 버스 청소 등)이 많기 때문에 · 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 상하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 휴게(자유)시간이 부족해서 등이 있다. 구타와 가혹행위의 유형은 발로차기, 식판던지기, 릴레이식 구타, 진압봉구타, 출동버스 속 구타 등이 있고, 가혹행위의 유형에는 알몸신고식, 찬물속 집어넣기, 세면장 푸샵, 부동자세 세우기, 고개 숙이고 있게 하기, 침상에서 다리·고개 들기, 근무전가행위, 부동자세, 벽 붙어 다니기 등 교묘한 유형이 상존하고 있다.

34) 국민일보, 2005년 10월 17일자. “전의경이 군대보다 편하다고?”에서 인용하였음.

<표2-13> 복무규율위반 유형별 현황

유형 연도	계	무단 이탈	미귀	음주	결 례 자	복 장 위 반	두 발 불 량	근 무 태 만	하 급 상	하 급 자 구 타	위 신 추	계 급 사 칭	지 시 명 령 위 반	허 위 보 고	기 타
2002	3,424	177	108			489	585	274		503	33		804		451
2003	3,692	120	99	11	1	671	733	395	8	499	39	1	636	11	468
2004	4,214	106	101	8		536	649	785	6	356	56	2	1,031	3	575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48호(2005.7)내용을 재구성한 자료임.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 비해 매년 전체 복무규율위반자의 총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복장위반, 근무태만, 두발불량, 지시명령위반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무단이탈, 하급자구타 등 중요위반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위반자의 현황을 먼저 보면 무단이탈은 106건, 휴가·외출 등 영외출타 후 복귀하지 않은 미복귀자는 101건, 하급상과 하급자 구타는 362건 등이었고, 징계 등 행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미위반자의 현황은 지시명령위반 및 허위보고는 1,034건, 근무태만 785건, 두발불량 649건, 복장위반 536건 등이었다.

나. 복무규율위반자 처리현황

다음은 위의 복무규율위반자에 대한 경찰당국의 처리현황을 분석한 자료이다.

<표2-14> 복무규율위반자 처리 현황³⁵⁾

	구타				복무이탈				대민사고			
	형사입건		징계		형사입건		징계		형사입건		징계	
	구속	불구속	영창	근신	구속	불구속	영창	근신	구속	불구속	영창	근신
2002	3	7	268	51	42	27	174	24	15	11	7	1
2003	3	14	281	38	20	22	114	14	8	11	6	6
2004	1	5	141	9	15	8	66	3	10	0	3	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도를 기준으로 구타로 인하여 형사입건된 건수는 전체 156건 중에서 6건(구속1건, 불구속5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영창내지 근신의 징계처분으로 형사입건의 비율은 3.8%에 그쳐 구타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³⁶⁾ 복무이탈의 경우는 전체 92건 중에서 형사입건은 23건(구속15건, 불구속 8건)이고, 징계는 69건으로 복무이탈자의 형사입건비율은

35) 2004년 국정감사자료,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요구자료.

36) 2004년도 육군의 경우 구타가해자 1,213명 가운데 형사입건된 건수는 1,190건으로 98.1%이고 이중 구속 196건, 불구속894건이었으며, 구타가해자 중 징계처리된 건수는 8명에 불과하였다.

25%를 차지하였다.³⁷⁾

다. 징계처리절차 및 규정

복무규율위반자 중 주요 복무규율위반자는 징계 또는 기율 교육대 입교토록 취하고, 일반 복무규율위반자는 1차는 경고, 2차는 기율교육대 입교, 3차는 징계조치하며, 기타 가벼운 복무규율위반자는 1차는 현지 훈계, 2차는 경고, 3차는 기율교육대 입교조치하게 되어있다. 전경기율대 운영은 전경이 임무수행시 대민관계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물의와 자체사고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복무규율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전경 기율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다.³⁸⁾ 전경기율교육대는 복무규율 등을 위반한 전경에 대하여는 중앙경찰학교 중앙기율교육대에서 2주간 특별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복무자세를 확립시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자체적으로 관할 전경부대중 1개소를 기율교육대로 선정 운영할 수 있다.³⁹⁾

현재는 중앙경찰학교 내에 기율교육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격주단위(매월2회)로 입교하여 2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기율교육대입교인원은 약1,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라. 영창제도의 운영⁴⁰⁾

영창은 대대본부, 중대본부 및 경찰기관에 둔다. 사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 경찰청 및 학교 등 경찰기관에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유치장을 활용한다. 영창의 일반적인 수칙은 다음과 같다. 입창자는 영창내에서 지정된 행동이외에는 임의로 행동할 수 없다.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받는다. 입창자는 인가된 물품이외에는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지급된 서적을 정독하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한다. 입창자는 지급된 서적을 정독하여 매일 독후감을 1,500자 이상(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작성하여 제출하고, 개과천선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심신을 연마한다 등으로 되어있다.

영창과 관련된 인권침해의 여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다. 군의 경우 장병 인권 사각지대인 영창을 없애고, 구치소를 신설할 계획이다.⁴¹⁾ 또한 그간의 군 형법을 개정하여 군사재판의 경우 장병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장병들이 배심원으로 군사재판에 참여하고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며, 가혹행위 처벌 규정을 강화해 병사 상호간 가혹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이하 징역에 처하고, 성추행 행위도 세분화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으로 군 장병을 위한 사법적 개혁에 노력을 하고 있다.⁴²⁾ 그러나 우리 전·의경제도에서는 영창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물론 군에서 시작하면 전·의경 대원들에게도 대체복무 차원에서 개혁된 사법적 내용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 영창 등은 군의 시설과 군의 적용방식과는 다르게 운용되는 점에서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의 경우 법률의 적용이 독립된 부분이어서 전·의경 대원들에게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괴리감이 있다. 영창제도 자체는 위헌의 소지가 상당하다.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대원을 징계하기 위해서 감금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법적 권한이 없는 지휘관이 일방적으로 대원을 감금하기 때문이

37) 2004년도 육군의 경우 군무이탈자 1,011명 989명이 형사입건되어 97.8%의 비율을 보였고, 징계처리된 건수는 18명에 불과하였다.

38)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79조~제84조의1.

39)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85조~제92조.

40)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99~제110조.

41) 한국일보 2005년 6월29일자 '군에 영창 대신 구치소 설치'.

42) 국정브리핑 2005년 7월 19일자.

다. 이는 불법 체포·감금죄에 의될 수도 있다 하겠다.

우리 헌법 12조의 규정에는 사람을 가두는 형벌은 적법한 절차와 법관의 결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에서이다. 또한 영창은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대원들에게 적용되는 등 남용의 여지 또한 매우 크다. 영창제 이외에도 강등·휴가제한·근신 등 내부의 기강확립과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징계제도가 있으며, 그밖에도 반성문, 외출제한, 사역처분, 봉사활동, 군기교육대, 각종 인사처분 등 대원을 징계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부상자 발생현황

<표2-15> 전·의경부상 현황

구분	순직	공상				사상			
		계	시위진압	일반근무	질환	계	부상	질환	기타
2000	11	1,334	223	941	170	676	221	408	47
2001	5	1,216	227	825	164	717	225	449	43
2002	12	923	138	639	146	629	183	426	20
2003	10	1,007	240	685	82	307	70	231	6
2004.6	6	476	63	352	61	123	33	81	9

※참고 : 2004년도 국정감사자료

다음은 전·의경이 복무중 공·사상현황이다. 사상은 제외하더라도 공상과 순직현황을 보면 교통단속 업무 수행중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매년 약 10여명이 공무수행중에 사망하고 있으며, 시위진압 중에 다치는 전·의경의 수는 200여명으로 다수의 전·의경이 공상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³⁾ 이외에도 교통단속, 방범순찰 등 일반근무 중에 다치는 경우도 매년 600여명 이상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전·의경이 시위현장 등 최일선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소위 경찰관의 보조적 업무수행자로의 역할이 그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한편, 전·의경부상자 치료는 전투경찰대설치법제8조와 제57조,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제166조에 의거 경찰병원과 경찰에서 지정한 병원 등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⁴⁾

(8) 치료현황

가. 병원진료현황

<표2-16> 전·의경 병원 진료 현황

단위:명

구분	외래	입원	계
계	212,774	83,270	296,044
내과	2,522	9,233	11,755
일반외과	4,021	8,263	12,284
정형외과	20,029	42,635	62,664
신경외과	2,227	5,794	8,021
안과	2,520	625	3,145
이비인후과	5,304	4,929	10,233
피부과	7,161	2,036	9,197
비뇨기과	1,963	3,161	5,124
치과	4,119	443	4,562
방사선과	73,170	-	
임상병리과	55,008	-	
물리치료실	11,801	-	
응급실	2,660	286	2,946
신경정신과	1,719	4,313	6,032
재활의학과	1,541	1,272	2,813
해부병리과	913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48호(2005.7)내용을 재구성한 자료임

진료현황을 보면 29만여명이 경찰병원에서 진료내지 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⁴⁵⁾ 외래 진료를 보면 방사선과와 임상병리과가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는 2만이상이 이용하였고, 다음으로 가정의학과, 물리치료실등이었다. 한편, 신경정신과를 이용하는 환자는 외래진료가 1,719명, 입원이 4,313명으로 복무부적응적인 성향을 보이는 자가 다수 발견되었다.

43) 시위진압 중 공상자 중에는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중상자의 비율도 30%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도 국정감사자료참고).

44) 군의 경우 전후방 주요도시에 군병원과 여단급이상부대에 군의관이 배치된 의무대를 운영하여 상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45) 진료현황에서 보이는 숫자는 개인별로 중복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숫자와는 차이가 있다.

나. 전·의경치료절차 및 규정⁴⁶⁾

전·의경 의료절차는 위의 표와 같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자체 치료를 하는데, 대대 및 중대 규모의 경우 의무실을, 소대 규모는 구호실을, 분대 규모의 경우는 구급낭을 이용하는데⁴⁷⁾, 의무실의 진료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와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는 의료절차를 가지고 있다.⁴⁸⁾

전·의경 부대를 운용하고 있는 지방경찰청은 전·의경부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의료시설을 지정병원으로 계약하여 전·의경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7일 이상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경찰병원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근무 중 부상의 경우에 경찰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지만, 사적인 부상의 경우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서울과 근거리에 있는 부대의 대원의 경우 경찰병원에서 치료 등을 할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 교통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경찰병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전·의경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1차로 지정병원 이용이 가능한 부상인 경우 즉시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비가 저렴한 국·공립 등의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중환자의 경우 응급조치 후 경찰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대개의 경우 1차 지정병원인 국공립병원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민간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7일 이상의 장기간의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⁴⁹⁾ 경의 질병을 예방하고, 환자의 적절한 응급처치와 치료 및 매약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전경 의료비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의료비 집행은 공·사상을 막론하고 이환자 및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우선적으로 집행한다. 자체내에서 치료가 곤란하고 시간적으로 국·공립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환자를 개인병원에 응급치료를 하였을 때의 치료비와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치료비중 응급처치비를 제외한 치료비 지출한다. 한편, 전경의 가벼운 부상이나 질환을 자대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대대와 중대 및 독립된 소대 단위별로 의무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⁵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를 전경중대 및 경찰교육 기관에 “의무관”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의무실과 구호실을 설치한 부서에는 소정의 자격 보유자와 교육을 이수한 위생원 또는 위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치하고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한편, 소속기관장은 작전으로 인한 부상자와 긴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하여 수송 및 구급의료 대책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즉, 전투경찰대 주둔 지역내에 위치한 의료기관(보건소, 시립병원, 도립병원, 군통합병원, 기타 국·공립의료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일차적인 긴급구호소로 지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 중환자는 응급조치후 즉시 경찰병원에 후송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환자수송은 작전이 전개되어 출동한 때에는 환자수송용의 긴급구호차를 지정하여 작전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46)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63조~제187조.

47)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68~제169조.

48) 경찰청의무실운영규칙 제7조.

49) 전·의경 담당 기간요원의 경우 국군병원을 이용 할 수 없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었다.

50) 대대, 중대 및 중대경력 규모의 집결부대는 의무실, 소대 단위부대 및 소대규모 부대는 구호실, 소대단위와 분대규모 이하의 부서의 경우 구급낭을 비치하고 의무관 배치 의무실은 차량 1대(1/4톤 구급차)와 운전원 1인을 둔다.

2. 전·의경사고예방을 위한 자체활동

(1) 활동프로그램

구 분	내 용
부대 정비의 날 ⁵¹⁾	주1회 부대정비의 날을 보장하여 각종 근무에 지친 전·의경들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비, 부대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대정비의 날에는 독서, PC 이용, 목욕외출, 면회외출, 부대 체육대회 등으로 심신의 노고·피로를 해소하고 있으며, 각종 게임, 영화감상 등 사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원들 간에 대화의 장을 열어 의기투합하여 부대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미래를 약속,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경의 날 ⁵²⁾	월2회 (첫째·셋째 수요일) 이경의 날을 운용함으로써 이경대원들을 기본 근무 후에는 일체의 사역엿 열외하게 하는 등 자유시간을 보장하고 선임대원이 대신 이경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날에는 이경들에게 독서, 체육활동, 취미활동 등 충분한 휴식기회를 제공하고, 정밀한 신상면담을 실시하여 선임대원들의 보람된 부대생활과 신속한 부대 적응을 하도록 해주는데 의의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한마음 체육대회 ⁵³⁾	전·의경의 사기진작과 대원간의 단결력 및 심신연마를 위한 체육대회를 중대단위로 월·회 이상 전 대원이 참여하여 축구, 족구, 배구 경기 등을 실시하여 전 대원 참여로 협동심을 기르고 있으며, 지방청 주관으로 연 1회 전·의경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는 가족·친구의 날이기도 하다. 모서훈련과 더불어 연1회 실시하는 전·의경 축제이다.
모서훈련(하계야영훈련) ⁵⁴⁾	무더운 여름철 부대의 단결을 도모하고 대원 사기진작·충진을 위해 모서 훈련(하계야영훈련)을 매년 7월경 실시하고 있다. 모서훈련은 2박3일 동안 근무 및 상황출동의 임무에서 잠시 벗어나 중대 대항 체육대회,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등의 레크레이션 및 다양한 먹거리 제공으로 지친 심신을 재정비하고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함께 즐기는 전·의경 축제이다.
우수대원 산업시찰 ⁵⁵⁾	전경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모범 전·의경을 선발 경찰청 계획에 따라 경찰전적지·유적지·사적지·안보현장 및 산업현장 등 견학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종교활동 ⁵⁶⁾	전경의 신앙심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종교활동은 개인의 종교를 고려하여 근무부서 인근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 ⁵⁷⁾	전·의경들은 부대에 농구대, 탁구대,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축구·농구·배구·족구·탁구·당구·헬스·독서·장기·바둑·컴퓨터 등의 동아리를 구성하여 다양한 체육 및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사기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1) 인천지방경찰청, “부대적응을 위한 신입대원 부대생활 길라잡이”, p.45

52) 인천지방경찰청, 전개서, p.45

53) 전투경찰순경등 관리규칙 제199조의 3

(1) 활동프로그램(계속)

구분	내 용
기러기 의형제 ⁵⁸⁾	<p>선임대원들이 신입대원의 부대적응을 돕고 고충을 함께 해결하여 대원들의 부대적응을 돕고 고충을 함께 해결하여 대원들의 사고예방과 사기증진을 높여주는 제도이다. 2명의 선임대원과 1명의 신입대원이 각각 만이-중간-막내로 의형제를 맺어 항상 같이 다니면서 기러기처럼 서로 의지하며, 아껴주어 전우애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p>
전·의경 어머니회	<p>전·의경 어머니회를 구성하여 현재 전국에 5,200여명의 인원이 자원봉사 형식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인원은 자식을 전·의경으로 보낸 어머니 이외에도 지역에서 봉사 정신 등이 투철한 어머니로 구성되어 있다.⁵⁹⁾ 신세대적 특성으로 독특한 개인성향 사회성 부족 등 해소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상담·봉사·위문 활동을 전개하며, 대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부여하고 있다.</p>
전·의경 모범전역자문 위원구성 ⁶⁰⁾	<p>부대별로 전역자 중 최고 모범대원 2~3명을 선정, 부대운영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선임대원 상담·지도 및 정훈교육시 초빙강사로 활용하거나, 근무 시 경험담이나 애로사항을 전·의경과 기간요원에게 조언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부대운영에 있어 대원들이 바라는 바를 자문하는 역할수행 할 뿐만 아니라 진정성격으로서 경찰홍보 역할기능도 하고 있다.</p>
사이버 경찰청 피해신고 ⁶¹⁾	<p>사이버 경찰청 ‘전의경신문고’ 등 인터넷 활용 적극적인 홍보와, 정훈자문위원, 목사·스님 등 종교성직자, 전·의경어머니 회원을 전문상담관으로 위촉하고 직접상담과 전화·E-mail 을 활용하여 고충상담 및 처리를 하고 있다.</p>
무궁화 포럼 ⁶²⁾	<p>조직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 조성 및 인권 의식함양 등을 통해 자체사고 방지는 물론 조직생활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궁화 포럼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운영방침은 경찰서 전·의경의 경우 경찰서별 무궁화 포럼 개최하며, 상설중대의 경우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하여 각종 자체 사고와 관련한 연극 및 경품 추첨행사 등의 개최로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한다. 실시계획에 있어 횡수는 월 1회로서 매월 부대정비일 등 휴무일에 실시하며, 실시방법은 1부 특강으로서 강사는 중대장 또는 초청강사이며, 초청강사는 전·의경 부모, 전·의경 어머니 회원 등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반드시 분기 1회 실시하고 있다. 내용은 인권의식 함양 및 자체사고 방지 업무와 전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며, 2부는 연극 발표 및 추첨 등을 한다.</p>
정훈관제도의 운영	<p>중대 단위에 경위급 이상 간부를 정훈관으로 지정하여 대원 정신교육과 상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 신상면담을 통해 관심요구전경을 사전 파악하여 특별 관리하고, 소원수리는 전경중대는 분기1회 이상 실시한다. 사고예방교육은 지휘관은 월1회, 참모는 주1회이상 사고예방을 위한 정신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⁶³⁾</p>

54) 인천지방경찰청, 전계서, p. 47
 55) 전투경찰순경등 관리규칙 제199조의 2
 56) 전투경찰순경등 관리규칙 제199조
 57) 인천지방경찰청, 전계서, p. 47
 58) 인천지방경찰청, 상계서, p. 16
 59) 김성진 (경찰청 경비국 전경관리계장)의 인터뷰 내용중 일부

(2) 평가

경찰은 전·의경 사고예방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전·의경을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서 부서 간 협조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도 한 가지 이유이다. 즉, 전의경의 인적관리는 전경관리계에서 하지만 경비 및 작전 업무는 경비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전·의경의 시위진압작전과 방법순찰 등 과다근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셋째, 전·의경관리전문가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즉, 전·의경상담전문가의 부재와 정훈을 담당할 전문가가 없이 제도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이다.

제3절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검토

현재 전·의경은 전체경찰인력의 약35%를 차지하고 정식경찰관의 임무를 대행내지 보조하는 등 경찰조직에서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지만,⁶⁴⁾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술적 연구로는 전·의경의 사기증진방안에 관한 연구,⁶⁵⁾ 전경의 사기 및 의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⁶⁶⁾, 전국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하는 전·의경 사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⁶⁷⁾ 등 전·의경의 의식조사 및 전·의경조직의 관리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한편 군입대자를 전경으로 전임하여 치안보조업무를 시킬 수 있는가하는 전·의경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송기춘은 국방의 의무를 광의로 해석하여 전투경찰순경에 의한 대간첩작전수행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안이한 시각임을 지적한다.⁶⁸⁾ 그 이유로는 현재의 남북화해분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대간첩작전을 수행해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군부대의 병력수준과 작전능력을 감안한다면 현재와 같은 대간첩작전을 위한 경찰조직은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경찰조직에서도 작전전투경찰 대부분이 대간첩작전보다는 집회·시위의 진압, 방법순찰과 같은 치안보조업무를 주로 하는 것만 보아도 대간첩작전임무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경에게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에 대한 위헌논란에서 재판관 5인의 의견은 전경은 대간첩작전 수행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진압 등을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본래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재판관 4인의 소수의견은 전경으로 전임되는 현역병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할 뿐이고,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임무는 결코 국방의 의무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60) 울산지방경찰청, “전·의경 관리개선 종합대책”

61) 울산지방경찰청, “선진 전의경 문화 추진계획 하달”

62) 울산지방경찰청, “2005 전·의경 무궁화 포럼 실시 계획”

63)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제73조에서 76조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64) 경찰의 인력구성(경찰청, 경찰백서(2004)참고)을 보면 전체 146,705명중에 경찰관은 92,165명, 전의경은 50,609명으로 전의경이 차지하는 비율은 34.5%를 차지하였다.

65) 신성원, “전·의경 사기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의경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33호, 2004, pp. 195-227.

66) 박광치, “전경의 사기 및 의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전경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67) 이철구, “전·의경 사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68) 송기춘,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제4차, 시민의신문사/인권실천시민연대, 2005, p. 33.

송기춘도 이러한 소수의견에 따라 아무리 국방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다 해도 일반적인 치안유지업 무가 국방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고 한다.⁶⁹⁾ 한편 같은 취지의 이계수도 “대간첩작전과 같은 대외 적 안전과 관련된 임무수행부대를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대내적 안전과 관련된 임무에 투입해도 좋 다고 믿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군과 경찰의 조직 및 임무 의 구분이라는 헌법상의 국가구성원리는 무의미하게 된다고 하면서, ‘대간첩작전시’에만 출동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 병력을 모든 일상적인 시위현장에 투입시키는 관행과 그러한 관행을 현행법에 의해 정당화하는 해석은 헌법위반이다.”라고 주장한다.⁷⁰⁾

즉 전·의경의 과격시위에 대한 진압활동은 가장 격렬한 형태의 범죄대응이며 이는 전·의경조직의 설립취지인 치안보조적 기능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현재 시행되고 있 는 형태의 전·의경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형태로 전·의경제도의 향후 전개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대상으로 보인다.

한편 전·의경에 대한 논의들은 “전·의경 경찰봉이 서럽다: 밤낮 없는 근무에 청춘시드는 최전선의 공권력... 간간한 군기, 잡다한 임무 등에 자살, 탈영 잇따라”⁷¹⁾, “이리 채이고 저리 맞고, 전투경찰은 피로워 : 시위출동 등 격무에 구타사고도 잇달아..., 의경제도 폐지검토필요”⁷²⁾, “혈값에 경찰머슴살이, 할일 없는 전경, 시위진압 중”⁷³⁾ 등 신문이나 잡지 등 보도가 각종 사건사고발생시 일회성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시민의신문사와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주관한 경찰개혁 연속정책토론회의 제 4차 주제로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이 선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의경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과제로 선정하면서, 전·의경의 인권문제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당국은 구타/가혹행위, 복무이탈, 자살/의문사 등 각종 전·의경사건·사고로 경찰에 대한 여론악화는 물론 업무수행 상 차질을 가져오는 등 심각성을 인식하고서 “전경사고예방” 및 “전·의경 관리요령”에 관한 지침들을 만들어 일선부대에 하달하고 있다. “전경사고예방”이라는 지침서는 전· 의경의 자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살자의 특성, 자살에 대한 일반이론은 물론 자살예방기법을 소개하 고 사후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고발생시의 조치사항 등을 중점 소개 하고 있다.⁷⁴⁾

또한 “전·의경관리요령”지침은 전·의경조직의 개혁추진과제로 사기진작방안, 가울교육제도의 개 선, 한마음체육대회 활성화방안, 사고예방강화대책 등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구타·가혹행위 처리 지침과 근절대책을 제시하고 순직·공상 등 전·의경 보상업무, 의료업무, 인사업무 등의 처리요령과 그 개선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는 정도이다.⁷⁵⁾

군인의 인권상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된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 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가 대표적이다.⁷⁶⁾ 군대의 인권관련 연구는 구타 및 가혹행위를 포함한 폭행사고의 실태 및 그 원인분석과 예방대책⁷⁷⁾, 자살사고의 실태 및 그 원인분석과 예방대책⁷⁸⁾은 물론

69) 상계논문, pp. 35-36.

70) 이계수,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 : 군사와 치안의 착종(錯綜)과 민군관계의 진도”, 공법연구 제31집 제4호, 2003.

71) 정인환, “전·의경 경찰봉이 서럽다: 밤낮 없는 근무에 청춘시드는 최전선의 공권력... 간간한 군기, 잡다한 임무 등에 자살, 탈영 잇따라”, 한겨레 21, 통권 437호, 2002, pp. 54-56.

72) 나권일, “이리 채이고 저리 맞고, 전투경찰은 피로워 : 시위출동 등 격무에 구타사고도 잇달아..., 의경제도 폐지검토필요”, 시사저널 548호, 2000, pp. 54-55.

73) 강국진, 「시민의 신문」, 2005.9.5, pp. 6-7.

74) 경찰청, 전경사고예방 : 자살과 자해(서울: 경찰청, 1999).

75) 경찰청, 전경관리요령 : 신지식 경찰관 육성(서울: 경찰청, 2000).

76)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2).

77) 군대내의 폭행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계수(2003), “군대내 구타·가혹행위 및 그로인한 사고방 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정의광(2001), “군 폭행사고의 심리적·사회적 원인분석과 예방대책 에 관한 연구”, 오윤성(1996), “군부대내의 폭행에 관한 피해자학적 연구: 상호작용적 관점을 중심으로”, 정진 호(1995), “군 폭행사고의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사병의 사기증진 및 이를 위한 민주적 조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다.⁷⁹⁾

한편, 전·의경 조직에서 발생하는 구타/가혹행위 및 자살/의문사 등 각종 인권침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그 발생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폭력이나 공격행위에 대한 생물학적 이론들은 대개 폭력을 본능적인 행위로 보거나 유전적인 요인이나 호르몬의 영향, 신체적 특징 혹은 신경 메커니즘의 문제나 내적인 욕구가 분출한 것으로 파악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성격 등 ‘심리적 비정상성’이 폭력이나 공격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어떤 조직사회의 환경과 문화가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⁸⁰⁾ 폭력하위문화이론에 의하면 자극에 대한 반응양식으로서 폭력이 불법적이거나 죄의식을 느낄만한 대상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다. 폭력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들은 폭력이 유발되는 사회환경적 요인들에 관심을 가진다. 또한 사회학적 이론을 기초로 하여 그 범위를 확장한 상호작용이론은 조직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폭력이 야기된다는 것이다⁸¹⁾.

실제 병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문만재는 구타 등 폭력행위 발생요인으로 “폭행을 촉발시키는 요인, 습관성의 정도, 억제요인, 상황적 요인, 반응 잠재력이라는 5개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⁸²⁾ 고기환은 폭행의 원인을 사소한 시비, 사적 제재, 음주행패, 개인감정, 고참병 횡포, 상급자 구타, 기타로 구분하는 육군본부의 분석을 바탕으로 “폭행사건의 원인의 대부분이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데서 오는 갈등”에 있다고 설명한다.⁸³⁾

한편 군내에서 발생하는 자살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지만 크게 개인적·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심리적 요인으로는 전·의경 개인의 인내력과 자제력 부족, 권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부대생활 조건에 대한 불만족에 따른 정신적 나약함, 사회와의 단절에 따른 피해의식 등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통제된 생활, 부대내 의사소통의 장애, 부대관리자들의 불충분한 관리, 불합리한 조직 내의 제도나 관행의 미개선 등을 들 수 있다.

경찰청은 전·의경의 유서로 자살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자살자의 대부분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인지협착을 경험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자살원인으로 좌절된 사랑, 수치심과 불명예심, 증오와 복수심, 자학과 무가치함에 대한 반성, 불안과 두려움 등을 들고 있다.⁸⁴⁾

한편, 김경래는 의식의 문제를 통해 군내에서 발생하는 각종사고를 설명한다. 즉 개인의 내적인 세계에서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심리현상인 의식성향이 사고자와 비사고자 간에는 다르다고 하였고⁸⁵⁾, 여명호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신세대의 의식성향 사이의 불일치가 자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⁸⁶⁾

78) 군내의 자살사고와 관련된 연구에는 다음과 같다. 이창훈(2004), “군 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홍홍표(2004), “군인 자살사고의 실태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박순천, 박순화, 나정순(2004), “군내 자살예방대책 효과분석 : 비전캠프를 중심으로”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된바 있다.

79) 사병의 사기증진 등 조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는 김상균(2001), 병영스트레스가 군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열(1997), “신세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군대문화의 발전방향” 등의 다수 논문이 있다.

80) 폭력문화에 대한 설명의 대표적인 이론은 폭력하위문화이론으로 볼 수 있다. 한 예로, Wolfgang과 Ferracuti는 미국 남부의 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서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였다. 폭력하위문화이론에서 폭력은 문화적 환경 속에서 학습되고 공유되는 행위양식으로 파악하였다.

81) 즉 ①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가치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행위가 유발된다. ② 폭력행위를 유발시키는 상황적·상호관계적 요소, 즉 행위유발을 하게하는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③ 폭력행위결정에 있어 행위자의 의식이나 자각이 중요하다. 즉 상호작용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세요소가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82) 문만재, “군내에서의 구타에 관한 인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 p. 2.

83) 고기환, “육군 폭행사건의 실태와 예방대책”,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34.

84) 경찰청, 전게서, pp. 10-18.

85) 김경래, “군사고 예방을 위한 병사의 이식구조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 5.

86) 여명호, “군 자살사고의 실태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44.

박경훈은 부대내 사고의 원인을 지휘관의 ‘지휘결여’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휘권의 결여는 구체적으로 ‘각종 부조리의 조장 또는 방치’, ‘지휘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사적 제재’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김상균은 병사들의 복무중에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탈영과 폭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⁸⁷⁾

제3장 전·의경의 인권실태 기초조사

제1절 조사방법

1. 조사항목의 구성

본 연구는 전·의경의 인권실태를 파악하여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의경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의 방법은 설문에 의한 조사와 현장실사를 통한 방문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설문문의 구성과 방문조사의 항목은 관련 문헌과 전·의경에 관한 선행연구, 사전면접조사⁸⁸⁾, 군의 인권상황과 관련된 선행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우선 설문은 전의경의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이기 때문에 인권상황의 범위를 확장하였고, 아래 표에서와 같이 크게 여덟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현재 전·의경으로 복무하는데 따른 만족도에 관한 내용이다. 즉 현재의 심정,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보직에 대한 만족도, 애로사항에 대한 부대의 조치들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전·의경의 근무관계와 내무생활 및 외출외박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근무관계로 근무·자유·수면시간, 야간근무회수, 출동회수, 부상경험, 부상 후 치료나 휴식보장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내무생활과 관련하여 비공식조직의 존재, 금전각출, 복지 및 편의시설, 냉·난방수준, 사생활 보장, 급식 위생·청결상태, 수면, 내무반청소, 금지사항, 직속상관과의 면담, 부대정비의 날 보장, 면회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끝으로 외출·외박·휴가의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첫 외박시점, 외출·외박·휴가 시의 부대공적업무 수행여부, 귀대 시 물품반입강요 등을 조사내용으로 하였다.

셋째, 구타·가혹행위의 가해 및 피해경험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타나 가혹행위의 가해나 피해의 유무, 회수, 도구, 유형 등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하지만 구타·가혹행위의 피해이유나 가해이유, 피해당시계급, 가해자의 계급, 발생시간, 발생장소, 대처현황, 피해당시의 느낌, 왕따(집단따돌림)의 유무 등이 설문문에 포함되었다.

넷째, 자살 및 복무이탈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자살이나 복무이탈을 가장하고 싶었던 시기, 자살이나 복무이탈 시도유무와 그 이유, 자살이나 복무이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의 대처방법 등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부대 내의 남성간의 성적접촉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부대 내의 성적접촉에 대한 가치판단, 성적 비하나 놀림에 대한 경험, 신체적 접촉에 대한 거부감, 성경험얘기, 애인소개 등의 강요경험, 성적접촉의 유형·장소·발생상황 및 성적접촉 피해자의 행동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여섯째, 인권교육과 의식 및 종교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인권과 관련해서는 인권교육의 실시현황, 언어적 또는 신체적 구타·가혹행위의 필요성,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종교활동 보장정도, 종교활동의 강제성 등을 포함하였다.

일곱째, 보급품과 대원개인의 사비지출 및 기타의견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부대에서 지급하는 속

87) 김상균, 전계논문, pp. 52-77.

88) 전·의경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옷, 양말, 체육복, 운동화 등 보급품의 지급수량과 품질의 만족정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또 봉급이나 수당 외에 사용하는 사비지출정도 등도 포함하였다.

여덟째, 조사대원들의 계급, 근무부대, 연령, 학력 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내용이다. 계급의 경우 이경은 3개월이하 근무 대상자와 5개월 근무자, 일경은 이경에서 진급 후 3월 이내와 4-7월 근무자, 상경은 일경에서 진급 후 3월 이내와 4-7개월 근무한 자, 수경은 상경에서 진급 후 3월 이내와 그 이상자를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부대 유형은 전투경찰대, 경찰기동대, 방법순찰대로, 연령은 21세와 22세 이상의 대상자를, 학력은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문항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개략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표3-1> 설문지의 구성

분야	문항내용	문항수
전·의경의 복무만족정도	전경차출에 대한 반응, 현재의 심정, 복무생활 불만족이유, 보직의 만족도, 애로사항에 대한 부대차원의 조치 등	5
근무, 내무생활 및 외출·외박·휴가실시관계	근무·자유시간·수면시간, 야간근무, 출동, 부상경험, 치료, 복지 및 편의시설, 사생활 보장, 위생·청결상태, 청소, 면담, 면회, 외출·외박·휴가의 실시, 등	33
구타·가혹행위 가해 및 피해경험	구타 가·피해 유무, 회수, 가혹행위 가·피해 유무, 회수, 구타·가혹행위의 피해이유, 구타·가혹행위 가해이유, 피해당시 계급, 가해자계급, 발생시간, 발생장소, 구타도구, 대처현황 등	24
자살 및 복무이탈 의도 및 경험	가장하고 싶었던 시기, 자살이나 복무이탈시도유무, 자살이나 복무이탈의 이유, 본인의 대처현황	4
성적접촉경험	부대내의 성적접촉에 대한 가치판단, 성적 비하나 놀림경험, 신체적 접촉, 성적접촉의 유형·장소·발생상황, 피해자의 행동 등	9
인권의식 및 종교활동보장	인권교육, 인권존중분위기, 욕설·폭언의 필요성, 구타·가혹행위의 필요성, 종교활동보장정도, 종교활동에의 동원경험 등	8
보급품, 사비지출 및 기타 의견	속옷, 양말, 체육복, 운동화 등 필수품의 보급실태, 착용감이 나 품질의 만족정도, 개인사비지출정도 등	5
인구사회학적 변수	계급, 근무부대, 연령, 학력 등	4
총 문항 수		92

한편,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한 현장조사는 설문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시설의 규모와 설치 및 운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의 항목은 시설물의 건축년도, 형태, 내무반의 실면적과 1인당 면적, 침상형태, 휴게실, 면회실, 매점, 식당 및 급식시설, PC방 등 전·의경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편의복지시설의 현황이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현장방문조사는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위해 방문한 부대는 실제조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방문하지 못한 부대는 각 지방경찰청에 협조하여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2. 표집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의 표본추출방법은 모집단을 2개 이상의 상호배타적인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내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전국의 전경대, 기동대, 방순대를 지역별로 층화하여 추출 한 후 각 층에서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였다. 이때 각 층의 크기를 고려한 비례층화방법을 사용하였고, 통계분석 시 각 층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설계하였다. 다만, 알몸신고식, 자살사고 등으로 문제점이 많은 부대로 알려진 소수의 부대(4개 부대)에 대해서는 이러한 표본추출방법을 배제하고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설문조사는 2005년 9월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연구자가 직접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의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14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지역별·부대유형별로 구분하고 전·의경 대원수에 비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각 부대별 조사대상수는 계급별로 15명씩으로 하여 60명 내외로 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조사한 부대에서는 이경이나 수경 등 특정계급의 총원이 15명에서 부족한 부대들이 다수 발견되어 이러한 부대들에서는 인접계급의 대원들에게 설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컨대 이경이 부족할 경우 일경진급이 얼마 안 된 일경으로 부족분을 채웠다. 다만 이경이 1명이거나 수경이 없는 부대들은 나머지 계급으로 60명 내외를 설문하였다.

부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 복무 부대원들의 응답의 충실성과 공정하고 객관적 응답을 구하기 위해 우선 계급별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기간요원이나 기타 선임대원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조치만으로 이미 교육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오는 결과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구조사의 비밀성 및 조사대상부대에 대한 피해가 전무함을 설명하였고, 더 나아가 이번 조사는 소속부대는 물론 부대원 및 앞으로 전·의경이 될 후임들의 근무조건과 복지 및 편의시설 향상을 위해서는 진실된 답변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아래 <표3-2>와 같이 전국의 전·의경 부대 중 전경대 8곳, 기동대, 10곳, 방순대 8곳 등 총26개의 부대를 조사하였다. 설문은 총 26개 부대에 1,540부를 설문하였고, 불성실한 답변이나 부대유형을 미 기재한 설문지 196부를 제외한 총 1,344부(87.2%)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표3-2> 표집대상 및 설문부대

지역	조사대상		설문인원	불성실응답수	실제코딩수
서울·경기권	방순대	3개소	180	38	142
	전경대	3개소	180	32	148
	기동대	4개소	240	12	228
	소계	10개소	600	82	518
강원·충청권	방순대	1개소	60	7	53
	전경대	2개소	105	13	92
	기동대	2개소	120	8	112
	소계	5개소	285	28	257
전라·제주권	방순대	2개소	120	21	99
	전경대	2개소	115	23	92
	기동대	1개소	60	3	57
	소계	5개소	295	47	248
경상권	방순대	2개소	120	21	99
	전경대	1개소	60	6	54
	기동대	3개소	180	12	168
	소계	6개소	360	39	321
총계		26개소	1,540	196	1,344

또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별도의 점검표를 사용하여 내무생활은 물론 각종 복지 편의시설을 직접 조사하였다. 내무반의 크기를 실측하기도 하였고 에어컨 및 각종 편의기구를 직접 가동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조사연구원이 직접 방문하는 부대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점검표를 송부하고 내무반 및 각종 복지·편의시설 현황을 우송하도록 하였다.

한편 자료의 정확한 수집을 위해 사전에 지방경찰청 작전전경계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협조를 구하였다. 부대를 직접 방문함에 있어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원1명과 연구보조원1명 등 2명1개조로 나누어 설문에 임하여 직접 응답자인 대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응답방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문내용을 문항별로 읽어주고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특히 조사대상자인 대원들이 최대한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개인간 거리를 충분히 이격하는 등의 노력을 강구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였다. 접수된 설문지는 코딩작업을 거쳐 빈도분석과 필요시 교차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적 처리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12.0K을 활용하였다.

3.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3-3> 인구통계학적 자료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계급 N=1,322	이경(3개월이하)	202	15.3	학력 N=1,316	고 졸	67	5.1
	이경(4-5개월)	112	8.5		대 재	1,217	91.6
	일경(진급후3월이내)	113	8.5		대 졸	29	2.2
	일경(진급후4-7월)	160	12.1		대학원이상	3	0.2
	상경(진급후3월이내)	182	13.8	종교 N=1,328	기독교	344	25.9
	상경(진급후4-7월)	244	18.5		천주교	168	12.7
	수경(진급후3월이내)	234	17.7		불 교	328	24.7
	수경(진급후4월이후)	75	5.7		기 타	254	19.2
부대 유형 N=1,317	전투경찰대	328	24.9	연령 N=1,299	무 교	234	17.6
	경찰기동대	565	42.9		21세이하	833	64
	방법순찰대	424	32.19	22세이상	467	36	

설문조사에 이용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중에서 중요한 변수로 활용될 계급별 분포와 부대유형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급은 전·의경의 계급이 4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급별로 세밀한 통계분석을 위해 1개 계급을 두개로 나누어 총 8개의 계급으로 세분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입대후 3개월 미만인 이경은 202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15.3%를 차지하였고, 일경은 일경진급후 3개월이내인 자는 113명으로 전체 8.5%, 상경은 상경진급후 3개월이내인 자가 182명으로 전체 13.8%이고, 수경은 수경진급후 3개월이내인자가 234명으로 전체 17.7%로서 계급별 분포가 통계처리에 적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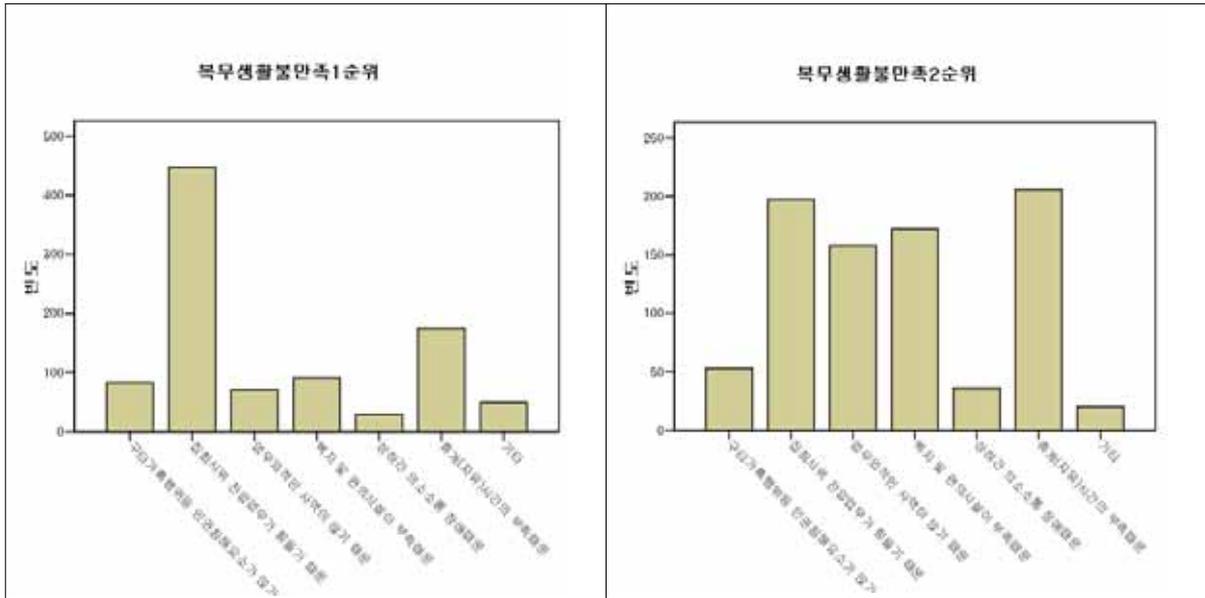
둘째, 부대유형별로 보면 전투경찰대에 소속된 조사대상자는 328명으로 24.9%를 차지하였고, 경찰기동대는 565명으로 42.9%, 방법순찰대는 424명으로 전체 32.2%로서 전체 전·의경의 분포를 고려해 볼 때 통계활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은 학력별 분포는 고졸이하가 5.1%, 대학재학은 전체의 92.5%, 대졸이상은 1.4%이었으며, 종교별 분포는 기독교와 불교가 각각 25.9%, 24.7%, 천주교 12.7%, 무교가 17.5%이었다. 연령은 21세 이하가 64%, 22세 이상은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1. 복무생활 불만요인

전·의경이 부대에서 맡은 보직(임무)나 복무생활에 따른 불만요소들은 부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전·의경들이 복무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복무생활 불만족 이유를 순위를 정하여 응답하게 한 조사분석의 결과들이다.



<표 3-4 > 복무생활 불만족이유

	불만족 1순위		불만족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요소가 많기 때문	83	8.8	53	6.3
집회시위 진압업무가 힘들기 때문	447	47.4	197	23.4
업무외적인 사역이 많기 때문	70	7.4	158	18.8
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 때문	90	9.5	172	20.4
상하간 의사소통 장애 때문	29	2.2	36	4.3
휴게(자유)시간의 부족때문	175	13.1	206	24.5
기타	49	3.7	20	2.4
합계	943	100.0	842	100.0

그림과 표에서와 같이 전·의경들은 복무생활 불만족 이유 1순위로 ‘집회·시위 진압 등의 업무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총943명의 전·의경 중에서 447명(47.4%)으로 가장 많았다. ‘휴게(자유)시간의 부족 때문’이 175명(13.1%), ‘복지 및 편의시설의 부족 때문’이 90명(9.5%)으로 다음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요소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3명(8.8%), ‘상하간 의사소통의 장애 때문’이라는 응답이 29명(2.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무생활 이유 2순위에 대한 응답은 총842명의 전·의경 중에서 206명(24.5%)이 ‘휴게(자유)시간의 부족 때문’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집회·시위 진압 등의 업무가 힘들기 때문’과 ‘복지 및 편의시설의 부족 때문’이 각각 197명(23.4%)와 172명(20.4%)이 휴게(자유)시간의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과 유사한 20%대를 보였다. 다음으로 휴게시간의 부족과도 연관이 있지만 ‘업무외적 사역이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순위와는 달리 158명(18.8%)에 달하였다.

또한 각 계급별로 복무생활 불만족이유를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 가장 많은 불만족 이유로 응답된 ‘집회/시위 진압 등 업무가 힘들기 때문’의 경우 총 441명 중 상경이 169명(38.3%)으로 가장 많고, 수경 101명(22.9%), 일경 91명(20.6%), 이경 80명 (18.1%)이었다. 또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한 ‘휴게

(자유)시간의 부족'의 경우 총 175명 중 상경이 64명(36.6%)으로 가장 많고, 수경 45명(25.7%), 이경 42명(24.0%), 일경 24명(13.7%)이었다. 그런데 '업무가 힘들다'와 '휴게시간 부족'이라는 응답에서 이경과 일경의 반응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업무가 힘들다는 경우는 이경이 18.1%인 반면 휴게시간의 부족의 경우는 24.0%로써 이경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휴게시간 부족'을 불만이유로 크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외적인 사역이 많다'는 총 70명 중 일경이 22명(31.4%), 이경이 21명(30.0%), 상경이 14명(20.0%), 수경이 13명(18.6%)이며, '상하간 의사소통 장애 때문'은 총 28명 중 상경이 10명(35.7%), 이경이 9명(32.1%), 수경이 7명(25.0%), 일경이 2명(7.1%)이었다.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의 경우는 총 80명의 응답자 가운데 상경 26명(32.5%), 이경 21명(26.3%), 수경 20명(25.0%), 일경 13명(16.3%)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이경 등 계급이 낮을수록 '업무외적인 사역'이나 '상하간의 의사소통의 장애' 및 '구타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요소 등으로 인해 복무생활이 불만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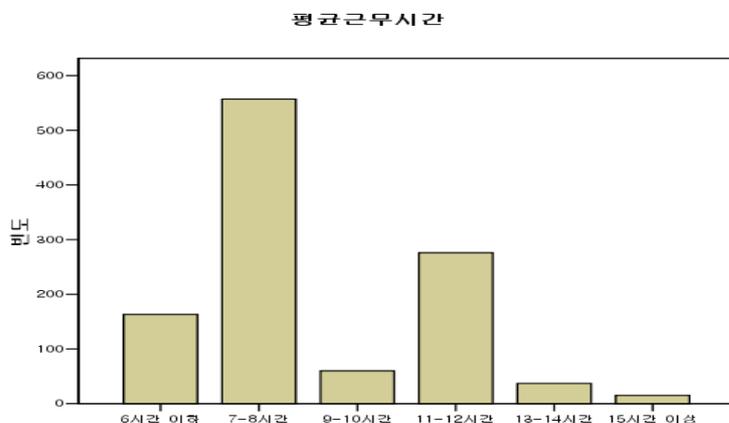
한편 근무부대별로 구분하여 불만족 이유를 파악하면, 전체부대원의 복무생활불만족 순위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업무가 힘들기 때문', '휴게시간의 부족', '복지 및 편의시설의 부족'이다. 그런데 각 부대별로 파악하면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경대의 경우 '업무가 힘들다'는 전체 대원 244명 중 135명으로 가장 많지만 두 번째가 '복지 및 편의시설의 부족'(32명)으로 '휴게시간의 부족'(25명)을 이유로 든 것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또한 기동대와 방순대의 경우 전체 세 번째로 많은 불만이유인 복지 및 편의시설의 부족대신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요소'가 세 번째로 많은 이유로 응답했다는 것이다. 즉 기동대의 경우 전체 388명 중 '업무의 힘들'이 154명(39.7%), 휴게시간부족이 83명(21.4%), 구타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41명(10.6%), 업무외적 사역과 복지시설부족이 각각 38명(9.8%), 상하간 의사소통 장애가 16명(4.1%), 나머지는 기타였다. 방순대의 경우도 전체 303명 중 업무의 힘들'이 154명(50.8%), 휴게시간부족이 67명(22.1%), 구타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24명(7.9%), 복지시설부족이 19명(6.3%), 업무외적 사역이 13명(4.3%), 상하간 의사소통 장애가 6명(2.0%), 나머지는 기타였다.

전경대는 아래 방문조사에서도 논의되지만 노후화된 단독건물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지 및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기동대와 방순대는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편의 및 복지시설의 부족보다 더 중요한 불만요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2. 휴식 및 근무관계

1) 평균근무시간관계



<표 3-5> 평균근무시간

	6시간 이하	7-8시간	9-10시간	11-12시간	13-14시간	15시간이상	합계
빈도	163	557	60	276	37	15	1,108
비율	14.7	50.3	5.4	24.9	3.3	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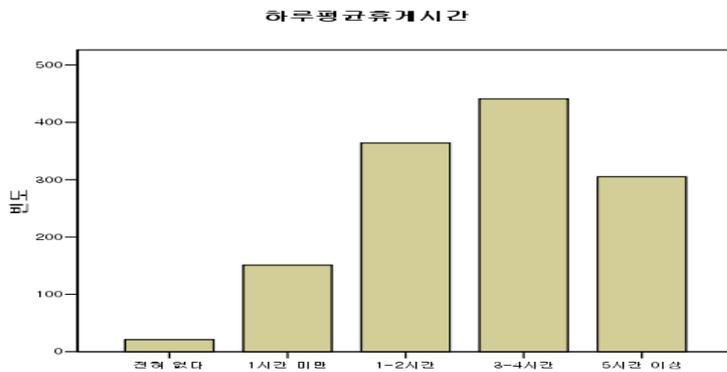
위의 표는 전의경의 하루평균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평균 7-8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1,108명 중 50.3%인 557명이지만 11-12시간을 근무한다는 응답도 24.9% 276명이었고, 심지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원도 1.1%인 15명이나 되었다. 즉 9시간 이상 과다 근무하는 대원들이 조사대원 1108명 중 35% 3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 근무시간을 보면 이경, 일경, 상경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원이 각각 5명, 4명, 6명으로 전체 15명 중 각각 33.3%, 26.7%, 40.0%를 차지하였다 반면 수경은 15시간 이상근무자가 1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부대별 근무자들의 평균근무시간을 보면 11시간 이상 과다 근무하는 대원들이 전경대 89명, 기동대 167명, 방순대 71명으로 각각 15.5%, 20.0%, 7.1% 였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당 40시간, 1일당 8시간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4시간 당 30분 이상, 8시간 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전·의경을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의무복무자로 여긴다고 해도, 야간 불침번을 제외하면 공휴일과 1일 8시간복무가 보장되는 군인보다도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있다. 그리고 신입대원일수록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신입대원에 의한 근무전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휴게시간관계



<표3-6> 평균휴게시간

	전혀없다	1시간 미만	1-2시간	3-4시간	5시간 이상	합계
빈도	21	151	364	441	305	1282
비율	1.6	11.8	28.4	34.34	23.8	100.0

위의 표는 전의경의 하루 중 평균 휴게/자유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 평균 휴게 시간이 '전혀없다'가 1.6%(21명), 1시간 미만인 경우가 11.8%(151명)이고 1-2시간인 경우가 28.4%(364명)으로 총 응답자 1,282명 중에 41.8% 인 536명이 '2시간 미만'의 휴게/자유시간을 갖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급별 휴게시간을 보면 전혀 없다는 응답이 이경 3.8%(11명), 일경 0.7%(2명), 상경 1.5%(6명), 수경 0.3%(1명), 1시간 미만이라는 경우는 이경 10.8%(31명), 일경 16.6%(45명), 상경 12.6%(52명), 수경 6.3%(19명)이며, 1-2시간이라는 응답은 이경 31.1%(89명), 일경 32.1%(87명), 상경 30.3%(125명), 수경 20.3%(19명)이었다. 이 조사결과 이경은 '전혀없다'에서 일경은 '1시간미만'이라는 응답에서 평균적인 응답보다 많은 응답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시간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이경이나 일경 등 신입대원들이 상경이나 수경 등 선임대원들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업무외적 사역 등에 많이 동원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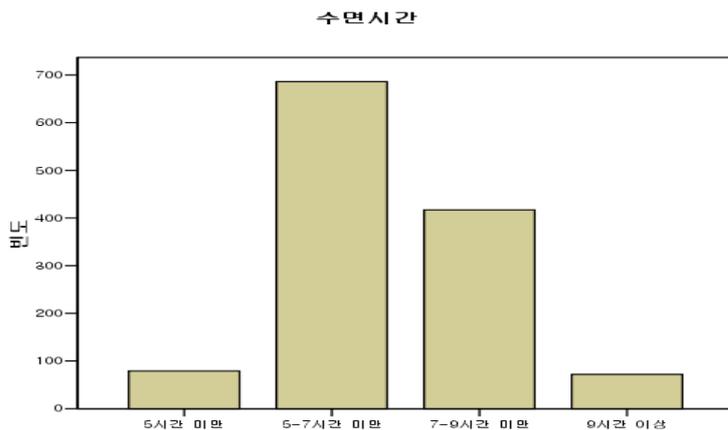
부대별 휴게시간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전혀없다는 응답은 전경대 0%(0명), 기동대 2.8%(16명), 방순대 1.0%(4명),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전경대 11.2%(34명), 기동대 15.6%(90명), 방순대 6.4%(25명), 1-2시간이라는 응답은 전경대 30.0%(91명) 기동대 30.8%(178명), 방순대 23.7%(93명)이었다.

기동대의 경우 휴게시간이 전혀 없거나 1시간미만인 경우가 다른 부대보다 많아 휴게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경대는 휴게시간이 1-2시간이라는 응답이 다른 부대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대간의 주요업무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방순대의 경우 주요업무가 방범경찰임에 반하여 기동대와 전경대는 경비경찰이다. 방범경찰은 주로 범죄예방에 초점이 있고 현재 경찰서나 지구대가 3교대근무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근무 및 휴게시간이 비교적 고정적이다. 반면 경비경찰은 집회/시위 등 사건발생이 예측할 수 없어 항상 대기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의 요청 시에 야간방범순찰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방순대도 경비경찰에 동원되기도 하므로 부대간의 업무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휴식보장은 업무에 따른 차이보다는 각 부대를 운영하는 관리자 및 경찰당국의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인 부대 관리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3) 수면시간문제



<표 3-7> 수면시간

	5시간미만	5-7시간	7-9시간	9시간이상	합계
빈도	79	686	417	72	1254
비율	6.3	54.7	33.3	5.7	100.0

위의 표는 전의경의 하루 평균수면시간을 조사한 내용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 평균 7-8시간이라는 응답이 33.3%(417명)이었고, 9시간 이상 수면시간을 갖는 경우도 5.7%(72명)나 되었지만, 수면시간이 5시간미만이라는 응답도 6.3%(79명)이고 5-7시간의 수면시간을 갖는 경우가 조사대상 1254명 중 54.7%(686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전·의경의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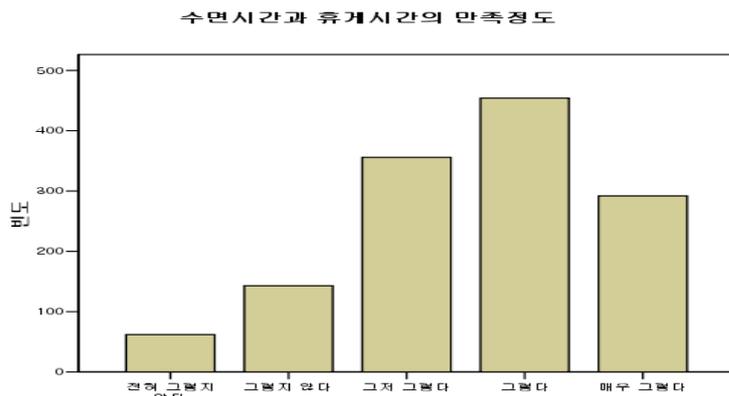
계급별 수면시간을 보면 5시간미만이 이경 8.5%(23명), 일경 4.4%(12명), 상경 8.2%(33명), 수경 2.7%(8명), 5-7시간미만이 이경 54.8%(148명), 일경 53.3%(145명), 상경 58.0%(233명), 수경 52.7%(157명)이었다. 조사결과 이경과 상경은 5시간미만의 수면시간을 갖는 경우가 전체평균 보다 높았으며, 수경은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았다. 또한 상경은 5-7시간미만의 수면을 갖는 경우에서도 전체평균보다 3.0% 정도 높아 수면부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경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면시간을 갖는 이유는 대원 중 최고계급인 수경이 내무반 업무수행 등에서 열외로 인정받는 대신 상경이 책임져야 할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경은 이경 등 후임대원의 부대적응력을 키워줘야 할 뿐만 아니라 수경 등 선임대원들도 챙겨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소위 '신경써야할 일'들이 그만큼 많아 수면시간이 준 것으로 보인다.

부대별 휴게시간에 대한 응답을 보면,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전경대 4.3%(13명), 기동대 7.0%(38명), 방순대 6.6%(26명), 5-7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전경대 54.1%(165명), 기동대 57.0%(311명), 방순대 52.9%(209명), 7-9시간이라는 응답은 전경대 38.4%(117명) 기동대 31.1%(170명), 방순대 32.2%(127명), 9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전경대 3.3%(10명), 기동대 4.9%(28명), 방순대 8.4%(33명)이었다. 조사결과 기동대는 7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고, 방순대는 9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에서 전체평균보다 3.2%정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부대별 수면시간에 관해서는 위의 휴게시간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방범경찰과 경비경찰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보이지만, 관리자나 경찰당국의 의지 및 효율적인 부대관리방안 또한 긴요함을 알 수 있다.

4) 수면시간 과 휴게시간의 만족정도



<표 3-8> 수면시간과 휴게시간의 만족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빈도	62	143	356	454	292	1307
비율	4.7	10.9	27.2	34.7	2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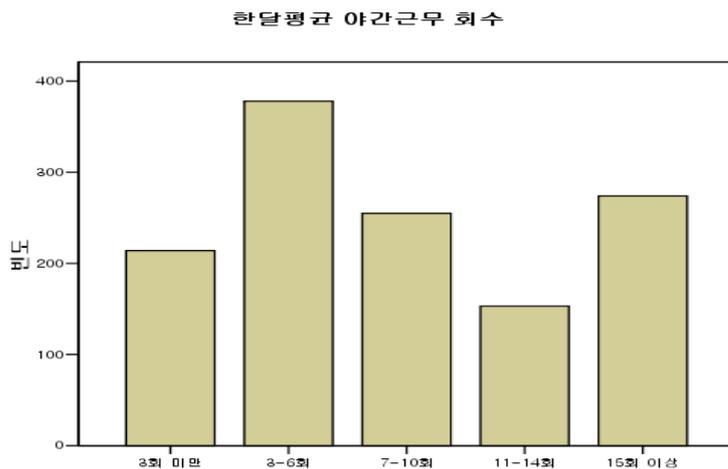
위의 그림과 표는 전·의경의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면 및 휴게시간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가 각각 62명(4.7%), 143명(10.9%), 356명(27.2%)으로 총 561명(43%)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 만족정도를 파악하면, 수경은 매우 만족한다 25.2%(67명), 만족한다 39.9%(120명), 그저그렇다 26.6%(80명), 전혀그렇지 않다 1.7%(5명)이었으며, 상경은 매우 만족한다 18.3%(77명), 만족한다 31.9%(134명), 그저그렇다 28.6%(120명), 전혀그렇지 않다 6.0%(25명)이었다. 또한 일경은 매우 만족한다 23.4%(64명), 만족한다 31.4%(86명), 그저그렇다 30.7%(84명), 전혀그렇지 않다 8.8%(24명)이고, 이경은 매우 만족한다 19.9%(58명), 만족한다 37.5%(109명), 그저그렇다 24.4%(32명), 전혀그렇지 않다 6.5%(19명)였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상경집단에서 매우 불만족하다와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전체 평균에 비해 많았다. 상경집단에서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위로는 수경에 대한 배려와 아래로는 이경 등 신입대원의 적응력 향상 등 ‘신경써야할 일’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대별로 보면 매우만족한다가 전경대 21.5%, 기동대 22.2%, 방순대 18.8% 였고, 만족한다가 전경대 39.2%, 기동대 33.1%, 방순대 33.8%였으며,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전경대 25.4%, 기동대 26.3%, 방순대 30.7%, 불만이다는 의견이 전경대 10.0%, 기동대 11.2%, 방순대 11.9%, 매우 불만이다는 의견이 전경대 3.5%, 기동대 6.6%, 방순대 3.0%였다. 분석결과 기동대의 경우 매우 불만이라는 응답이 전경대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전체평균보다 높았다.

기동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불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위에서 언급한 수면과 휴게시간 실태분석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전경대가 높은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다만 전경대는 방법경찰활동에 동원되는 경우가 기동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면 이러한 결과도 가능하다고 본다.

5) 평균 야간근무 회수



<표3-9> 한 달 평균 야간근무 회수

	3회 미만	3-6회	7-10회	11-14회	15회 이상	합계
빈도	214	378	255	153	274	1274
비율	16.8	29.7	20.0	12.0	21.5	100.0

위의 표는 전의경의 한달 평균 야간근무회수를 조사한 내용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달 평균 3-6회라는 응답이 전체 조사대원 1274명 중 29.7%(378명)이었고, 3회 미만인 경우도 16.8%(214명)나 되었지만, 7-10회가 29.7%(255명)이고, 11-14회가 12.0%(153명)이었으며, 2일에 1일 꼴로 야간근무를 하는 15회 이상도 21.5% 274명이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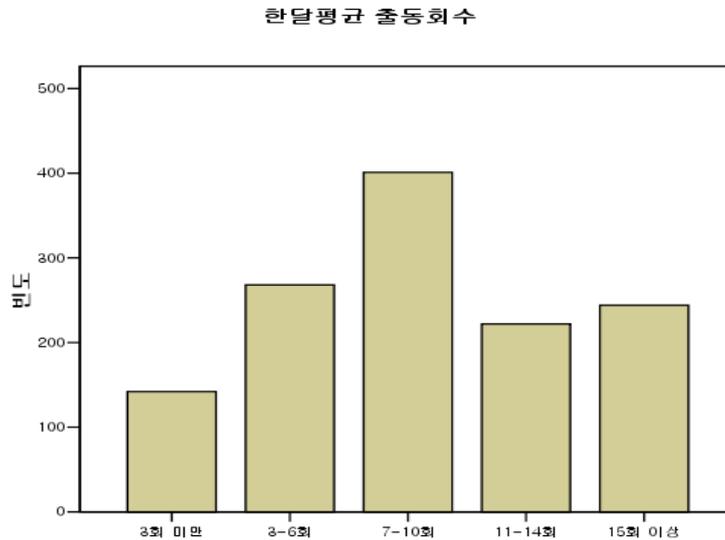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하였듯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주 40시간근무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의 통상임금 50%가산지급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계급별 야간근무회수를 보면 한달 15회 이상 야간근무한다는 응답은 총 273명 중 이경 26명(9.5%), 일경 52명(19.0%), 상경 118명 43.2%, 수경 77명 28.2% 였으며, 한달 평균 11-14회 야간근무한다는 응답은 총 137명 중 이경 16명 11.7%, 일경 32명 12.0%, 상경 57명 41.6%, 수경 32명 23.4%였다.

상경과 수경계급에서 야간근무회수가 2일에 하루 혹은 3일에 하루 꼴로 빈번하였다. 야간근무가 계급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편 부대별 야간근무회수가 계급별로 차이가 나는 실태는 수긍하기 어렵다. 다만 상경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대 내에서 많은 업무를 맡는 현실이 반영된다면 다른 계급보다 많이 야간근무를 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런데 수경의 반응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하지만 수경계급이 부대의 야간근무 현실을 보다 진솔 하게 응답해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결과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한편 부대별 야간근무회수를 보면, 15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전체 273명 중 전경대근무자 51명 18.7%, 기동대 근무자 70명 25.6%, 방순대 근무자 152명 55.7%였으며, 11-14회 출동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139명 중 전경대 근무자 42명 30.2%, 기동대 근무자 27.3%, 방순대근무자 42.4% 였다. 이는 방순대의 업무가 주로 방법순찰활동이고 방법순찰은 주·야간 구분이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6) 평균 출동회수



<표3-10> 한 달 평균 출동회수

	3회 미만	3-6회	7-10회	11-14회	15회 이상	합계
빈도	142	268	401	222	244	1277
비율	11.1	21.0	31.4	17.4	19.1	100.0

위의 표는 전·의경의 한달 평균 집회/시위 등 경비를 위한 출동회수를 조사한 내용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달 평균 3-6회라는 응답이 전체 조사대원 1,277명 중 21.0%(268명)이었고, 3회 미만인 경우도 10.6%(142명)나 되었지만, 7-10회가 31.4%(401명)이고, 11-14회가 17.4%(222명)이었으며, 2일에 1일 꼴로 출동하는 15회 이상도 19.1%에 244명이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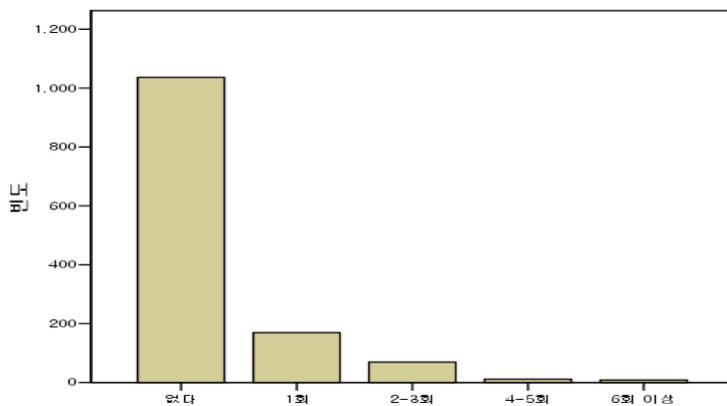
집회/시위 등 경비활동을 위한 출동은 경비경찰의 주요 임무이면서 시위진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따라서 출동시간은 경비경찰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출동이 2일에 1회 혹은 3일에 1회 꼴로 발생한다면 대원들의 업무에 따른 어려움은 가히 짐작을 어렵게 한다.

계급별 출동회수를 보면 한달 평균 15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총 238명 중 이경 28명(11.8%), 일경 58명(24.4%), 상경 95명 39.9%, 수경 57명 23.9% 였으며, 한달 평균 11-14회 출동한다는 응답은 총 222명 중 이경 35명 15.8%, 일경 52명 23.4%, 상경 86명 38.7%, 수경 49명 22.1%였다. 즉 상경이나 수경의 출동회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한편 부대별 출동회수를 보면, 15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전체 239명 중 전경대근무자 66명 27.6%, 기동대 근무자 115명 48.1%, 방순대 근무자 58명 24.3%였으며, 11-14회 출동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222명 중 전경대 근무자 27명 12.2%, 기동대 근무자 113명 50.9%, 방순대근무자 82명 36.9% 였다. 그런데 전경대와 기동대는 경비경찰이므로 경비경찰활동을 위한 출동이 많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방범경찰인 방순대가 경비경찰로 출동이 빈번한 것은 임무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모순되는 측면이 크다.

7) 부상경험

올해 출동으로인한 부상경험



<표3-11> 부상경험

	없다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합계
빈도	1036	169	69	11	8	1277
비율	80.1	13.1	5.3	0.9	0.6	100.0

위의 표는 올해 집회/시위 등 경비를 위한 출동에서 부상을 당한 경험을 조사한 내용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 1,293명 중 1,036명으로 80.1%이지만 1회 당했다는 응답이 13.1% 169명이고 2-3회가 5.3%이며, 4-5회가 0.9%이었으며 심지어 6회 이상 부상당했다는 응답도 8명이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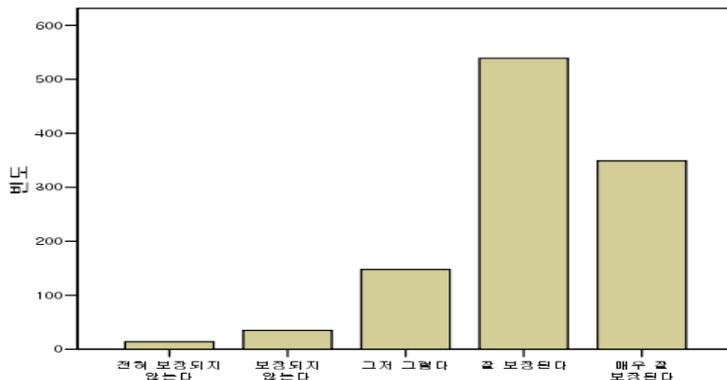
2005년 경찰통계연보에 의하면, 2004년의 총 시위회수는 11,338건이고 시위인원 3,034,660명, 연동원 경찰 3,965,760명에 월평균 출동회수는 945회이며, 동원된 부대는 19,251중대라고 한다. 출동에 따른 부상자 현황을 보면, 2003년 240명, 2004년 6월말 까지 63명이 공상처리되었다. 이는 각각 전체 공상자의 23.8%와 13.3%로 이 조사결과와 유사하며 적지 않은 전·의경이 집회/시위 등 경비를 위한 출동에서 부상함을 알 수 있다.

계급별 부상경험을 보면 한 달 평균 6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총 8명 중 이경 4명, 일경 0명, 상경 3명, 수경 1명이었으며, 4-5회라는 응답은 총 10명 중 이경 2명 일경 2명 상경 2명 수경 4명이었고, 2-3회라는 응답도 총 69명 중 이경 3명, 일경 13명, 상경 30명 수경 23명이었다. 계급별 부상자 현황에서 이경 등 신임대원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진압 등 경비업무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시위현장에서 일선을 지키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수경 등 고참대원은 교육훈련의 열외나 시위일선은 벗어나겠다는 정신자세의 해이 등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부대별 부상경험을 보면, 6회 부상을 당한 경우는 전체 7명 중 모두가 기동대 근무자였고, 4-5회 부상한 경우는 전체 10명 중 전경대근무자 2명 기동대 근무자 6명 방순대 근무자 2명이었고 2-3회 부상당한 경우는 전체 69명 중 전경대 근무자 15명 21.7%, 기동대 근무자 35명 50.7%, 방순대근무자 19명 27.5% 였다. 즉 기동대근무자들이 출동 중 부상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방순대에서 적은 부상을 당하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업무의 특성 상 당연하다. 하지만 같은 경비경찰업무를 지는 전경대가 기동대보다 부상자가 적은 이유는 전경대가 부상방지를 위한 방어훈련을 강화하였거나 출동회수가 적었기 때문인 둘 중하나라고 보여 진다. 생각컨대 전경대라고 해서 출동수를 줄여준다고 보기 어렵다면 전경대는 그만큼 대원들의 부상방지를 위한 부대차원의 노력들이 많았다고 볼 것이다.

8) 부상 후 치료 또는 휴식 보장

부상 후 치료나 휴식 보장의 충분한 정도



<표3-12> 부상 후 치료나 휴식 보장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잘 보장 된다	매우 잘 보장 된다	합계
빈도	14	35	148	539	349	1085
비율	1.3	3.2	13.6	49.7	32.2	100.0

위의 표는 전·의경의 집회나 시위 등 경비를 위한 출동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소속부대에서 충분한 치료나 휴식이 보장되는지를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상 후 치료나 휴식 보장이 잘되거나 매우 잘된다는 경우는 각각 49.7%와 32.2%지만, ‘그저그렇다’나 ‘보장되지않는다’는 응답이 13.6%(148명)과 3.2%(35명)이었고, 심지어 ‘전혀 보장되지않는다’는 경우가 14명(1.3%)이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의경은 시위·집회 등 경비활동으로 인해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다.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전·의경 경찰병원 치료 현황을 보면 외래환자의 경우 정원의 4.2배, 입원은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⁸⁹⁾ 일반 개인병원이나 중대별 민간 지정 병원을 이용한 부상자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전·의경 부상자중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원의 경우 경찰병원에서의 치료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과 근거리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경상도, 전라도 등의 원거리 지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의경 부대내에 ‘공중보건의⁹⁰⁾를 의무관으로 운용할 수 있다⁹¹⁾’라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운용하는 경우는 없다.⁹²⁾ 그리고 ‘가벼운 부상이나 질환을 자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의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⁹³⁾’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 결국 부상의 위험성이 높은 시위현장에 의료진이 배치되거나 사후 부상자치료를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급별로 분석해 보면 ‘전혀보장이안된다’는 응답을 한 경우 전체 14명 중 이경 5명, 일경 0명, 상경 4명, 수경 5명이었고, ‘보장되지않는편’이라는 경우는 전체 33명 중 이경 11명(33.3%), 일경 5명(15.2%), 상경 14명(42.2%), 수경 3명(9.1%)였다. 또한 ‘그저그렇다’는 긍정적이지 않은 응답의 경우도 전체 146명 중 이경 19명(13.0%), 일경 32명(21.9%), 상경 56명(38.4%), 수경 39명(26.7%)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경과 이경집단에서 부상 후 치료나 휴식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대유형별로 분석하면, ‘전혀보장되지않는다’는 응답을 한 경우는 전체 13명에서 전경대근무자 2명(15.4%), 기동대근무자 8명(61.5%), 방순대근무자 3명(23.1%)이었으며, ‘보장되지않는다’는 경우는 전체 34명 중 전경대근무자 6명(17.6%), 기동대근무자 23명(67.6%), 방순대근무자 5명(14.7%)였다. 또한 ‘그저그렇다’는 긍정적이지 않은 응답의 경우도 전체 148명 중 전경대근무자 31명(20.9%), 기동대근무자 74명(50.0%), 방순대근무자 43명(29.1%)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동대근무자들에서 부상 후 치료나 휴식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9)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48호, 2005. 7. p. 361.

90) 공중보건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하는데, 현재는 전국의 모든 군보건의소, 읍·면 보건지소뿐 아니라 산간벽지·오지, 낙도 특수지, 의료기관단체, 의료원, 민간병원 등지에서 지역사회의 1차 보건의료 및 예방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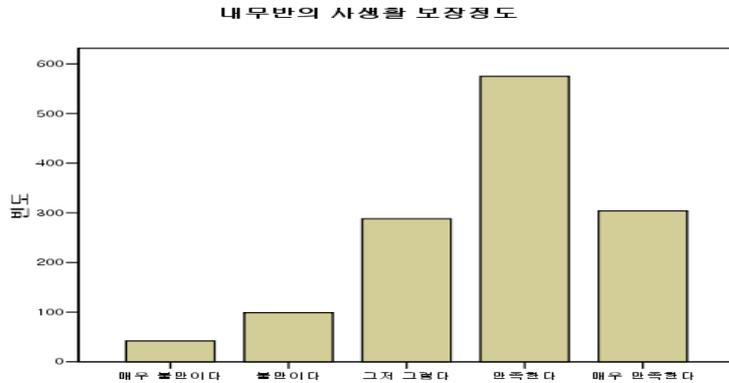
91)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70조 본문

9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의 경우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전·의경 부대에서 의무관으로 운용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법률개정을 통해 군의관 파견근무 내지, 자체 선발하여 군 대체복무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93)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68조 본문

3. 내무생활관계

1) 내무반에서의 개인 공간



<표3-13> 내무반의 사생활보장수준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빈도	42	99	288	575	304	1308
비율	3.2	7.6	22.0	44.0	23.2	100.0

위의 표는 내무반의 사생활 보장 수준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무반의 사생활 보장 수준은 만족한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879명인 67.2%이었으며, 부정적인 답변이 429명인 32.8%로 조사되었다. 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응답이었지만 32.8%라는 부정적인 응답도 많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내무생활이란 중대단위 이상 집결부대에서는 소대단위로 편성되고, 본부 및 기타 치안부서 등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부서인원을 통합하여 서/대별로 편성하는 내무반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의미한다.⁹⁴⁾ 내무반에서의 사생활보장은 전·의경의 인권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결과는 전·의경의 인권보장의 현주소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계급별로 분석하면, ‘매우불만이다’와 ‘불만이다’는 총 136명 중 이경 17.6%(24명) 일경 24.2%(33명), 상경 40.4%(55명), 수경 16.9%(23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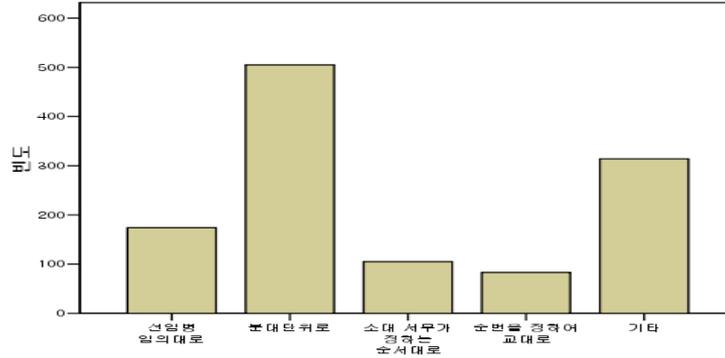
부대유형별로 분석하면, ‘매우 불만이다’와 ‘불만이다’는 총 140명 중 전경대 근무자 18.5%(26명), 기동대 근무자 48.5%(68명), 방순대근무자 32.8%(46명)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경집단과 기동대 근무자집단에서 내무반의 사생활 보장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계급별이나 부대별로 전·의경의 사생활보장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이경 등 신입대원은 주로 선임대원으로부터 사생활침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상경은 열외인 수경과 기간요원의 요구사항 모두를 충족하도록 요구받는 과정에서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취침시 침상의 선택실태

94)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206조.

취침시 침상의 선택절차



<표3-14> 취침시 침상의 선택절차

	선임병 임의대로	분대단위로	소대서무가 정하는 순서대로	순번을 정하여 교대로	기타	합계
빈도	174	505	105	83	314	1307
비율	14.7	42.8	8.9	7.0	26.6	100.0

위의 표는 취침시 침상의 선택절차를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침시 침상의 선택절차는 ‘분대단위로한다’가 505명인 전체 42.8%에 해당하였고, ‘선임병임의대로’가 174명인 14.7%, 소대서무가 정하는 순서대로 105명인 8.9%, 순번을 정하여 83명인 7.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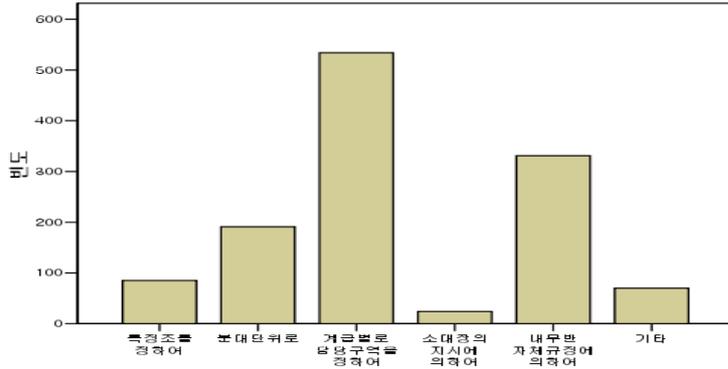
계급별로 보면 선임병 임의대로 침상선택을 한다는 경우가 총 169명 중 이경 21.9%(37명), 일경 17.2%(29명), 상경 35.5%(60명), 수경 25.4%(43명)였으며, 분대단위로 한다는 경우는 총 504명 중 이경 21.0%(106명), 일경 23.4%(118명), 상경 32.1%(162명), 수경 23.4%(118명)이었다.

부대유형별로는 선임병의 임의대로 침상을 선택한다는 경우가 총 172명 중 전경대 근무자 27.3%(47명), 기동대 근무자 34.9%(60명), 방순대근무자 37.8%(65명)이었고, 분대단위로 정한다는 경우는 총 505명 중 전경대 근무자 17.4%(88명), 기동대 근무자 65.7%(332명), 방순대근무자 16.8%(85명)이었다. 즉 방순대 근무자는 선임병의 임의대로가 기동대 근무자는 분대단위로 침상을 정한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문제는 침상의 선택에서조차 계급에 따른 서열주의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침상의 선택은 인원파악의 용이성 내지 편안한 수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이지 선임대원인지에 따라 정해질 수 없다고 생각된다. 침상의 선택에까지 서열주의가 작용하는 전·의경 조직의 현실은 많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내무반 청소관계

내무반청소의 시행



<표3-15> 내무반 청소의 시행

	특정조를 정하여	분대단위로	계급별로 담당구역 정하여	소대장의 지시에 의하여	내무반의 자체규정에 의해	기타	합계
빈도	85	191	534	24	331	70	1235
비율	6.9	15.5	43.2	1.9	26.8	5.7	100.0

위의 표는 내무반 청소의 시행에 대한 조사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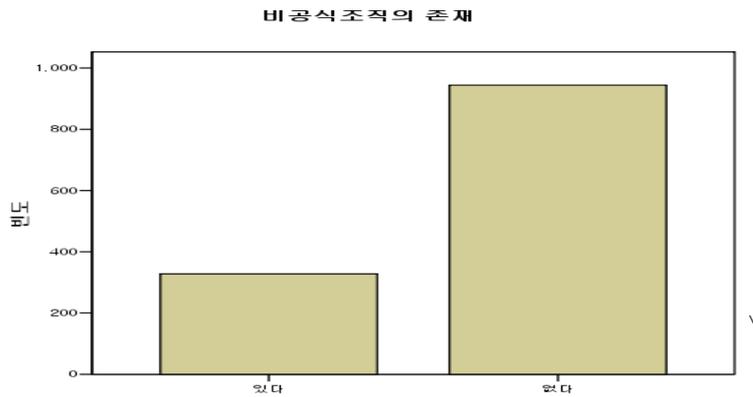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무반 청소의 시행의 경우 ‘계급별로 담당구역을 정하여 한다’는 응답이 전체 43.2% 534명이었으며, ‘내무반 규정에 의해서’가 331명 26.8%이었으며, ‘분대단위로’가 191명인 15.5%, ‘특정조를 정하여’가 85명인 6.9%, ‘소대장의 지시’에 의해 24명인 1.9%이었다.

선임대원일수록 정교하고 숙련된 부분의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급별로 내무반 청소를 실시한다고 하면 청소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선임대원은 하기 쉽고 간단한 청소를 하고 신입대원은 힘들고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청소를 하게 된다면 계급별로 정하는 규칙은 서열주의에 따른 또 다른 차별이라고 하겠다.

부대유형별로는 청소를 실시하는 현황을 보면, ‘특정조를 정하여 시행한다’는 경우가 총 85명 중 전경대 근무자 34.1%(29명), 기동대 근무자 50.6%(43명), 방순대근무자 15.3%(13명)이며, ‘내무반 자체규정에 의한다’는 경우가 총 330명 중 전경대 근무자 20.6%(68명), 기동대 근무자 37.0%(122명), 방순대 근무자 42.4%(140명)였다. 결국 전경대와 기동대는 특정조를 정하여 청소를 시행하는 경우가, 방순대는 내무반의 자체규정에 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정조를 정하여 실시한다는 것은 바닥조/침상조/다리미조 등 특정청소 분야별로 대원들을 조를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바닥조는 내무반의 바닥을, 침상조는 내무반의 침상을 청소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것도 주로 신입대원들에게 어렵고 힘든 부분을 맡기고 청소 등으로부터 열외를 인정받는 소수의 제외한 선임대원들은 가르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전경대와 기동대가 특정조를 정하여 청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독립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생활하면서 준 군대식 전근대적 생활양식들이 잔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비공식조직의 존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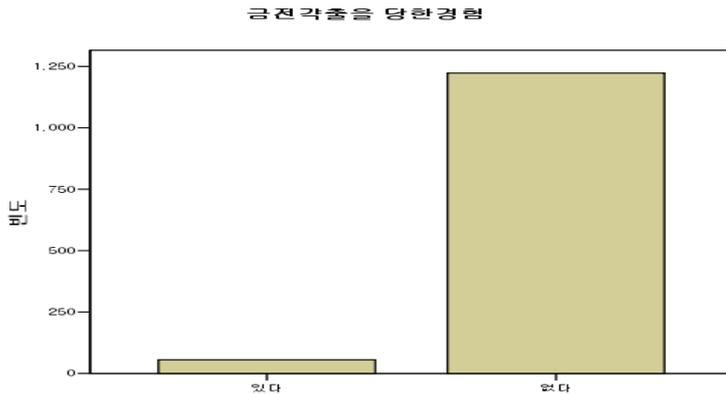
<표3-16> 비공식조직의 존재

	있다	없다	합계
빈도	328	944	1272
비율	25.8	74.2	100.0

위의 표는 전의경의 내무반 생활 중 바닥조, 침상조, 다리미조 등 내무생활의 편의 등을 이유로 하는 비공식 조직이 존재하는 지를 조사한 자료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없다는 경우가 74.2% 전체 1272명 중 944명이었지만 존재한다는 경우가 25.8% 328명이었다. 계급별로 분석하면, 비공식조직이 존재한다는 경우는 전체 324명 중 이경 18.5%(60명), 일경 24.4%(79명), 상경 34.6%(112명), 수경 22.5%(73명)이었다. 또한 부대유형별로 분석하면, 비공식조직이 존재한다는 경우는 전체 326명 중 전경대근무자 24.5%(80명), 기동대근무자 57.4%(187명), 방순대근무자 18.1%(59명)이었다.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동대 근무자들에서 비공식조직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평균 이상이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비공식조직은 공식조직과는 다른 하위조직을 말한다. 비공식은 공식조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악용될 가능성 또한 높다. 즉 내무생활 중 신입대원들은 특정비공식조직에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고 부대적응이라는 명목 하에 어렵고 힘든 일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사회로부터 차단된 내무생활의 특성 상 이러한 비공식조직이 전·의경의 인권침해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5) 금전각출을 당한경험



<표3-17> 금전각출을 당한경험

	있다	없다	합계
빈도	55	1223	1278
비율	4.3	95.7	100.0

위의 표는 부개생활 중 상급자로부터 금전각출을 당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자료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없다는 경우가 95.7%이었지만 존재한다는 경우가 4.3% 55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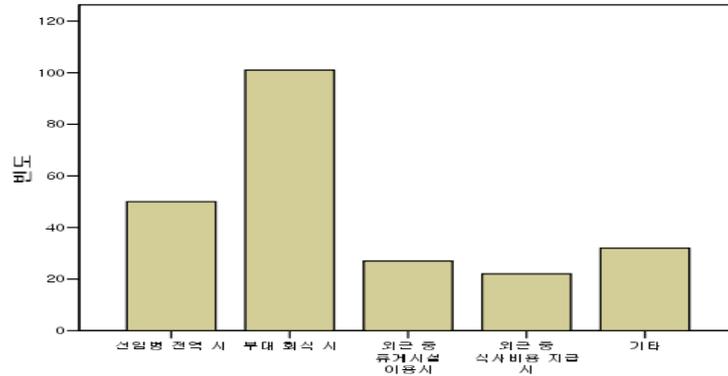
계급별로 분석하면, 금전각출이 존재한다는 경우는 전체 55명 중 이경 8명, 일경 11명, 상경 27명, 수경 9명이었다.

또한 부대유형별로 볼 때, 금전각출이 존재한다는 경우는 전체 55명 중 전경대근무자 29.6%(16명), 기동대근무자 40.7%(23명), 방순대근무자 29.6%(16명)이었다.

금전각출이란 금전을 거둔다는 것으로 각출액이 많아질수록 전·의경의 개인 사비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조사결과 55명이 금전각출을 당했다고 하였지만, 그 발생시기를 묻는 다음 질문에 1085명이 응답하여 대부분의 전·의경(84.8%)이 금전각출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6) 금전각출 발생시기

금전각출 발생상황



<표3-18> 금전각출 발생시기

	선임병 전역 시	부대 회식 시	외근 중 휴게시설 이용 시	외근 중 식사비용 지급 시	기타	합계
빈도	50	101	27	22	32	1085
비율	21.6	43.5	11.6	9.5	13.8	100.0

위의 표는 금전각출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조사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전각출의 상황의 경우 ‘부대 회식시’가 가장 많은 43.5%, ‘선임병 전역시’가 21.6%, ‘외근 중’이 21.1%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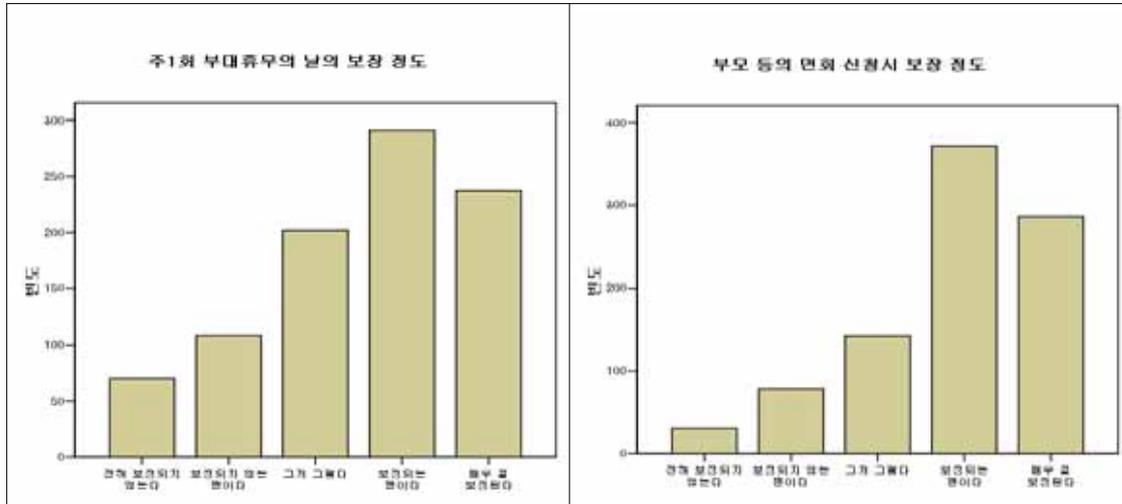
계급별로 분석하면, 선임병의 전역 시에 금전각출이 이루어진다는 경우는 전체 48명 중 이경 11.1%(6명), 일경 18.8%(9명), 상경 52.1%(25명), 수경 16.7%(8명)이었다. 부대 회식 시에 금전각출이 이루어진다는 경우는 전체 97명 중 이경 34.0%(33명), 일경 20.6%(20명), 상경 25.8%(25명), 수경 19.6%(19명)이었다. 분석결과 상경의 경우는 선임병의 전역시에 비교적 많은 금전각출이 발생하며, 이경의 경우 부대회식 시에 비교적 많은 금전각출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대유형별 분석하면, 선임병의 전역 시에 금전각출이 이루어진다는 경우는 전체 49명 중 전경대근무자 26.5%(13명), 기동대근무자 36.7%(18명), 방순대근무자 36.7%(18명)이었다. 또한 부대 회식 시에 금전각출이 이루어진다는 경우는 전체 101명 중 전경대근무자 29.7%(30명), 기동대근무자 47.5%(48명), 방순대근무자 22.8%(23명)이었다.

국방의 의무복무자가 아니면서도 치안업무에 전환 복무하는 전·의경은 사병에 준하는 월급을 받고 있다. 즉 의무복무개념을 준용하기 때문에 월급이 소액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대 부대회식, 선임병전역, 외근 등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한다면 전·의경은 보수 외에 상당한 액수의 사비지출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그리고 돈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군과 비교할 때 전·의경의 근무환경은 많은 차이가 있다. 문제는 금전각출이 강요되거나 금전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을 부대단합이나 위계질서의 유지차원에서 묵인하는 관리자 또한 문제라고 하겠다. 예컨대, 부대단합차원에서 회식이 필요하다면 부대유지비나 관리비를 증액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4. 휴가 등의 보장정도

1) 부대휴무의 날 보장과 면회보장 정도



<표3-19> 부대휴무의 날 보장과 면회보장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휴무의 날 보장	빈도	70	108	202	291	237	908
	비율	7.7	11.9	22.2	32.0	26.1	100.0
면회 보장	빈도	31	78	142	371	286	908
	비율	3.4	8.6	15.6	40.9	31.5	100.0

다음은 주1회 부대휴무(정비)의 날이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는지와 부모, 애인 등의 면회시 면회는 잘 보장되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대휴무의 날의 보장에 대하여 ‘그저 그렇다’가 22.2%, ‘그렇지 않다’가 11.9%,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가 7.7%로서 휴무일의 보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이 전체 41.8%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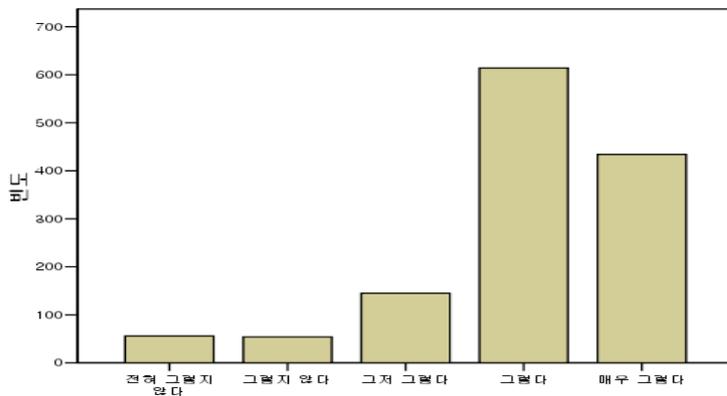
전·의경을 국가공무원법상 군인/군무원에 준하여 혹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생각한다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주 40시간의 근무와 주말 및 공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출동시기나 규모 등을 예상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특성상 명확한 근무시간이나 교대시간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발생한다. 따라서 위의 조사결과와 같이 1주일에 하루 ‘부대정비의 날’로 휴무케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 유사하게 의무복무에 종사는 군인의 경우 토요일 휴무까지 보장되고 1일 8시간 근무제가 정착된 것과 비교할 때도 전·의경의 열악한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계급별로 보면 이경이 33.8%가 잘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일경은 35.6%, 상경은 51.6%, 수경은 33.5%가 부정적이었으며, 이중 상경이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대유형별로 보면 전투경찰대는 14.3%, 경찰기동대는 46.6%, 방법순찰대는 49%로서 방법순찰대와 경찰기동대의 경우 거의 절반 정도가 부대휴무의 날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면회 등의 보장에 대하여는 잘 보장되고 있다는 반응이 전체 72.4%로 대체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계급별로 보면 이경의 24.2%, 일경은 20.3%로 위의 계급집단(상경, 수경)보다 면회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즉 하위계급일수록 면회보장이 덜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면회보장에 계급별 차이는 곧 인권침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경 등 신입대원이 사회로부터 차단된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부대에 적응기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잘못된 실태임을 알 수 있다. 즉 부모, 친지, 애인 등과의 충분한 면회보장이 복무이탈 등 사건사고의 방지책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결과라고 하겠다.

2) 외출·외박·휴가의 원칙적 시행여부

외출외박휴가가 원칙대로 시행되는가



<표3-20> 외출·외박·휴가의 원칙적 시행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빈도	56	54	145	614	434	1308
비율	4.3	4.1	11.1	47.1	33.3	100.0

위의 표는 외출·외박·휴가의 원칙적 시행여부에 대한 조사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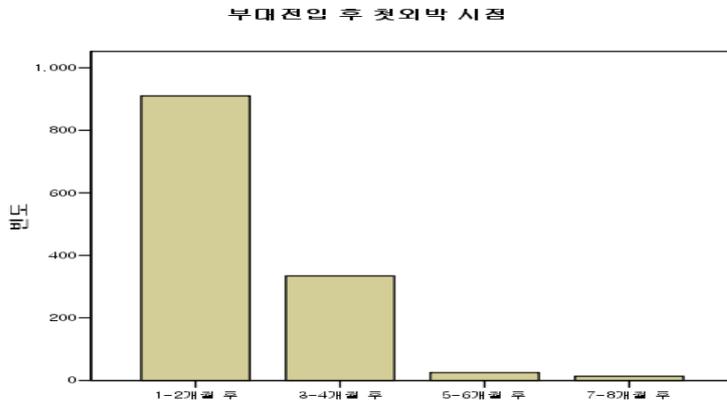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출·외박·휴가가 원칙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응답이 33.3%로서 434명이 응답하였고, 그렇다는 47.1%로서 614명이 응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외출·외박·휴가가 원칙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부정적인 답변은 255명(19.5%)가 응답하였다.

계급별로 보면 원칙적으로 전혀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는다는 경우가 총 106명 중 이경 19.8%(21명), 일경 19.8%(21명), 상경 39.6%(42명), 수경 20.7%(22명)이었다.

또한 부대유형별로는 원칙적으로 전혀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는다는 경우가 총 108명 중 전경대 근무자 5.5%(6명), 기동대 근무자 70.3%(76명), 방순대근무자 24.07%(26명)이었다. 즉 기동대 근무자들은 특히 외출·외박·휴가가 원칙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외박·휴가 등의 원칙적 시행은 전·의경대원들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편의제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제공 등 전·의경의 사기관리방안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 20%가량이 원칙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3) 부대전입 후 첫 외박시점



<표 3-21> 부대전입 후 첫 외박시점

	1-2개월 후	3-4개월 후	5-6개월 후	7-8개월 후	합계
빈도	910	334	25	13	1282
비율	71.0	26.1	2.0	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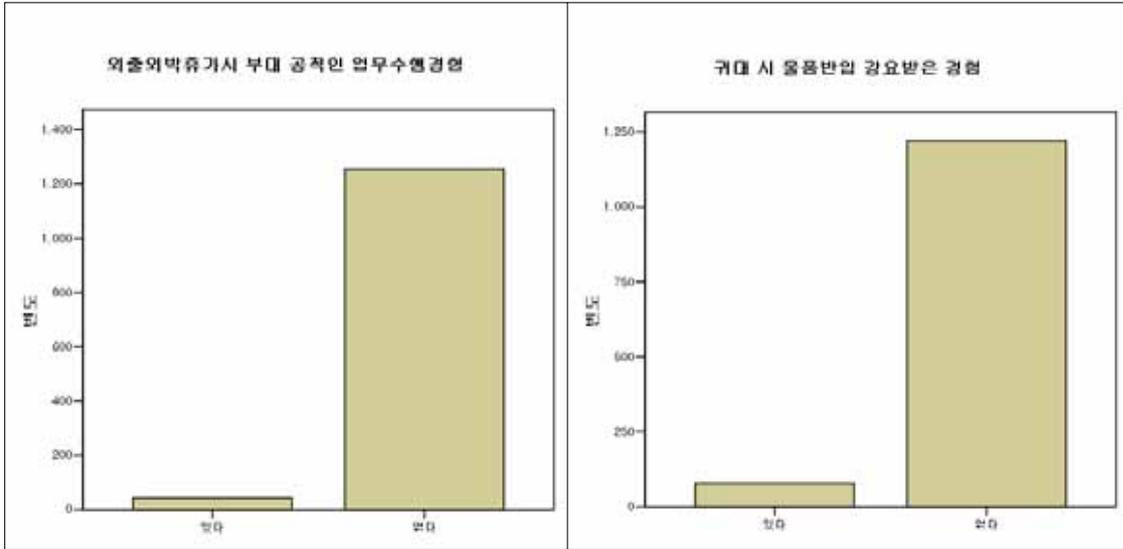
위의 표는 부대전입 후 첫 외박시점에 대한 조사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대전입 후 첫 외박시점은 1-2개월 후가 가장 많은 910명 (71.0%)이었으며, 3-4개월이 334명(26.1%), 5-6개월 후가 25명(2.0%), 7-8개월 후 13명(1.0%)로 조사되었다.

신임대원들이 부대전입 후 첫 외박시점은 다음 두 가지문제와 직결된다. 하나는 신임대원들을 부대전입 후 1개월부터 외박순번을 정하다보면 마지막 순번에 편성될 경우 4-5개월이 지나야 첫 외박을 갈 수 있어 너무 늦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임대원의 부대적응 100일 과정을 보다 충실히 한다면 자연스럽게 외박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첫 외박시점을 앞당겨야 할 것이고 부대적응에 충실하자면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대적응도가 외박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 대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첫외박시점을 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부대유형별로 보면, 전경대는 3-4개월 후라는 응답이 전체 평균 26.1%(1274명 중 332명)보다 8.2%가 많은 34.3%(306명 중 105명)으로 높았고, 5개월 이후라는 응답은 총 34명 중 전경대 근무자 8.8%(3명), 기동대근무자 70.5%(24명), 방순대근무자 20.5%(7명)으로 기동대 근무자들에서 첫외박시점이 5개월 후라는 응답이 많았다.

4) 외출/외박/휴가시 공무수행경험과 귀대시 물품반입 강요받은 경험



<표3-22> 외출/외박/휴가시 공무수행경험과 귀대시 물품반입 강요받은 경험

	공직 업무수행경험			물품반입 강요받은 경험		
	있다	없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빈도	41	1255	1296	79	1220	1299
비율	3.1	94.1	100.0	5.9	93.9	100.0

위의 표는 귀대 시 물품반입 강요받은 경험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대 시 물품반입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79명인 5.9%로 조사되었다. 계급별로 귀대 시 물품반입을 강요받은 경험을 분석하면 총 79명 중 이경 17.2%(14명), 일경 15.1%(12명), 상경 41.2%(37), 수경 17.2%(14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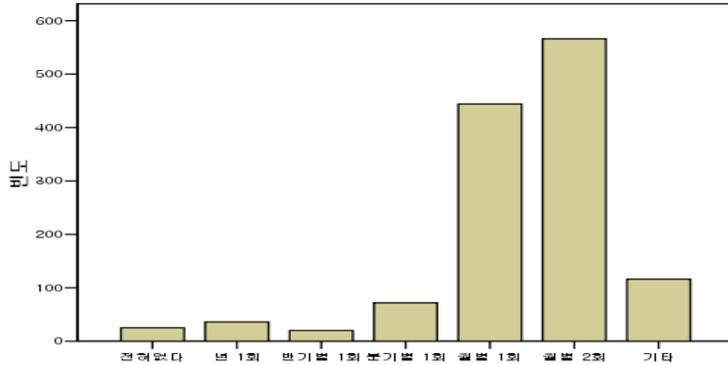
또한 부대유형별로 귀대 시 물품반입을 강요받은 경험을 분석하면, 총 73명 중 전경대 근무자 26.0%(19명), 기동대 근무자 43.8%(32명), 방순대 근무자 30.1%(22명)로 각각 나타났다.

귀대 시 물품반입 강요는 주로 선임대원들이 신입대원들의 휴가시 발생한다. 예컨대 휴가가는 신입대원에게 유·무언의 압력을 행사하여 귀대 시 통닭, 떡, 빵, 등을 사오게 하는 것이다. 만약 지시에 불응할 경우 내무반생활이 고달프게 된다. 불응한 신입대원은 어려운 사역에 동원되게 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것은 물론 구타나 가혹행위 등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휴가 중 공적업무수행에 동원된 경우는 41명으로 조사되었다. 휴가 중에 복무이탈이나 미귀자의 소재파악 등에 동원되는 경우인데, 전·의경의 휴가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을 지닌다.

5) 직속상관과 상담

직속상관과 면담상담 평균회수



<표3-23> 직속상관과 면담상담 평균 회수

	전혀없다	년 1회	반기별 1회	분기별 1회	월별 1회	월별 2회	기타	합계
빈도	25	36	20	72	444	566	116	1282
비율	2.0	2.8	1.6	5.6	34.7	44.3	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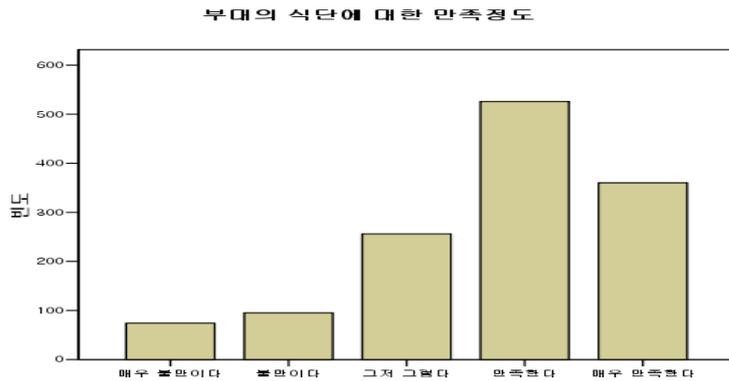
위의 표는 직속상관과 면담상담 평균회수를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속상관과 면담상담 평균회수는 월2회가 44.3%로서 가장 많은 566명이 응답했고, 월 1회는 34.7%인 444명이 응답하였고, 그밖에 분기별 1회가 5.6%인 72명이, 반기별 1회가 1.6%인 20명이 년 1회가 2.8%인 36명이라고 조사되었다. 계급별로 보면 면담이나 상담이 전혀 없다거나 년 1회 혹은 반기별 1회 등 거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총 77명 중 이경 28.5%(22명), 일경 15.5%(12명), 상경 42.8%(33명), 수경 12.9%(10명)이었다. 즉 상대적으로 상경과 이경이 직속상관과의 면담 및 상담회수가 드물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유형별로 보면 면담이나 상담이 전혀 없다거나 년 1회 혹은 반기별 1회 등 거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총 78명 중에서 전경대 근무자가 16.6%(13명), 기동대 근무자가 52.5%(41명), 방순대근무자가 30.7%(2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에 의하면 관심요구 전·의경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신상면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1차와 2차 감독자는 월 2회, 3차 감독자는 월 1회 신상면담을 원칙으로 하고 신임·전입대원은 전입 즉시 중대장이 면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상시 월5회의 면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이나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5. 편의 및 복지관계

1) 부대의 식단에 대한 만족수준



<표3-24> 부대의 식단에 대한 만족수준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빈도	74	95	256	526	360	1311
비율	5.6	7.2	19.5	40.1	27.5	100.0

위의 표는 부대의 식단에 대한 만족 수준을 조사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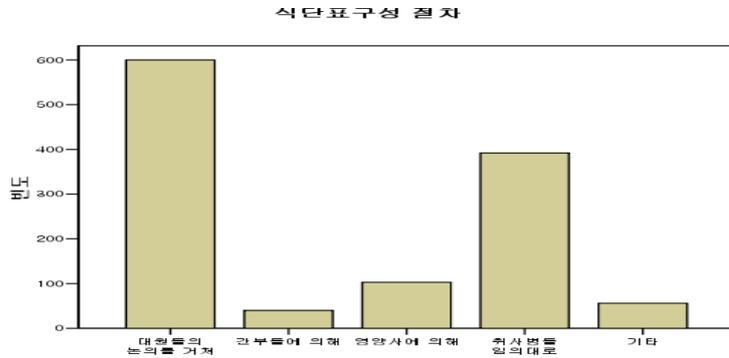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단에 대한 만족 수준은 긍정적인 응답이 886명인 67.6%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응답이 425명인 32.3%에 달했다. 긍정적인 답변이 반수를 넘었으나 부정적인 응답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계급별로 분석하면, 매우 불만이다와 불만이다는 총 165명 중 이경 14.5%(24명), 일경 16.3%(27명), 상경 41.2%(68명), 수경 27.8%(46명)이었다.

부대유형별로 분석하면, 매우 불만이다와 불만이다는 총 167명 중 전경대 근무자 25.7%(43명), 기동대 근무자 44.9%(75명), 방순대근무자 29.3%(49명)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경집단과 기동대와 방순대 근무자집단에서 부대의 식단에 대한 만족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경부대는 중대별로 소규모 인원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한정된 식비로는 제대로 된 식단을 구성하기란 어렵다. 또한 식단의 구성은 영양사의 전문가에 의한 구성이 아니라 부대원들이 선호하는 메뉴로 편성되어 영양상의 문제도 불만의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잦은 출동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도시락 등으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식단에 대한 불만은 더욱 크다 하겠다.

2) 식단메뉴작성



<표3-25> 식단표 구성절차

	대원의 논의를 거쳐	간부들에 의해	영양사에 의해	취사병 임의대로	기타	합계
빈도	600	40	103	392	56	1191
비율	50.4	3.4	8.6	32.9	4.7	100.0

위의 표는 식단표 구성절차에 대한 조사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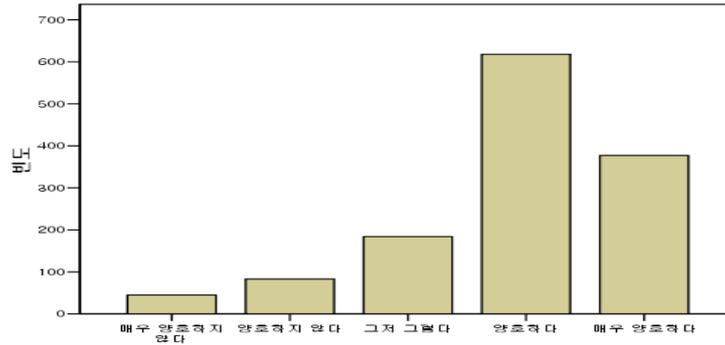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당의 식단표 구성절차는 대원들의 논의에 걸친다는 응답이 600명인 50.4%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영양사와 간부들에 의해서가 각각 103명인 8.6%, 40명인 3.4%로 조사되었다. 취사병 임의대로가 392명인 32.9%이었다. 여러 사람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식단의 구성이 취사병 임의대로 작성되는 경우도 32.9%로 많았으나, 그보다 전문가에 의한 식단의 구성이 8.6%밖에 안된다는 것은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 젊은 대원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계급별로 분석하면, 간부들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는 경우는 총 37명 중 이경 35.1%(13명), 일경 8.1%(3명), 상경 35.1%(13명), 수경 21.6%(8명)이며, 취사병들 임의대로 이루어 진다는 응답은 총 389명 중 이경 18.0%(70명), 일경 23.9%(93명), 상경 36.2%(141명), 수경 21.9%(85명)이었다. 즉 이경이나 상경은 식단표가 간부들이나 취사병들 임의대로 구성된다는 반응이 여타 계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유형별로는 대원들의 논의를 거친다는 경우는 총 593명 중 전경대 근무자 29.7%(176명), 기동대 근무자 44.5%(264명), 방순대근무자 25.8%(153명)이며, 간부들에 의한다는 경우가 총 39명 중 전경대 근무자 12.8%(5명), 기동대 근무자 59.0%(23명), 방순대근무자 28.2%(11명)이었고, 취사병들 임의대로 구성한다는 경우는 총 392명 중 전경대 근무자 22.7%(89명), 기동대 근무자 42.1%(165명), 방순대근무자 35.2%(138명)이었다. 즉 전경대는 대원들의 논의를 거치는 경우가, 기동대는 간부들에 의한 경우와 취사병들의 임의대로가, 방순대는 취사병들의 임의대로가 타 부대와 평균해서 볼 때 많았다.

3) 식당의 위생청결상태

부대식당의 위생청결상태



<표3-26> 식당의 위생청결상태

	매우 양호하지 않다	양호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양호하다	매우 양호하다	합계
빈도	45	83	184	618	377	1307
비율	3.4	6.4	14.1	47.3	28.8	100.0

위의 표는 식당의 위생청결상태에 대한 조사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당의 위생청결상태는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에서 76.1%이었으며, 부정적인 응답이 312명 23.9%이었다. 계급별로는 매우 양호하지 않다고와 양호하지 않다는 경우가 총 126명 중 이경 9.5%(12명), 일경 19.8%(25명), 상경 49.2%(62명), 수경 21.4%(27명)이었고, 양호하다고와 매우양호하다는 응답이 총 980명 중 이경 25.5%(250명), 일경 21.7%(213명), 상경 30.0%(294명), 수경 22.7%(223명)이었다. 종합하면 대체로 상경은 식당의 위생상태를 양호하지 않다고 인식하며, 이경과 일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경의 경우 이경과 일경보다 근무일수가 많기 때문에 위생상태 등의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대유형별로는 매우 양호하지 않다고와 양호하지 않다는 경우가 총 127명 중 전경대 근무자 29.1%(37명), 기동대 근무자 48.03%(61명), 방순대근무자 22.8%(29명)이었다. 부정적인 견해가 전경대와 기동대가 방순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주로 경찰서 내에서 근무하는 방순대보다 출동횟수가 많아 시간적으로 위생 상태 점검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데 있다. 또한 영양사 등 전문가를 통한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하나 전문가들이 전·의경 부대 내에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4) 보급품 지급수량에 대한 만족도

<표3-27> 각종 보급품의 지급정도

구분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저그렇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합계
속 옷	빈도	23	78	142	359	306	908
	비율	2.5	8.6	15.6	39.5	33.7	100.0
근무 복	빈도	14	47	159	400	288	908
	비율	1.5	5.2	17.5	44.1	31.7	100.0
단 화	빈도	47	84	171	334	272	908
	비율	5.2	9.3	18.8	36.8	30.0	100.0
양 말	빈도	63	143	163	274	265	908
	비율	6.9	15.7	18.0	30.2	29.2	100.0
체육 복	빈도	22	87	186	346	267	908
	비율	2.4	9.6	20.5	38.1	29.4	100.0
운동 화	빈도	28	95	184	339	262	908
	비율	3.1	10.5	20.3	37.3	28.9	100.0
킷솔 치약	빈도	18	44	119	373	354	908
	비율	2.0	4.8	13.1	41.1	39.0	100.0

다음은 부대에서 지급되는 생활필수품인 주요보급품의 수량에 대한 만족정도를 분석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옷은 그저그렇다 15.6%, 부족하다 8.6%, 매우부족하다 2.5%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인 비율은 26.7%로서 네명 중한 1명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복의 경우에는 그저그렇다 17.5%, 부족하다 5.2%, 매우부족하다 1.5%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인 비율은 24.2%로서 속옷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단화의 경우는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은 32.4%이었고, 자주 사용하는 양말은 절반에 가까운 40.6%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 체육복과 운동화는 약 33%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킷솔과 치약은 약 20%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5) 주요보급품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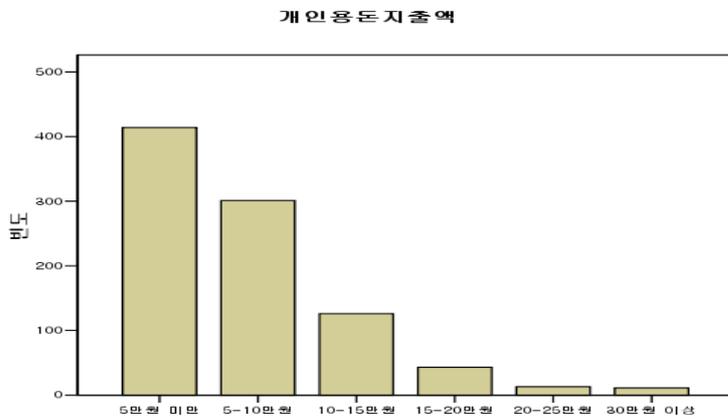
<표3-28> 각종 보급품의 품질정도

구분		매우 좋지않다	좋지않다	그저그렇다	좋다	매우 좋다	합계
속 옷	빈도	13	34	183	416	262	908
	비율	1.4	3.7	20.2	45.8	28.9	100.0
근무 복	빈도	9	31	162	434	272	908
	비율	1.0	3.4	17.8	47.8	30.0	100.0
단 화	빈도	8	41	132	425	302	908
	비율	0.9	4.5	14.5	46.8	33.3	100.0
양 말	빈도	15	46	160	414	273	908
	비율	1.7	5.1	17.6	45.6	30.1	100.0
체육 복	빈도	10	41	172	404	280	908
	비율	1.1	4.5	19.0	44.5	30.9	100.0
운동 화	빈도	17	59	194	377	261	908
	비율	1.9	6.5	21.4	41.5	28.7	100.0
킷솔 치약	빈도	11	31	138	414	314	908
	비율	1.2	3.4	15.2	45.6	34.6	100.0

다음은 부대에서 지급되는 생활필수품인 주요보급품의 품질에 대한 만족정도를 분석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옷은 그저그렇다 20.2%, 좋지않다 3.7%, 매우좋지않다 1.4%로 전반적으로 품질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반응은 25.3%로서 네명 중한 1명정도는 부정적이었다. 근무복의 경우에는 그저그렇다 17.8%, 좋지않다 3.4%, 매우좋지않다 1.0%로 속옷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단화의 그저그렇다 14.5%, 좋지않다 4.5%, 매우 좋지않다는 0.9%였다. 한편 자주 사용하는 양말은 24.4%, 체육복은 24.6%, 운동화는 약 29.1%가 품질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급품의 수량과 질이 향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부대원들의 새것에 대한 선호심리에 따라 선임대원이 후임대원의 보급품을 빼앗는 경우가 있고, 의복류의 경우 공동 세탁을 하기 때문에 세탁과정에서 분실되고 선임병이 가져 간 것이 확실한데도 묵과할 수밖에 없는 부대의 생리 때문이다. 또한 입대 전 소위 유명 메이커, 명품 등에 길들여진 신세대 대원들에게는 부대의 보급품에 대해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6) 개인용돈 지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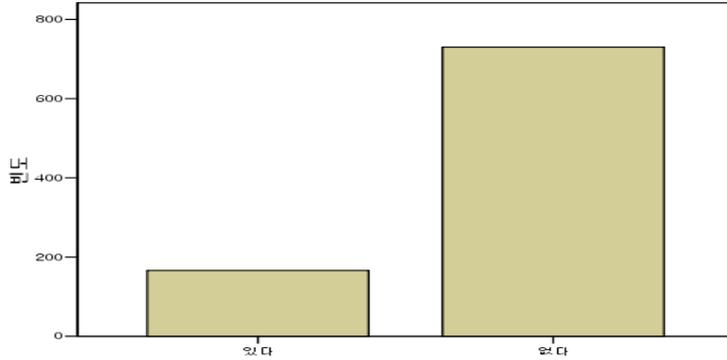
<표3-29> 개인용돈지출액

	5만원미만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25만원	30만원이상	합계
빈도	414	301	126	43	13	11	908
비율	45.6	33.1	13.9	4.7	1.4	1.2	100.0

다음은 부대에서 지급받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부모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사비의 지출금액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만원미만이 4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10만원이 33.1%, 10-15만원이 13.9%로 매월 15만원미만의 지출하는 비율이 92.6%였으며, 15만원이상의 개인용돈을 지출하는 비율도 전체 응답자 중에 6.1%이었다. 사회와 접촉할 기회가 많은 전·의경 특성상 상경을 기준으로 월 3만원 안팎의 급여로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이외에 각종 회식과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돈을 타 쓰는 관행이 계속 되고 있다.

7) 의료비의 개인사비 지출경험

개인사비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험유무



<표3-30> 개인 사비로 의료비 지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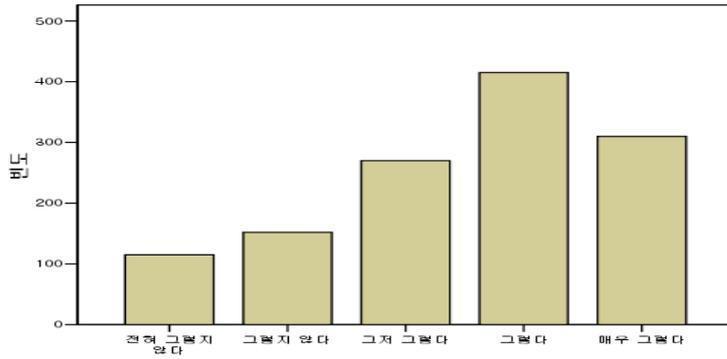
	있다	없다	합계
빈도	166	730	896
비율	18.5	81.5	100.0

다음은 부상 등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비를 개인의 사비로 지출한 경험을 분석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사비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18.5%로 나타났다. 이경은 7.3%, 일경은 8.8%, 상경은 25.5%, 수경은 27.5%로 계급이 높을수록 사비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험이 더 많았다. 이를 부대별로 보면, 전투경찰은 16.1%, 경찰기동대는 18.7%, 방범순찰대는 18.7%로서 경험비율은 비슷하였다.

일반사병과는 달리 전·의경은 시위·집회 등 외부활동으로 인해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며, 부상의 경우에도 7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나 현실적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워 대부분 중대의 경우 부대 근처의 민간병원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전·의경의 의료비 책정은 의료비 5,400원인데 그 중 2,000원은 지방청 배정, 3,400원은 건강보험료 부족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어 의료비도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05년도 전·의경 건강보험료 요구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부족예산을 부득이 개인용품비를 의료비로 충당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개인이 병원을 직접 찾아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 사비로 의료비를 충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진들의 무성의한 진료로 인해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종합병원 내지는 좀 더 성실한 병원을 찾아 가는데 있다.

8) 종교 활동 보장정도

부대의 종교활동 보장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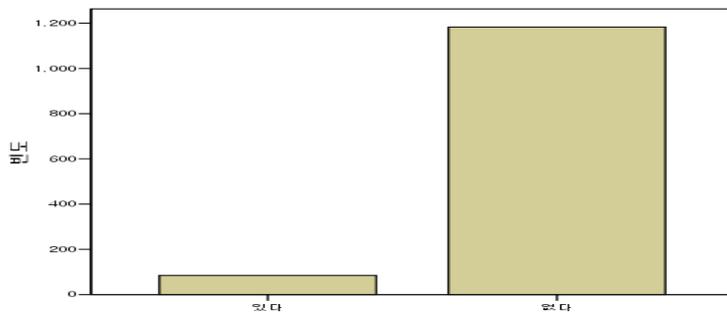
<표3-31> 부대의 종교 활동 보장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빈도	115	152	270	415	310	1214
비율	9.1	12.0	21.4	32.9	24.6	100.0

다음은 부대생활 중에 종교의 자유로운 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로운 보장에 대하여 그저그렇다가 21.4%, 잘되고 있지않다가 12%, 전혀 보장되고 있지않다가 9.1%로 전체 42.5%가 종교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지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계급별로 보면 이경의 26.9%가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경은 38.6%, 상경은 47.1%, 수경은 42.4%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또 이를 부대별로 보면 39%, 경찰기동대는 46%, 방범순찰대는 40.1%로 경찰기동대가 가장 종교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경의 종교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시위·집회 등에 잦은 출동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과, 대부분의 종교활동이 휴식을 취하는 요일에 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하기보다 휴식을 하고 싶은 이유에서이다. 아울러 외부에서 종교단체가 방문할 경우 최소 인원을 참석해야하기 때문에 후임병들이 인원수 채우기 식의 사역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9) 부대내에서 종교활동의 보장정도

비발발적으로 종교활동에 동원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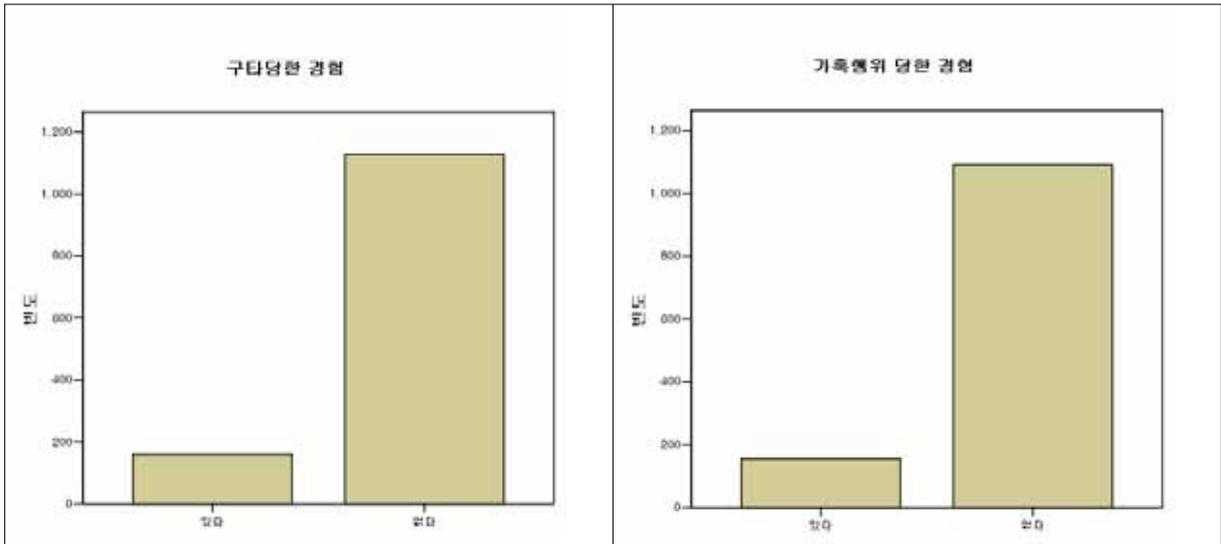
<표3-32> 부대의 종교 활동 보장정도

	있다	없다	합계
빈도	84	1183	1267
비율	6.6	93.4	100.0

다음은 부대내에서 일요일 등에 종파별 종교집회 등 종교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교 집회 등 종교활동이 잘 보장되고 있는 경우는 6.6%에 불과하였고, 거의 대다수의 대원은 자신의 부대 내에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군대에서와 같이 부대 내에 종교시설이 없으며, 필요시 인접한 종교인사(예, 목사, 신부, 법사 등)를 초청하여 행사를 하는 등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대부분의 전·의경부대는 부대와 가까운 종교시설을 이용하여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의경 부대내에는 종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부대 밖으로 외출하거나 외부 종교단체의 방문형식으로 종교 생활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종교활동을 사역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6.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경험

1) 구타와 가혹행위 당한 경험



<표3-33> 구타와 가혹행위 당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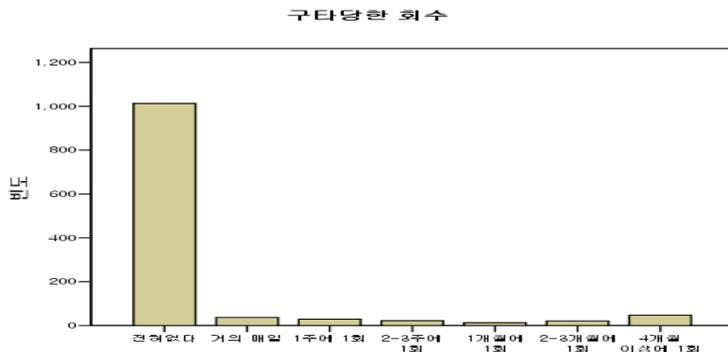
	구타			가혹행위		
	있다	없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빈도	160	1128	1288	155	1090	1245
비율	12.4	87.6	100.0	12.4	87.6	100.0

위의 표는 부대 생활 중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9명이었고 이는 조사대원의 12.4%에 해당하였다.

계급별로 보면 이경 13.8%(22명), 일경 13.8%(22명), 상경 43.4%(69명), 수경 28.9%(46명)이었다. 또한 구타당한 경험을 부대유형별로 보면 총 159명 중 전경대 근무자가 19.5%(31명), 기동대근부자가 52.8%(84명), 방순대근부자가 27.7%(44명)였다. 또한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는 155명이었고 이는 조사대원의 12.4%에 해당하였다. 계급별로 보면 이경 17.5%(27명), 일경 21.4%(33명), 상경 35.7%(56명), 수경 25.3%(39명)이었다. 또한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을 부대유형별로 보면 총 154명 중 전경대 근무자가 20.1%(31명), 기동대근부자가 58.4%(90명), 방순대근부자가 21.4%(33명)였다. 상경 계급에서 구타·가혹 행위를 당한 경우가 많았는데, 상경이 가장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며 후임병들인 이경과 일경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부대 특성상 기동대는 전경대와 방순대 보다 독립된 부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기 때문이며, 시위·집회 현장에서 진압이라는 업무를 빙자하여 암암리에 구타와 가혹행위가 행해지고 있으며 출동 현장에서는 구타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대 차원에서 구타·가혹 행위자에 대한 미온적 처리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2) 구타 당한 회수



<표3-34> 구타 당한 회수

	전혀 없다	거의 매일	1주에 1회	2-3주에 1회	1개월에 1회	2-3개월에 1회	4개월 이상에 1회	합계
빈도	1013	37	29	22	13	21	47	1182
비율	85.7	3.1	2.5	1.9	1.1	1.8	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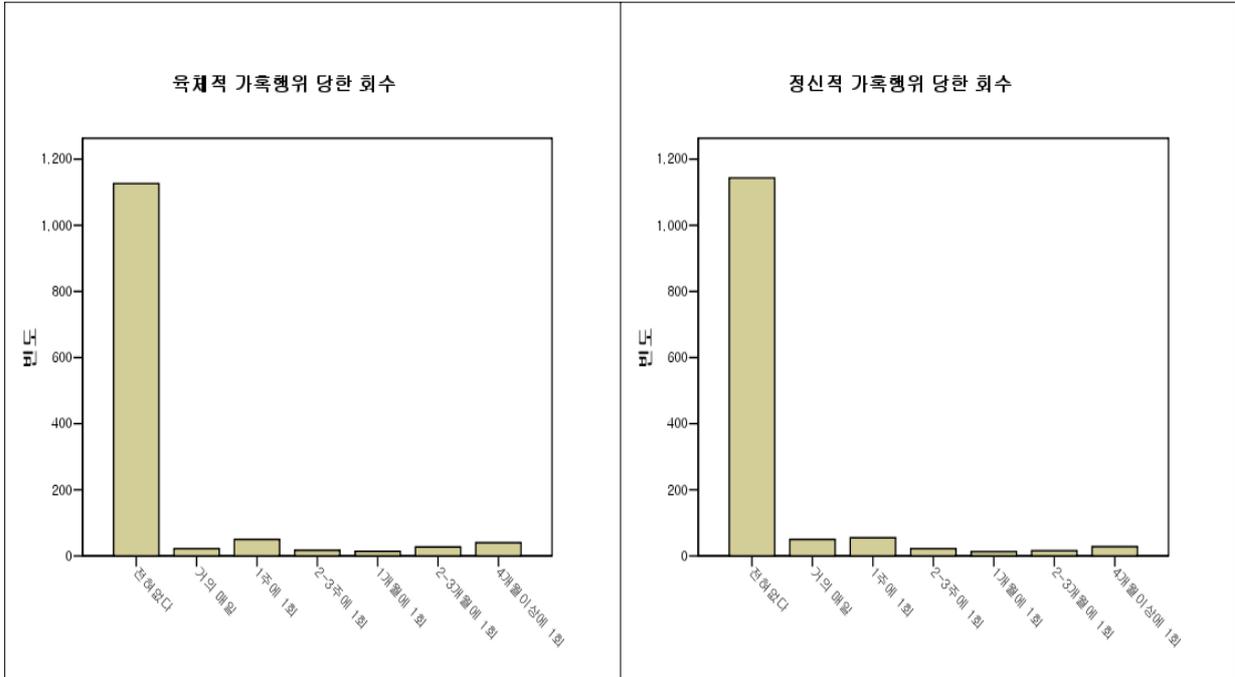
위의 표는 구타행위를 당한 회수를 조사한 내용이다.

위의 표를 보면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일에 1회는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5.6%(66명)였다. 또한 2-3주에 1회구타 당한다가 1.9%(22명), 1개월에 1회가 1.1%(13명) 2-3개월에 1회가 1.8%(21명), 4개월 이상에 1회가 4.0%(47명)였다.

계급별로 보면 거의 매일 혹은 1주에 1회 구타당한다는 경우가 총 66명인데, 이 가운데 이경 25.7%(17명), 일경 15.1%(10명), 상경 37.8%(25명), 수경 21.2%(14명)였다. 상경 계급이 많은 이유는 부대 업무의 중추로서 업무에 대한 책임도가 가장 크기 때문인데, 이경의 경우 부대 차원의 '신임 대원 부대 적응기'라는 교육 등의 지도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은 것은 그러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부대별로 보면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에 1회 구타당한다는 경우가 총 66명인데, 이 가운데 전경대근부자 16.6%(11명), 기동대근부자 75.7%(50명), 방순대근부자 22.7%(15명)였다. 즉 기동대 근무자들의 구타경험이 타 부대보다 많이 나타났다.

3) 가혹행위 당한 회수



<표3-35> 가혹행위 당한 회수

		전혀없다	거의 매일	1주에 1회	2-3주에 1회	1개월에 1회	2-3개월에 1회	4개월 이상에 1회	합계
정신적 가혹	빈도	1143	50	55	22	13	16	28	1327
	비율	86.1	3.8	4.1	1.7	1.0	1.2	2.1	100.0
육체적 가혹	빈도	1126	22	50	17	14	27	40	1296
	비율	86.9	1.7	3.9	1.3	1.1	2.1	3.1	100.0

위의 표는 가혹행위를 당한 회수를 조사한 내용이다. 위의 표를 보면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일에 1회는 정신적 가혹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7.9%(105명)였다. 또한 2-3주에 1회가 1.7%(22명), 1개월에 1회가 1.0%(13명) 2-3개월에 1회가 1.2%(16명), 4개월 이상에 1회가 2.1%(28명)였다. 계급별로 보면 거의 매일 혹은 1주에 1회 정신적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경우가 총 103명인데, 이 가운데 이경 23.3%(24명), 일경 20.3%(21명), 상경 37.8%(39명), 수경 18.4%(19명)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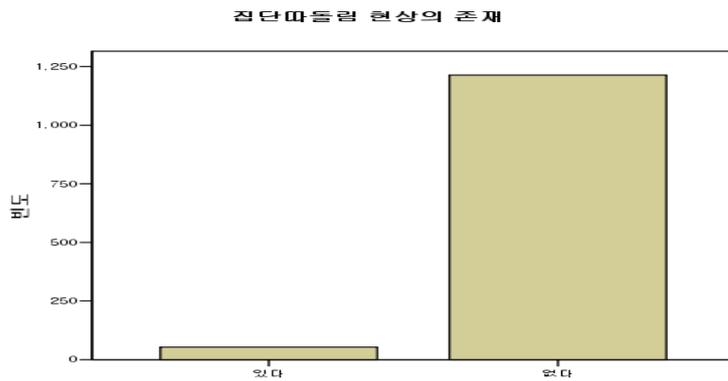
부대별로 보면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에 1회 정신적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경우가 총 105명인데, 이 가운데 전경대근무자 15.2%(16명), 기동대근무자 60.9%(64명), 방순대근무자 23.8%(25명)였다.

또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일에 1회 당하는 경우는 5.6%(72명)였다. 또한 2-3주에 1회가 1.3%(17명), 1개월에 1회가 1.1%(14명) 2-3개월에 1회가 2.1%(27명), 4개월 이상에 1회가 3.1%(40명)였다.

계급별로 보면 거의 매일 혹은 1주에 1회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경우가 총 77명인데, 이 가운데 이경 23.3%(18명), 일경 16.8%(13명), 상경 29.8%(23명), 수경 23.3%(18명)였다.

부대별로 보면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에 1회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경우가 총 77명인데, 이 가운데 전경대근무자 16.8%(13명), 기동대근무자 61.03%(47명), 방순대근무자 15.5%(12명)였다.

4) 왕따(집단따돌림)의 존재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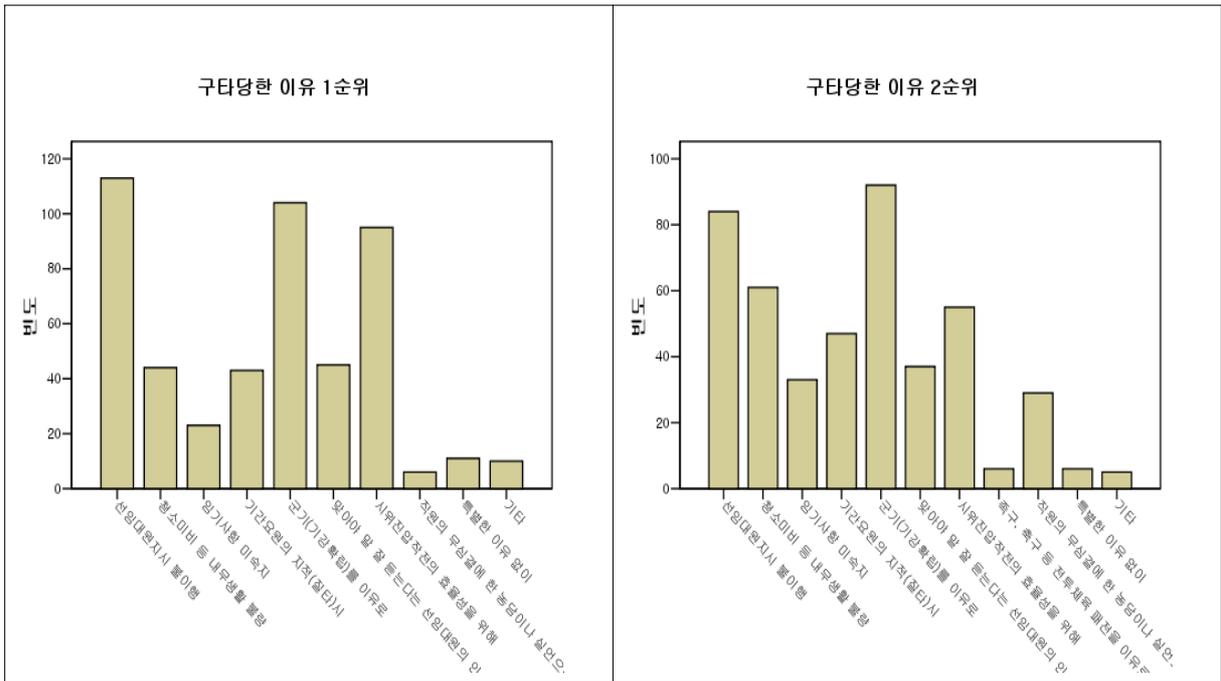
<표3-36> 왕따(집단따돌림)의 존재유무

	있다	없다	합계
빈도	53	1214	1267
비율	4.2	95.8	100.0

위 표는 소속부대에서 왕따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한 내용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따를 경험한 경우가 4.2% 53명으로 조사되었다. 계급별로 분석하면 전체 53명 중 이경 28.3(15명), 일경 24.5%(13명), 상경 39.6%(21명), 수경 7.5%(4명)였다. 또한 이들을 부대별로 보면 전경대 32.1%(17명), 기동대 43.4%(23명), 방순대 24.5%(13명)였다. 왕따의 경험도 상경이 가장 많았는데, 업무 등의 미흡과 후임 대원들에게 통솔력 부족으로 인한 원인이 주된 것이었으며, 사고등의 이유로 인해 타부대로 진출시 왕따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이유



<표 3-37>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이유

	1순위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선임대원 지시 불이행	113	22.9	84	18.5
청소미비 등 내무생활 불량	44	8.9	61	13.4
암기사항 미숙지	23	4.7	33	7.3
기간요원의 지적(질타)	43	8.7	47	10.3
군기(기강확립)을 이유로	104	21.1	92	20.2
맞아야 말 잘 듣는다는 선임대원의 인식	45	9.1	37	8.1
시위진압작전의 효율성 위함	95	19.2	55	12.1
축구 등 전투체육 패전을 이유로	0	0.0	6	1.3
직원의 무심결에 한 농담이나 실언으로	6	1.2	29	6.4
특별한 이유 없이	11	2.2	6	1.3
기 타	10	2.0	5	1.1
합계	494	100.0	4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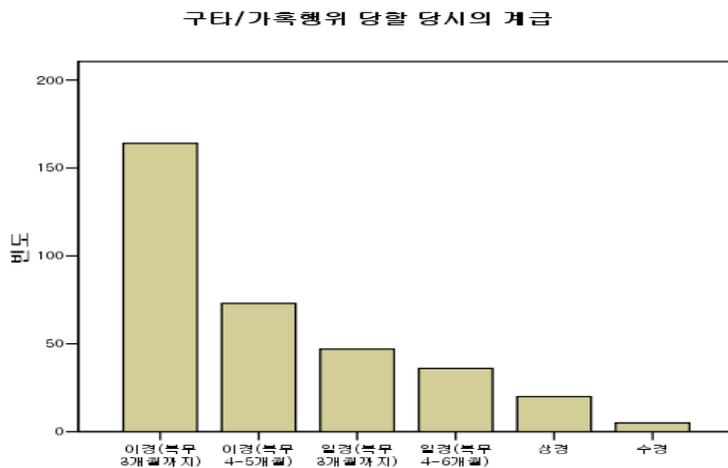
위 표는 구타를 당한 이유를 순위별로 조사한 내용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를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2.9%(113명)가 선임대원

지시불이행을 21.1%(104명)가 군기(기강확립)을, 19.2%(95명)는 시위진압작전의 효율성을 들었다.

계급별로 분석하면 선임대원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든 경우는 전체 110명 중 이경 18.2(20명), 일경 20.0%(22명), 상경 31.8%(35명), 수경 30.0%(33명)였다. 또한 군기확립을 이유로 든 경우는 전체 104명 이경 22.1(23명), 일경 32.7%(34명), 상경 26.9%(28명), 수경 18.3%(19명)였다. 이들을 부대별로 보면 선임대원의 지시불이행의 경우는 총 112명 중 전경대 30.4%(34명), 기동대 36.6%(41명), 방순대 33.0%(37명)였고, 군기강확립의 경우는 총 104명 중 전경대 15.4%(16명), 기동대 52.9%(55명), 방순대 31.7%(33명)였다.

6) 구타·가혹행위 당할 당시의 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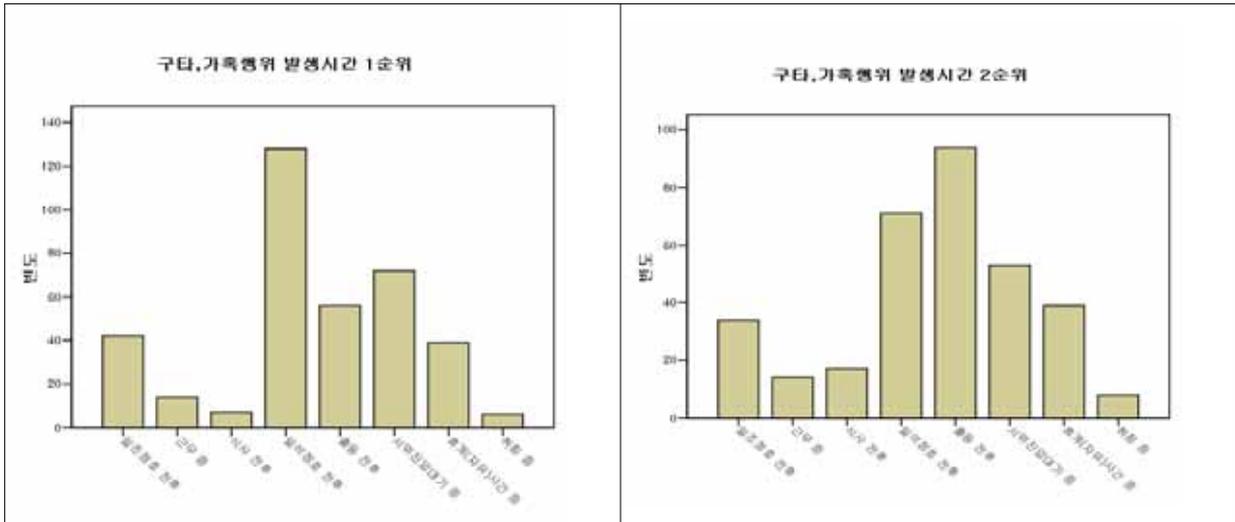
<표3-38> 구타·가혹행위 당할 당시의 계급

	이경 (3개월까지)	이경 (4-5개월)	일경 (3개월까지)	일경 (4-6개월)	상경	수경	합계
빈도	164	73	47	36	20	5	345
비율	47.5	21.2	13.6	10.4	5.8	1.4	100.0

위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할 당시의 계급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할 당시의 계급은 이경이 전체 계급중 68.7%에 해당되는데, 특히 선임대원 100일 특별 적응기간이라는 부대내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진입 후 3개월 까지 기간의 이경이 상당히 많았다. 다음은 일경으로서 83명당(24.0%), 상경이 20명(5.8%), 수경이 5명(1.4%)로서 계급이 낮을수록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신임 대원인 이경의 부대 적응을 위해 실시중인 ‘신임대원 부대적응’이라는 제도가 무의미 할 정도로 신임 이경의 구타가 가장 많았다.

7) 구타·가혹행위 발생시간



<표3-39> 구타·가혹행위 발생시간

	발생시간 1순위		발생시간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일조점호 전후	42	11.5	34	10.3
근무 중	14	3.8	14	4.2
식사 전후	7	1.9	17	5.2
일석점호 전후	128	35.2	71	21.5
출동 전후	56	15.4	94	28.5
시위진압대기 중	72	19.8	53	16.1
휴게(자유)시간 중	39	10.7	39	11.8
취침 중	6	1.6	8	2.4
합계	364	100.0	330	100.0

위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 발생시간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시간은 일석점호 전후가 가장 많은 128명(35.2%)이 응답했으며, 두 번째는 시위진압대기중 72명(19.8%)이었으며, 출동전후 56명(15.4%)로 나타났다. 출동도 시위도 근무의 개념이므로 출동과 시위 관련등의 근무를 하나로 분석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통계치가 나온다. 다음으로는 일조점호 전후로서 42명(11.5%), 휴게시간중이 39명(10.7%), 근무 중에 14명(3.8%), 식사 전후 7명(1.9%), 취침 중이 6명(1.6%)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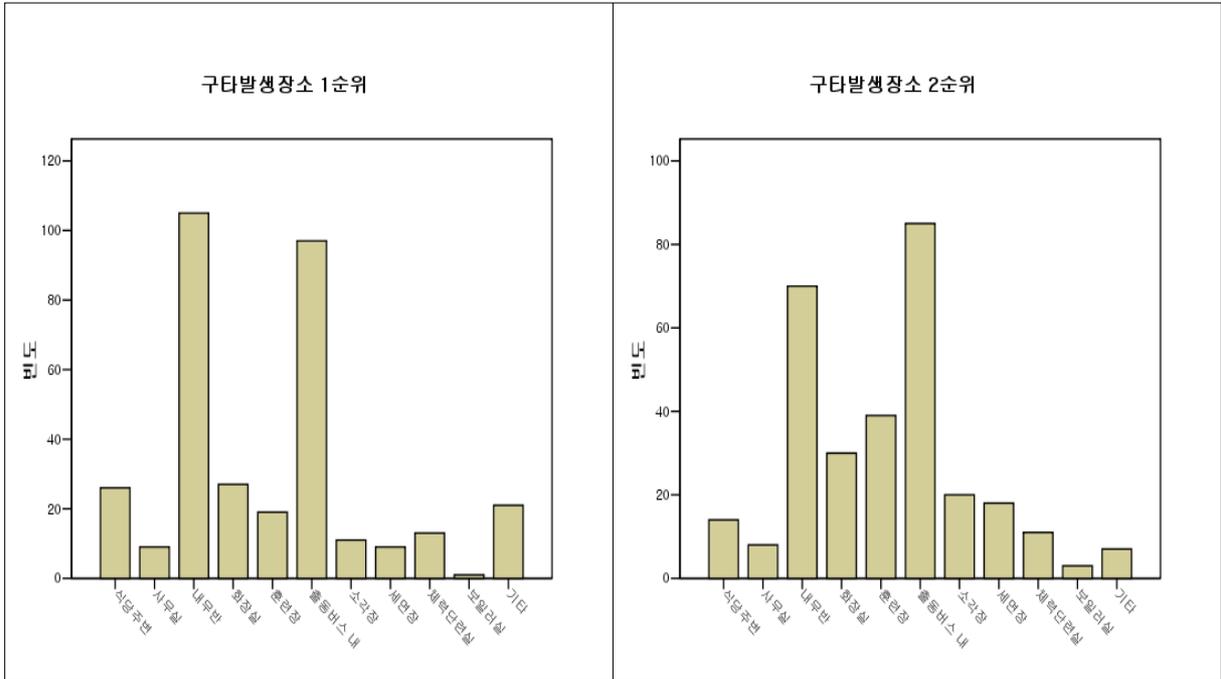
계급별 유형을 보면 1순위인 일석점호 전후의 경우 이경이 17명으로서 13.4%, 일경이 27명인 21.3%, 상경이 48명인 37.8%, 수경이 35명인 27.6%이었으며, 휴게시간의 중으로 응답한 경우 이경이 16명인 41.0%, 일경이 11명인 28.2%, 상경은 8명인 20.5%, 수경은 4명인 10.3% 이었다.

부대별 유형을 보면 일석점호 전후의 경우 전경대가 33명인 26.0%, 기동대가 54명이 응답하여 42.5%, 방순대의 경우 40명인 응답한 31.5% 이었으며, 시위진압대기중의 경우 전경대는 16명이 응답하여 22.2%, 기동대는 40명인 응답하여 55.6%, 방순대의 경우 16명인 22.2%로 조사되었다.

시위·진압 현장에서의 구타·가혹 행위는 허용된다는 의식과 구타·가혹 행위가 없으면 임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시위·진압 중에 구타·가혹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석 점호 이후에 구타·가혹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업무가 종료된 상황으로 기간요원 등 지휘관들의

통제가 느슨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8) 구타·가혹행위 발생장소



<표3-40> 구타·가혹행위 발생장소

	발생장소 1순위		발생장소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식당 주변	26	7.7	14	4.6
사무실	9	2.7	8	2.6
내무반	105	31.1	70	23.0
화장실	27	8.0	30	9.8
훈련장	19	5.6	39	12.8
출동버스	97	28.7	85	27.9
소각장	11	3.3	20	6.6
세면장	9	2.7	18	5.9
체력단련실	13	3.8	11	3.6
보일러실	1	.3	3	1.0
기타	21	6.2	7	2.3
합계	338	100.0	305	100.0

위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 발생장소에 대한 조사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장소는 105명(31.1%)가 응답한 내무반이 가장 많았으며, 출동버스가 97명(28.7%), 화장실이 27명(8.0%), 식당주변 26명(7.7%), 체력단련실이 13명(3.8%), 소각장이 11명(3.3%), 세면장과 사무실이 9명(2.7%), 보일러실이 1명(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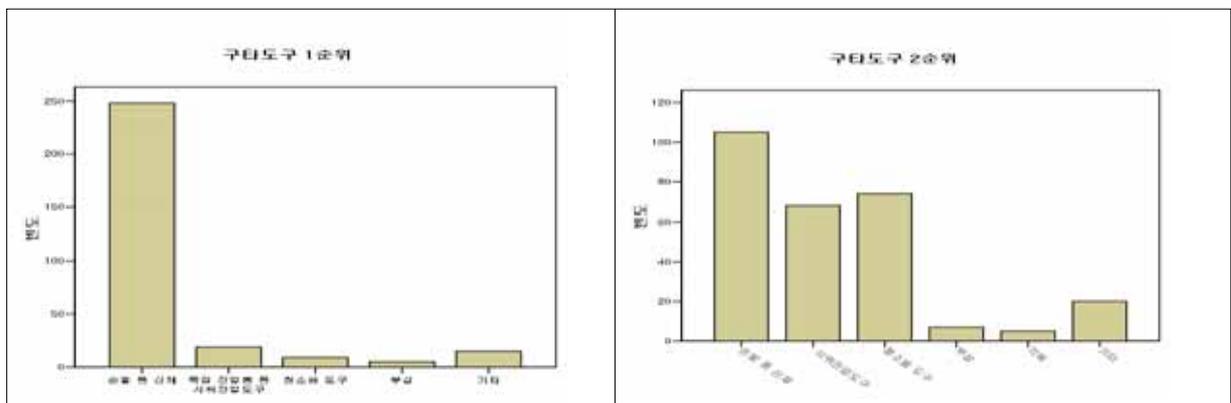
계급별 유형을 보면 내무반의 경우 이경은 25명(21.0%), 일경의 경우 16명(15.2%), 상경의 경우 42명(40.0%), 수경의 경우 25명(25.8%)로 조사되었다 . 또한 출동버스 내라는 응답중 이경의 경우 14명

(14.6%), 일경의 경우 21명(21.9%), 상경은 38명(39.6%), 수경의 경우 23명(24.0%)로 나타났다.

부대유형별로 내부반의 경우 전경대는 25명(24.0%), 기동대는 59명(56.7%), 방순대는 20명(19.2%)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출동버스내의 경우 전경대는 16명(16.5%), 기동대는 43명(44.3%), 방순대는 38명(39.2%)로 나타났다.

내무반에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간요원들이 상주하고 있다고는 하나 24시간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못하여 오는 대인간 스트레스로 인하여 갈등이 빚어져 폭력 등의 구타·가혹행위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위·진압 현장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인 대원들을 지목하였다가 상황 종료 후 복귀하는 버스 내에서 진압봉으로 폭행, 좌석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지휘관들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소각장, 화장실 등에서 구타·가혹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9) 구타에 이용되는 도구



<표3-41> 구타에 이용되는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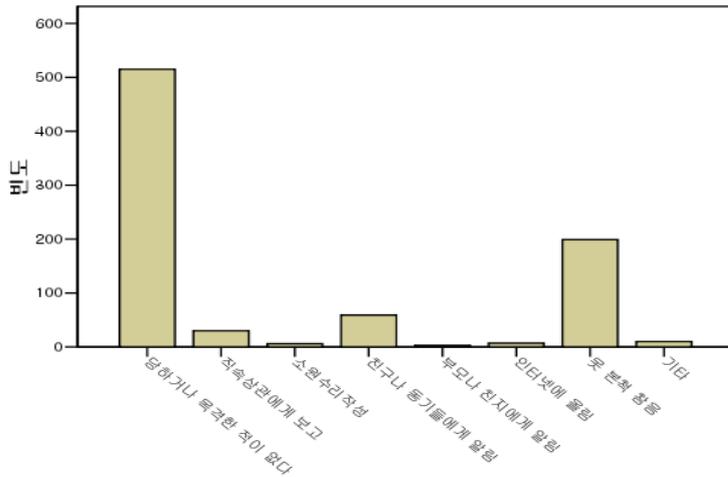
		손, 발 등 신체	시위진압 도구	청소용 도구	부삽	각목	기타	합계
구타 도구 1순위	빈도	248	19	9	5	0	15	296
	비율	83.8	6.4	3.0	1.7	0.0	5.1	100.0
구타 도구 2순위	빈도	105	68	74	7	5	20	279
	비율	37.6	24.4	26.5	2.5	1.8	7.2	100.0

위의 표는 구타에 이용되는 도구를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에 이용되는 도구로서 손, 발 등 신체로 직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248명(83.8%)이 응답하였다. 다음은 19명(6.4%) 시위진압용 도구가 이용되며, 청소용도구와 부삽이 각각 9명(3.0%), 5명(1.7%)으로 조사되었다.

10) 구타·가혹행위 목격시 대처행동

구타/가혹행위시의 조치사항



<표3-42> 구타·가혹행위 당하거나 목격시의 조치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음	직속상관에게 보고	소원수리 작성	친구나 동기에게 알림	부모/친지에게 알림	인터넷에 올림	못 본척 참음	기타	합계
빈도	515	30	6	59	3	7	199	10	829
비율	62.1	3.6	0.7	7.1	0.4	0.8	24.0	1.2	100.0

위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시의 조치사항을 조사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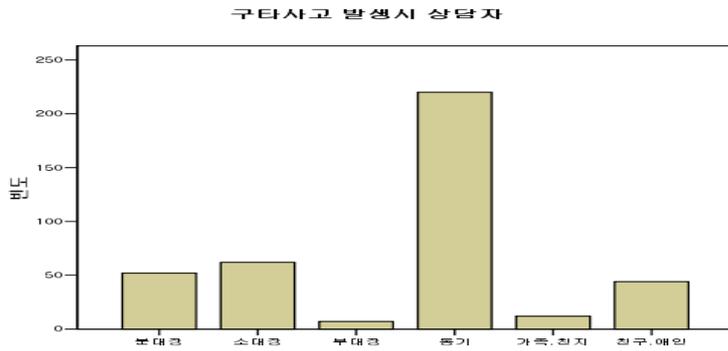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목격시의 조치사항 중 못 본척 참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24%로서 199명이 있었으며, 친구나 동기에게 알렸다는 59명(7.1%), 직속상관에게 보고했다 30명(3.6%),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7명(0.8%), 소원수리 작성 6명(0.7%), 부모나 친지에게 알렸다 3명(0.4%)로 응답을 했다.

계급별 유형을 보면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라는 응답에 대해 이경의 경우 못본척 참았다 67.2%, 직속상관에게 보고, 친구와 동기에게 알렸다가 각각 13.1% 순이었다. 이외에 소원수리, 인터넷에 글 올리기, 부모 친지에게 알렸으며, 마찬가지로 일경, 상경, 수경의 경우에도 못 본척 참았다, 직속상관에게 보고, 친구와 동기에게 알림, 소원수리, 인터넷에 글 올리기, 부모·친지에게 알렸다는 순이었다.

부대유형별로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조사 내용을 보면 전경대의 경우 못 본척 참았다가 52명인 83.8%로 가장 많았고, 친구에게 알림, 직속상관에게 보고했다는 응답순이었다. 마찬가지로 기동대와 방순대의 경우도 못 본척 참았다가 가장 많았으며, 친구에게 알림, 직속상관에게 알린다, 소원수리, 인터넷에 글 올리기, 부모·친지에게 알린다는 순이었다.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이유는 신고 등으로 인해 본인에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하더라도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준다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은 것은 인터넷 설치의 미흡과 프라이버시가 보장 될 정도의 시설물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1) 구타·가혹행위 발생시 상담대상



<표3-43> 구타·가혹행위 발생시의 상담대상

	분대장	소대장	부대장	동기	가족/친지	친구/애인	합계
빈도	52	62	7	220	12	44	397
비율	13.1	15.6	1.8	55.4	3.0	1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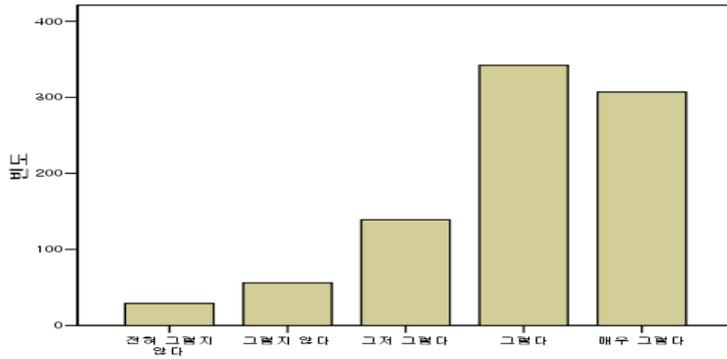
위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 발생시 상담대상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시 상담대상으로는 입대 동기가 55.4% 로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소대장은 15.6% 분대장은 13.1%로서 부대내에서 같이 생활하는 대원과 간부를 위주로 상담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친구와 애인에게 상담한다는 경우 11.1%였으며 가족과 친지에게 상담하는 경우는 3.0% 순이었다. 특히, 부대내의 최고 지휘관인 부대장과는 1.8%로서 가장 낮은 상담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계급별 구타 및 가혹 행위 발생 시 상담대상을 보면 부대 동기에게 한다가 가장 많았다. 이경의 경우 분대장과의 상담이 20.0%, 친구/애인이 9.4%, 소대장 9.4%, 가족 8.2%, 부대장 3.5% 순이었다. 일경의 경우 친구/애인이 18.4%, 소대장이 14.4%, 분대장 9.2% 순이었으며, 상경의 경우 소대장 19.1%, 친구/애인 11.7%, 분대장 9.5%, 부대장 2.9%, 가족/친지는 2.2%순이었다. 수경의 경우 소대장이 18.0%, 분대장 14.8%, 친구/애인이 5.3%, 가족이 2.1% 순이었으며, 부대장과 가족/친지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가장 낮았다.

이경의 경우 구타·가혹 행위 발생 시 동기와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본인과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며, 선임대원일수록 기간 요원 내지는 지휘관들과 상담을 많이 했는데 후임대원들보다는 근무기간이 오래되어 친화도가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부대 내의 최고 지휘관과의 상담이 가장 낮는데 인권 등의 교육을 통하여 부대원들과 친밀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2) 구타·가혹행위 발생시의 부대차원의 조치의 적절성

구타사고발생시 부대조치의 적절성



<표3-44> 구타·가혹행위 발생시의 부대차원의 조치의 적절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빈도	29	56	139	342	307	873
비율	3.3	6.4	15.9	39.2	35.2	100.0

위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 발생 시 부대차원의 조치의 적절성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 및 가혹 행위 발생 시 부대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은 74.4%인 649명이었고, 부정적인 대답은 25.6%인 85명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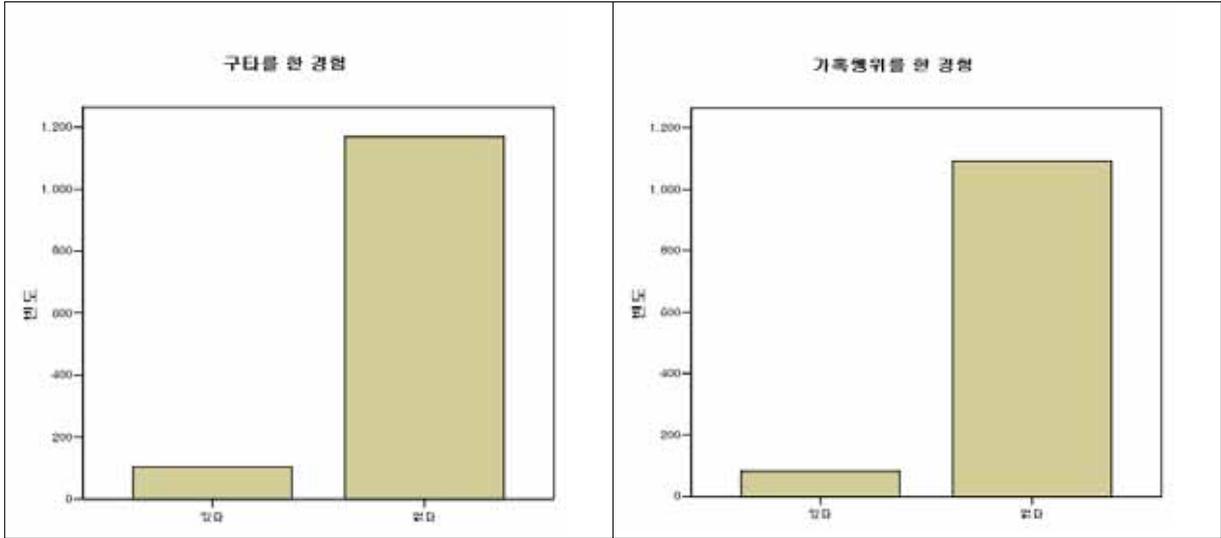
계급별에 따라 구타·가혹 행위 발생 시의 부대차원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이경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으로 75.1%, 부정적인 답변은 24.9%, 일경의 경우 긍정적 67.4%, 부정적 32.6%, 상경의 경우 긍정적 74.4%, 부정적 25.6%, 수경의 경우 긍정적 81.0%, 부정적 19.0%로서 대체로 부대차원의 적절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대유형별의 경우 전경대는 긍정적 79.8%, 부정적 20.2%, 기동대의 경우 긍정적 70.6%, 부정적 29.4%, 방순대의 경우 긍정적 76.5%, 부정적 23.5%로서 적절한 조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가혹 행위가 현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어 다행이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위한 임시 조치보다는 원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구타·가혹 행위에 대비할 수 있다.

7. 구타 및 가혹행위 가해경험

1) 구타와 가혹행위 한 경험



<표3-45> 구타와 가혹행위 한 경험

	구타			가혹행위		
	있다	없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빈도	103	1169	1272	82	1091	1173
비율	8.1	91.9	100.0	7.0	93.0	100.0

위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를 한 경험을 조사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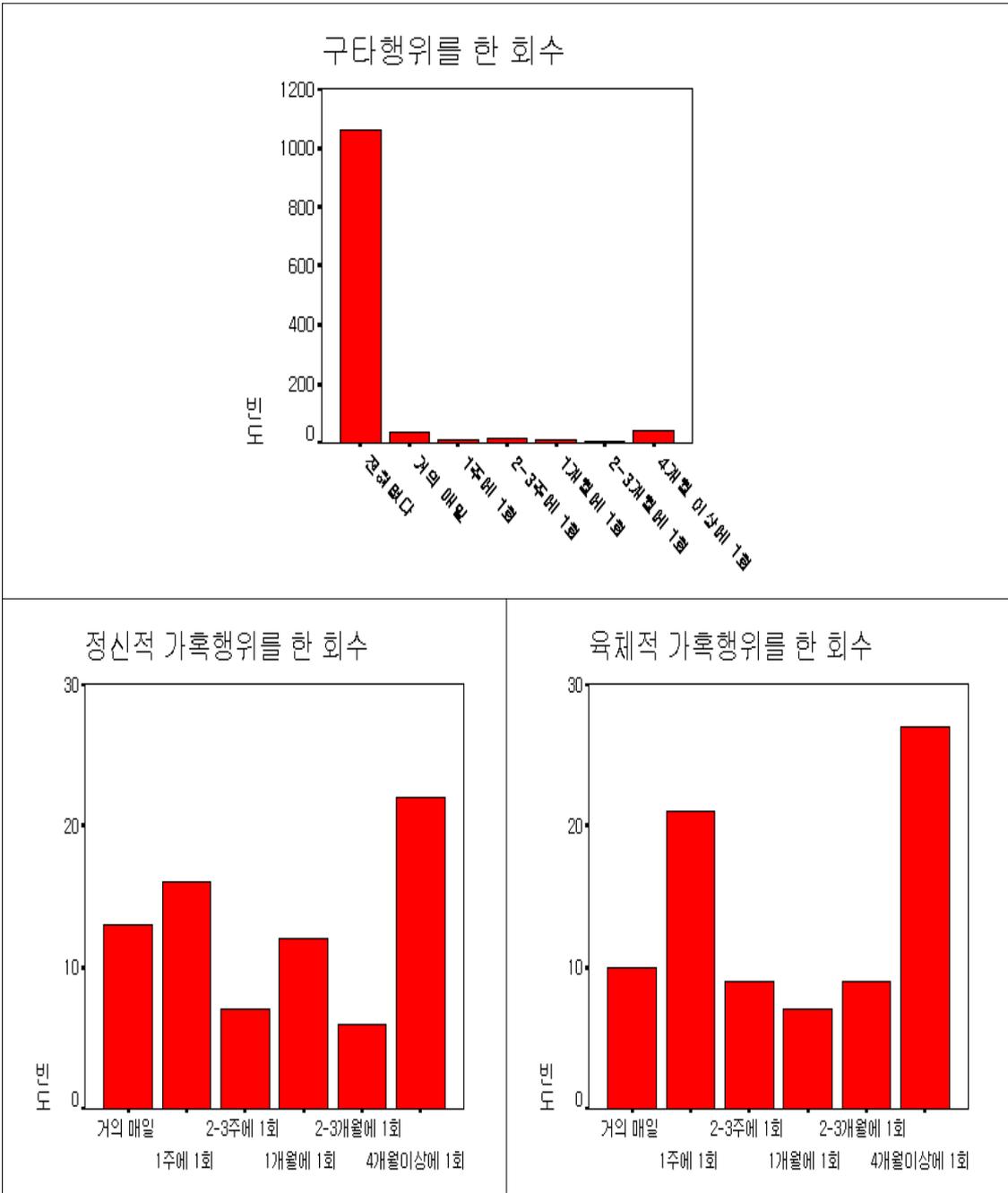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를 한 경험이 있는 대원은 103명으로 전체 8.1%를 차지하였다. 또 가혹 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대원은 82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하였다.

계급별 구타행위의 경험에 대한 응답을 보면 상경은 35명인 52.2%, 수경은 21.3%인 29명, 이경의 경우 12명 13.8%, 일경11명으로서 12.7%, 으로 나타났다. 가혹행위의 경우도 상경의 경우가 가장 많은 50.9%이었으며, 수경 19.9%, 이경 18.3%, 일경은 10.9로 조사되었다. 전·의경 조직의 특성상 상급자인 상경과 수경 계급에서 구타 및 가혹 행위 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유형별로 구타와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응답 중 먼저 구타를 한 것을 보면 기동대의 경우가 5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방순대로서 26.7%, 전경대는 15.2% 순이었다. 가혹행위의 경우는 기동대 48.7%, 방순대 34.2%, 전경대 17.0%로 구타와 가혹행위의 순은 동일하였다.

구타·가혹 가해 경험이 상경에서 가장 많은 이유는 부대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계급이기 때문이며, 이경에서도 가해 경험이 있는 것은 이경의 후임대원이 부대생활 중 업무의 차질 등으로 인한 책임전가를 회피하려는 데 있다.

2) 구타와 가혹행위 가해 회수



<표3-46> 구타와 가혹행위 한 회수

		전혀 없다	거의 매일	1주에 1회	2-3주에 1회	1개월에 1회	2-3개월 에 1회	4개월 이상 에 1회	합계
구 타	빈도	1059	36	8	13	9	6	39	1170
	비율	90.5	3.1	0.7	1.1	0.8	0.5	3.3	100.0
육 체 적 가 혹 행 위	빈도	1227	10	21	9	7	9	28	1311
	비율	93.6	0.8	1.6	0.7	0.5	0.7	2.1	100.0
정 신 적 가 혹 행 위	빈도	1223	13	17	7	12	9	24	1305
	비율	93.7	1.0	1.3	0.5	0.9	0.7	1.8	100

위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를 한 회수를 조사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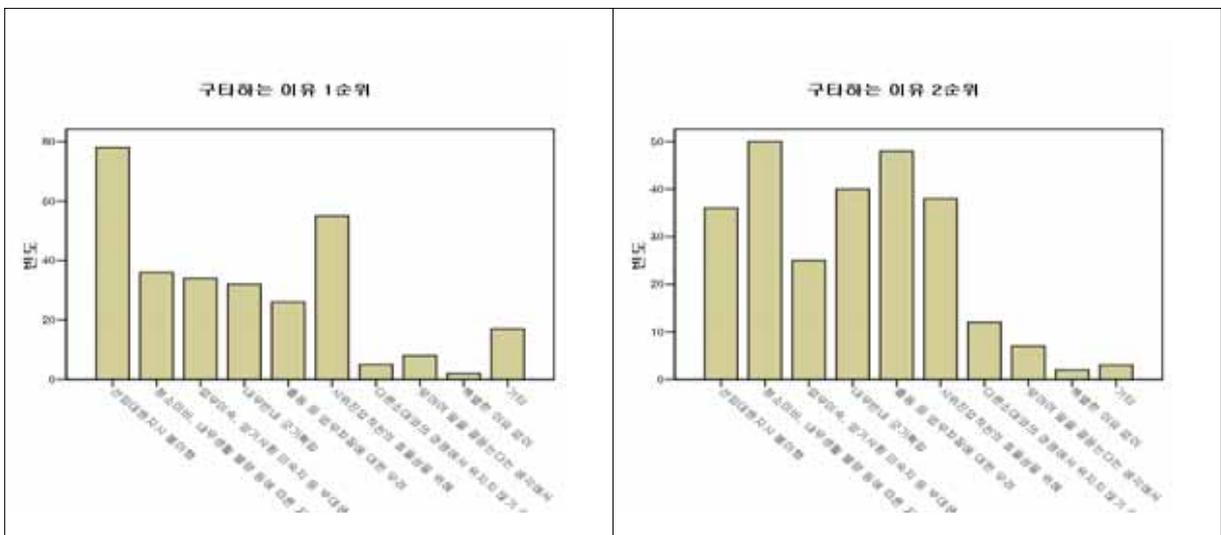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 회수는 4개월 이상 1회 한다는 대원이 39명(9.5%)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일 구타한다는 36명(3.1%) 2-3주에 1회가 13명(1.1%), 1개월에 1회 9명(0.8%), 1주에 1회 8명(0.7%), 2-3개월에 1회는 6명(0.5%)를 차지하였다.

육체적 가혹행위는 4개월 이상 1회 한다는 대원이 28명(2.1%)로 가장 많았으며, 1주에 1회 21명(1.6%), 거의 매일 10명(0.8%), 2-3주와 2-3개월에 1회가 각각 9명(0.7%), 1개월에 1회 7명(0.5%)를 차지하였다.

정신적 가혹행위는 4개월 이상 1회 한다는 대원이 24명(1.8%)로 가장 많았으며, 1주에 1회 17명(1.3%), 거의 매일 13명(1.0%), 1개월에 1회가 12명(0.9%), 2-3개월에 1회가 9명(0.7%), 2-3주에 1회가 7명(0.5%)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구타의 경우는 60%가 한 달에 반드시 발생하며, 육체적 가혹행위는 56.2%, 정신적 가혹행위는 59.7%가 발생하는 수치로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수 있다.

3) 구타·가혹행위를 하는 이유



<표3-47> 구타·가혹행위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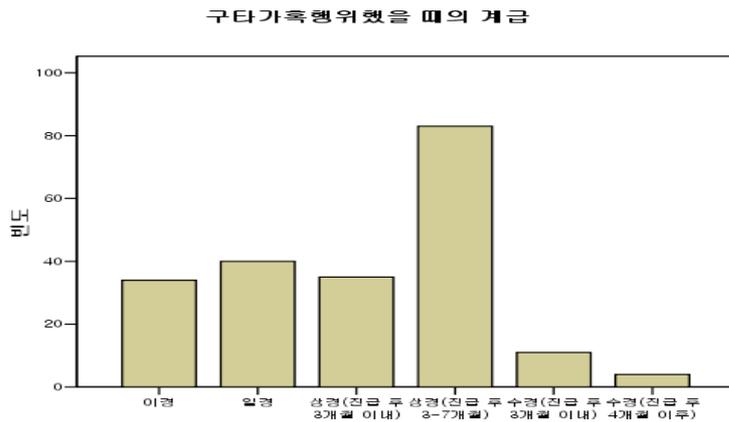
구타이유	구타한 이유 1순위		구타한 이유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선임대원지시 불이행	78	26.6	36	13.8
청소미비 등 내무생활 불량	36	12.3	50	19.2
업무미숙, 암기사항 미숙지 등 부대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34	11.6	25	9.6
내무반 군기확립을 위해	32	10.9	40	15.3
출동 등 업무차질에 대한 우려	26	8.9	48	18.4
시위진압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55	18.8	38	14.6
다른 소대와외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5	1.7	12	4.6
맞아야 말 잘 듣는다는 생각에서	8	2.7	7	2.7
특별한 이유 없이	2	0.7	2	0.8
기타	17	1.3	3	1.1
합계	293	100.0	261	100.0

위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한 경험을 조사한 자료이다.

가장 많은 것이 26.6%인 선임대원 지시 불이행이었으며, 시위진압작전의 효율성이라는 비합법적인 것을 정당화 시키려는 이유가 55%, 청소미비 등 내무생활 불량은 12.3%, 내무반 군기확립을 위해 32%, 출동 등 업무차질 우려가 26%, 맞아야 말 잘 듣는다는 생각에 2.7%, 다른 소대와외 경쟁심 5%, 이유 없이 2%의 순이었다.

구타·가혹 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선임대원 지시 불이행이었으나, 출동은 시위·진압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시위·진압 등의 현장에서 구타·가혹 행위는 허용된다고 하는 것과 구타·가혹행위가 있어야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므로 구타·가혹 행위는 필요악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구타·가혹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4) 구타 또는 가혹행위를 할 당시의 계급



<표3-48> 구타·가혹행위 할 당시의 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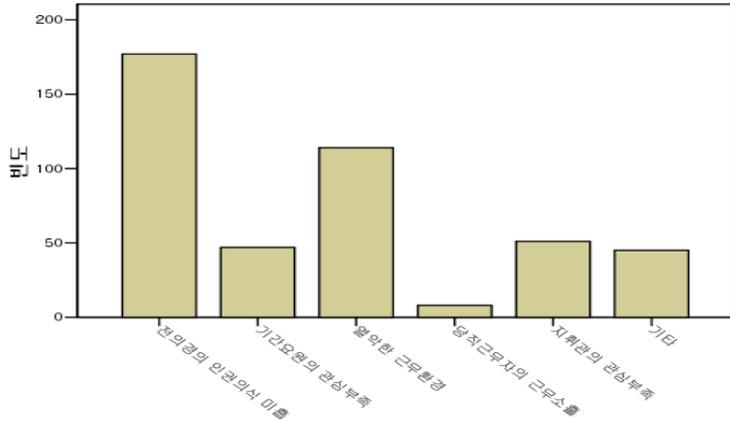
	이경	일경	상경 (3개월 이내)	상경 (4-7개월)	수경 (3개월 이내)	수경 (4개월 이후)	합계
빈도	34	40	35	83	11	4	207
비율	16.4	19.3	16.9	40.1	5.3	1.9	100.0

위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를 할 당시의 계급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 및 가혹 행위를 할 당시의 계급으로는 상경이 조사인원의 40.1%로 가장 많은 83명을 나타냈으며, 일경이 40명으로서 19.3%, 이경이 34명인 16.4%로 나타났으며, 수경의 경우 15명으로서 7.2%를 나타내는데, 전역에 가까워 질수록 빈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대유형별로 보면 기동대가 가장 많은 45.7%, 방순대가 31.8%, 전경대가 2.5%로 조사되었다. 상경 계급에서 특히 구타·가혹 행위의 가해자가 많았는데, 부대 내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보기 때문이다.

5) 구타·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표3-49> 구타·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전·의경의 인권의식 미흡	기간요원 관심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당직근무자 근무소홀	지휘관의 관심도 부족	기타	합계
빈도	177	47	114	8	51	45	442
비율	40.0	10.6	25.8	1.8	11.5	10.2	100.0

위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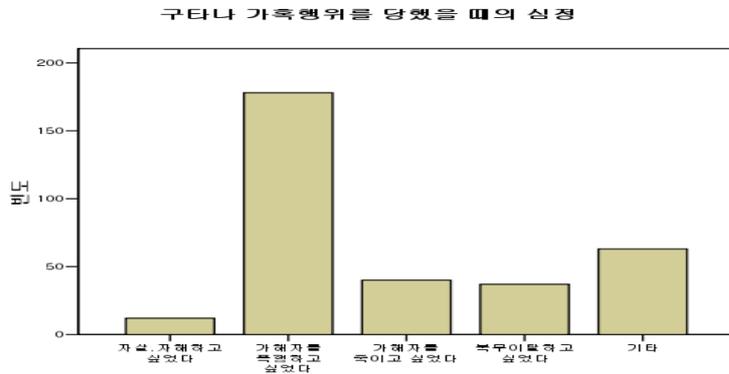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의경의 인권의식 미흡이 40.0%로서 177명이 응답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114명(25.8%)로 응답하였다. 지휘관과 기간요원의 관심부족으로서 각각 51명(11.5%)와 47명(10.6%), 당직 근무자의 근무소홀로서 8명(1.8%)로 부대내 간부들의 대원들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응답 또한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급별로 이경, 일경, 상경의 경우 전·의경의 인권의식 미흡을 가장 큰 이유로 각각 54.1%, 57.1%, 41.6%로 응답하였으며, 수경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을 51.1%로 1순위로 응답하였다. 그 밖에 이경, 일경, 상경의 경우 2순위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였는데 각각 18.8%, 19.0%, 25.8% 이었고, 수경의 경우 27.3%가 전·의경 인권의식미흡을 지적했다. 외에 기간요원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심부족을 그 이유로 글었다.

부대유형별에 있어서 전경대의 경우 48%가 전·의경의 인권의식 미흡을 29.0%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나머지 23%는 지휘관들의 관심부족을 들었으며, 기동대의 경우 전·의경 인권의식 미흡을 43.4%, 열악한 근무환경을 27.1%, 지휘관의 관심을 29.5%, 방순대의 경우 전·의경인권의식미흡을 42.3%, 열악한 근무환경을 31.3%, 지휘관의 관심 부족을 26.4%로 지적하였다.

전·의경의 구타·가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인권의식 미흡인 ‘맞아야 말을 잘 듣는다’, ‘구타·가혹 행위가 있어야 부대가 돌아간다’ 라는 잘못된 고쳐지지 않는 인식에 주된 이유가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대인과의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구타·가혹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휘관과 기간요원들이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구타·가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런 교육은 형식적 교육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자신이 근무 하는 동안만이라도 아무 일 없길 바라는 무사안일주의는 구타·가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며, 기간요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구타·가혹 행위 근절에 대한 정책이 지속성 없이 단절되는 것도 이유이다.

6) 구타·가혹행위를 당했을 때의 심정



<표3-50> 구타·가혹행위를 당했을 때의 심정

	자살/자해하고 싶음	가해자를 폭행하고 싶음	가해자를 죽이고 싶음	복무이탈하고 싶음	기타	합계
빈도	12	178	40	37	63	330
비율	3.6	53.9	12.1	11.2	19.1	100.0

위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했을 때의 심정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했을 때의 심정으로 가해자를 폭행하고 싶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178명(53.9%)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를 죽이고 싶었다라는 응답이 40명인 12.1%로서 가해자에 대한 응징 내지 보복하고 싶었다라는 심정이 가장 많았다. 또한 복무이탈 63명(19.1%), 자살 및 자해가 12명(3.6%)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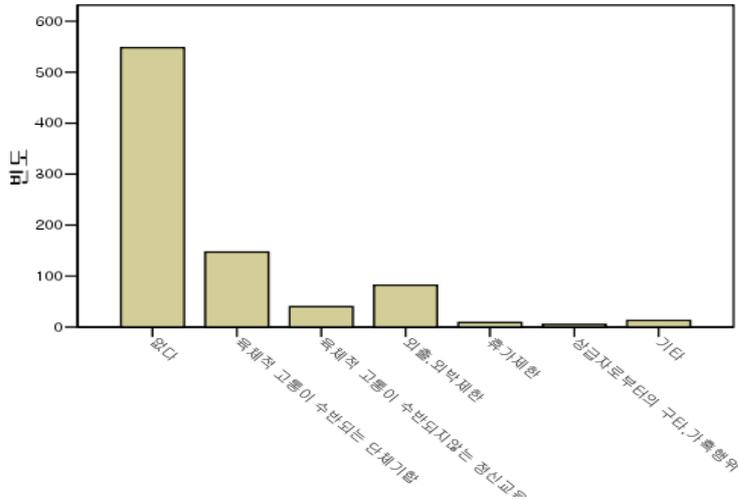
계급별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했을 당시의 심정을 보면 이경·일경·상경·수경 모두 가해자에 대한 폭행·살인이라는 보복 심정이 대부분으로서 각각 69.7%, 86.6%, 84%, 85.6% 이었으며, 다음으로 복무이탈과 자살·자해의 심정을 갖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대유형별로는 전경대·기동대·방순대 모두 보복의 심정이 가장 많았는데, 각각 80.6%, 84.3%, 81.5%이었다. 그 다음 순으로 복무이탈, 자살·자해하려는 충동심 순이었다.

피해대원이 갖는 가해대원에 대한 응징은 다른 구타·가혹 행위 등의 사고로 연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7) 부대사고시 연대책임의 경험

부대내 자체사고에 의한 단체책임의 경험



<표3-51> 부대내 자체사고에 의한 단체책임의 경험

	없다	단체기합	정신교육	외출/외박 제한	휴가제한	구타 가혹행위	기타	합계
빈도	548	147	40	82	9	5	13	844
비율	64.9	17.4	4.7	9.7	1.1	0.6	1.5	100.0

위의 표는 부대 내 자체사고에 의한 단체책임의 경험을 조사한 표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대 내 자체사고에 의한 단체책임의 경험에 있어 단체기합이 가장 많은 147명(17.4%)이었으며, 외출/외박 제한은 82명(9.7%), 정신교육 40명(4.7%),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5명(1.5%)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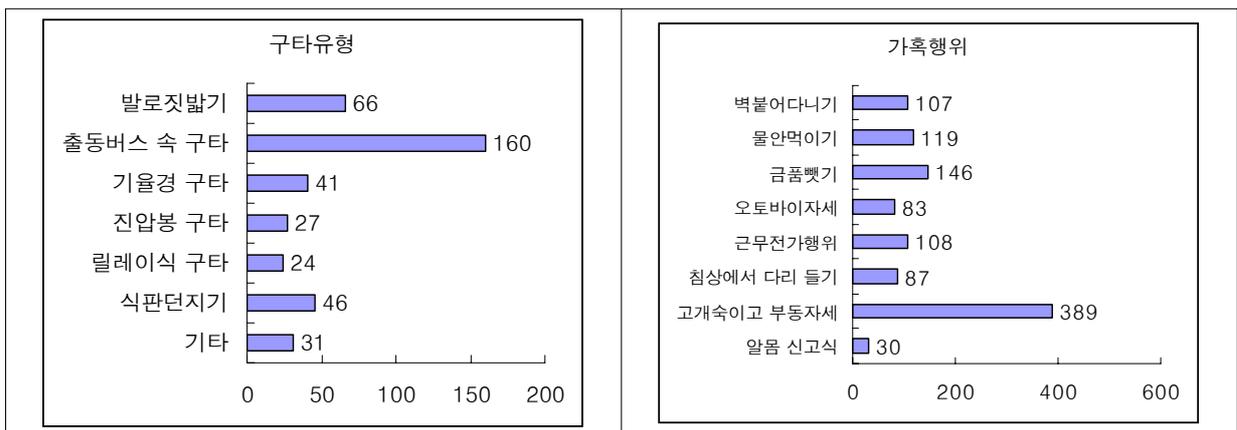
계급별로 살펴보면 이경, 상경, 수경이 육체적 고통을 일순위로 응답했는데, 각각 40.0%, 53.9%, 69.8%로, 일경의 경우 외출·외박제한을 39.1%로 응답하였다. 또한 이경, 상경, 수경의 경우 외출·박 제한을 두 번째로 응답했으며, 일경의 경우 육체적 고통을 꼽았다. 이외에도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단체경험과 휴가제, 구타·가혹행위를 순으로 응답하였다.

부대유형별의 경우 전경대, 기동대, 방순대 1순위로 각각 63.4%, 52.4%, 37.0%인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단체경험을, 2순위로 외출·박 제한을 들고 있으며, 차례대로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단체 경험, 휴가제한, 구타·가혹 행위로 응답하였다.

8) 구타 및 가혹 행위 유형별 빈도

<표3-52>구타 및 가혹 행위 유형

구타행위 유형			가혹행위 유형		
유형	빈도	비율	유형	빈도	비율
발로 짓밟기	66	16.7	알몸 신고식	30	2.9
식판 던지기	46	11.6	고개 숙이고 부동자세	389	36.4
릴레이식 구타	24	6.1	침상에서 다리 들기	87	8.1
진압봉 구타	27	6.8	근무전가행위	108	10.1
기울경 구타	41	10.6	오토바이자세	83	7.7
출동버스 속 구타	160	40.4	금품·보급품 빼앗기	146	13.7
기타	31	7.8	물 안 먹이기	119	11.1
계	395	100	벽 붙어 다니기	107	10.0
			계	1,06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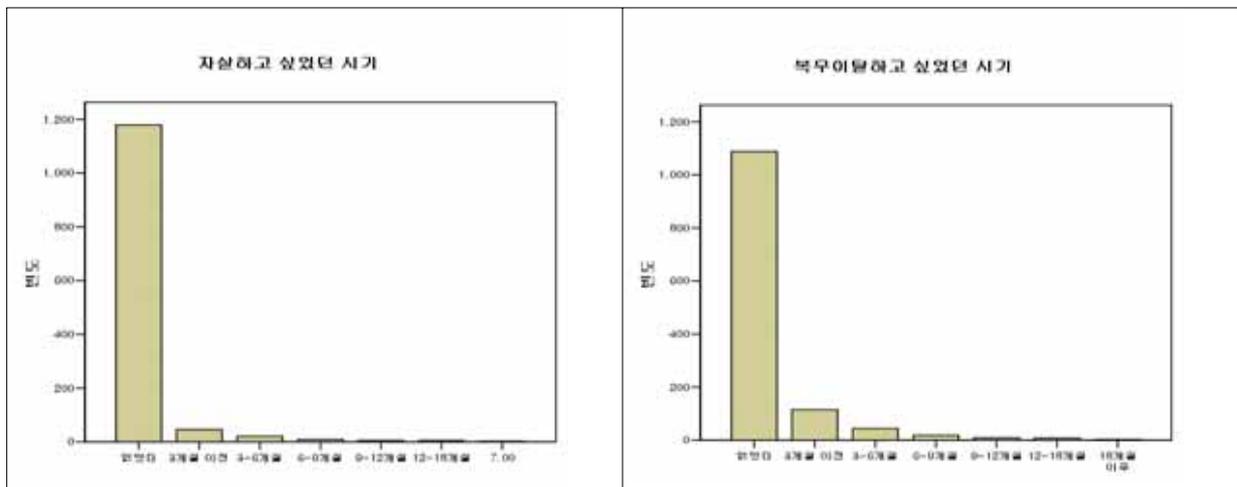
위의 표는 구타 및 가혹행위의 유형에 대한 조사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부대에서 행해지는 구타는 총 395명 중 40.4%인 160명이 출동버스 속 구타, 즉 출동버스 속에서 앉은 채로 두 다리 들게 하거나 주먹으로 머리 때리며, 버스 속 천정의 봉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차거나 밟는 행위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무릎을 꿇려 앉혀놓고 머리를 차고 짓밟는 행위가 16.7%인 66명, 식판 던지기 11.6% 26명, 기울경 구타 10.6%(24명), 진압봉 구타 6.8%(27명), 취침시간 대 기간요원의 눈을 피해 조를 짜서 릴레이식으로 하급기수를 때리는 릴레이식 구타가 6.1%(24명) 행해지며, 기타가 7.8%(31명)였다.

또한 가혹행위의 경우 선임고참이 상급고참에게 지적받을 때는 고개숙이고 있게 하거나 선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곳만 바라보게 하는 '부동자세 세우기'가 총 1069명 중 36.4%인 38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품이나 보급품 빼앗기 13.7%(146명), 물 안 먹이기 11.1%(119명), 불침번 등 야간 근무시 하급기수를 취약시간대(02:00~04:00)에 배정하고 교대를 늦게 하거나 안 해주는 근무전가행위 10.1%(108명), 보행시 벽에 붙어 다니게 하거나 팔을 붙여 다니게 하는 경우가 10.0%(107명), 침상에 누워 다리와 고개를 들고 있게 하기 8.1%(87명), 또한 출동버스 속에서 엉덩이를 들고 무릎을 구부리고 있게 하는 일명 '오토바이자세'가 7.7%(83명)였다. 더구나 최근 언론의 이슈가 된 '알몸신고식'도

2.9%(30명)나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밖에도 단체머리박기와 단체기합 13.37%(143명), “눈깔을 파버린다”, “대가리를 갈아 마신다” 등 심한 욕설과 폭언행위 13.18%(141명), 잠 안 채우고 암기강요 6.36%(68명), 붕끼고 오리걸음 2.99%(32명), 훈련 중 기간요원이 못 본 척하는 상황에서 훈련을 빙자한 기합 등 사적 제재행위 4.67%(50명), 음식점이나 휴게실에서 음식값을 하급기수에게 내게 하는 사적 부담행위 4.67%(50명), 하급기수가 귀대 시 좋은 옷을 입고 오면 빌려 외박 나가 집에 벗어놓고 와서 돌려주지 않거나 귀대 시 물품반입을 강요하는 등 물품착취가 4.39%(47명), 겨울에 팬티차림으로 찬물 속에 들어가게 하기 2.24%(24명), 세면장에서 푸샵시키기 2.61%(28명) 등의 가혹행위들이 조사되었다.

8. 자살과 복무이탈

1) 자살 또는 복무이탈의 생각과 시기



<표3-53> 자살과 복무이탈 생각과 그 시기(전입 후)

		없었다	3개월 이전	3-6개월	6-9개월	9-12개월	12개월 이후	합계
구 타	빈도	1179	48	21	9	5	5	1267
	비율	93.1	4.0	1.7	0.7	0.4	0.4	100.0
복 무 이 탈	빈도	1085	115	44	18	9	11	1285
	비율	84.7	8.9	3.4	1.4	0.7	0.8	100.0

위의 표는 자살과 복무이탈의 생각이 가장 강한 시기를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살과 복무이탈의 생각이 가장 강한 시기에 있어 자살의 생각이 가장 강한 시기는 조사인원 1,267명 중 1,179명은 없었고, 신병 부대적응 기간인 3개월 이전이 48명(4.0%)로서 가장 많았고, 3-6개월이 21명(1.7%)이었고, 6-9개월이 9명(0.7%), 9-12개월이 5명(0.4%), 12개월 이후가 5명(0.4%)로 나타났다.

또한 복무이탈 생각이 가장 강한 시기에 대한 응답은 1285명중 없었다가 1085명이고 부대 전입 3개월 이전이 115명(8.9%), 3-6개월이 44명(3.4%), 6-9개월이 18명(1.4%), 12개월 이후가 11명(0.8%), 9-12

개월이 9명(0.7%)이었다.

계급별로 자살하고 싶었던 생각이 가장 강한 시기는 신입대원이 아니라 상경으로서 자살하고 싶었다라고 응답한 대원 중 39.0%이었다. 이경은 24.1%, 일경은 18.4, 수경은 일경과 비슷한 18.5%로 조사되었다.

부대유형별 자살 생각이 가장 강한 시기에 대한 응답은 전경대가 구타경험의 차이를 보면 전·의경 조직의 특성상 상급자인 상경과 수경 계급에서 구타 및 가혹 행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급별 복무이탈을 생각했던 대원중에는 상경이 39.3%로 가장 많았으며, 이경이 26.2%, 수경이 21.9%, 일경이 12.6% 순이었다.

자살과 복무이탈이 상경 계급에서 가장 많은 이유는 수경과 이경·일경 사이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해야 할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책임의 전가 등을 들 수 있다.

부대별 자살하고 싶었다라고 응답 한 대원 중 가장 강한 시기는 전경대·기동대·방순대의 경우 각각 입대 후 3개월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이경 신분일 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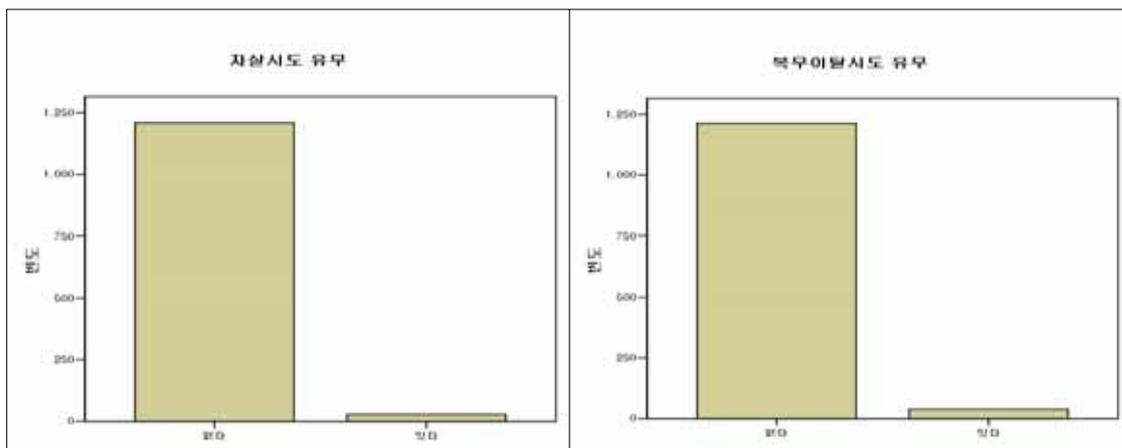
전경대의 경우 전입 3개월에 36.4% 3-6개월 사이에 36.4% 이었으며, 기동대의 경우 3월 이전이 37.2%, 3-6개월 사이에 25.6%이었으며, 방순대의 경우 3월까지 79.2%, 3-6월 사이에 13.8%로서 이경 신분인 때가 가장 높았다.

복무이탈 생각이 있었던 대원 중 가장 강한 시기는 전경대의 경우 3개월 이전이 64.4%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3-6월이 20% 6-9월이 6.6% 이었고 9-12월과 12-18월은 각각 4.4이었으며, 제대를 앞둔 18월이후에는 없었다.

기동대와 방순대의 경우도 입대 후 3월 이전이 각각 47.9%, 74.2%로서 신입대원이 복무이탈에 대한 생각이 가장 강한 시기라고 조사되었다.

복무이탈의 생각이 가장 강한 시기는 신입대원으로 근무 후 3개월로서 그 이유는 부대 생활에 적응이 덜 된 것과, 구타·가혹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더 크다.

2) 자살 및 복무이탈 시도유무



<표3-54> 자살 및 복무이탈 시도유무

	자살			복무이탈		
	있다	없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빈도	27	1209	1236	38	1213	1251
비율	2.2	97.8	100.0	3.0	97.0	100.0

위의 표는 자살 및 복무이탈 시도 유무를 조사한 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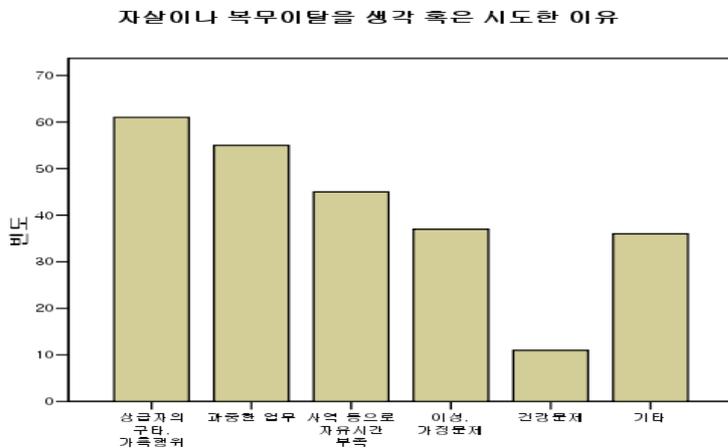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인원 1,236명 중에서 자살을 시도한 한 적이 있다라는 대원은 27명(2.2%)였으며, 없다는 1,209명(97.8%)이었다. 또한 복무이탈을 시도한 인원은 38명(3.0%)이고 없다는 1213명(97%)로 조사되었다.

계급별로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를 보면 이경이 51.9%로 가장 많았으며, 상경 40.7%, 수경이 7.4%였다. 신임대원으로 부대 진입 후 사회생활과 부대생활의 부적응이기 때문이다.

복무이탈 시도 경험이 있는 대원의 계급은 상경이 39.3%로 가장 많았으며, 이경 26.2%, 수경이 21.9%, 일경이 12.6%로 조사되었다. 제대를 앞둔 수경 계급도 상당수였는데, 부대에서 기간요원의 지시와 후임대원들의 불이행 내지 업무의 차질로 인한 책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성 교제의 문제점이 그 이유로 나타났다.

부대유형별로 보면 자살 시도 유무의 경우 기동대는 92.3% 제일 높았으며, 방순대는 7.7%로 조사되었다.

3) 자살/복무이탈을 생각 혹은 시도한 이유



<표3-55> 자살/복무이탈을 생각 혹은 시도한 이유

	상급자의 구타·가혹행위	과중한업무	사역 등 자유 시간부족	이성/가정 문제	건강문제	기타	합계
빈도	61	55	45	37	11	36	245
비율	24.9	22.4	18.4	15.1	4.5	14.7	100.0

위의 표는 자살 및 복무이탈을 생각 혹은 시도한 이유를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살 및 복무이탈을 생각 혹은 시도한 이유중 가장 많은 것은 상급자의 구타 및 가혹 행위로서 24.9%인 61명이 응답했다. 22.4%인 55명은 과중한 업무로, 18.4%인 45명은 사역

등 자유시간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이성이나 가정 문제로서 15.1%(37명), 건강문제로 11명(4.5%)이 그 이유로 들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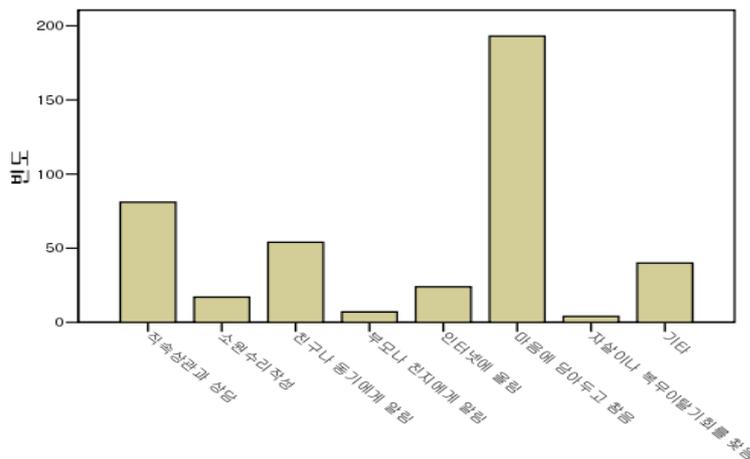
계급별 자살과 복무 이탈을 생각 혹은 시도한 이유에 대한 응답자 중 이경의 경우 자유시간 만족을 36.1%로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과중한 업무 22.2%, 상급자의 구타·가혹 행위 19.4%, 건강 13.8%, 이성·가정 문제 8.3%로 들었다. 일경의 경우 자유시간만족이 31.8%, 상급자의 구타·가혹 행위 25%, 과중한 업무 22.7%, 이성·가정문제가 20.5%이었다. 상경의 경우 상급자와의 구타·가혹 행위를 25%로 먼저 뽑았으며, 과중한 업무 23.6%, 나머지 자유시간부족과 이성·가정문제가 같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부대별 조사를 보면 전경대의 경우 이성·가정문제가 29.1%로 가장 많았고, 상급자의 구타·가혹행위와 과중한 업무가 각각 25%, 자유시간부족이 18.7%, 건강이 2.2%로 조사되었다.

기동대의 경우 상급자의 구타·가혹행위, 과중한 업무, 자유시간 부족이 26.7%, 이성·가정문제 12.8%, 건강이 7.1%로 나타났다. 방순대의 경우 상급자의 구타·가혹 행위 33.9%로 가장 높았고, 과중한 업무 28.5%, 자유시간 부족과 이성·가정문제가 각각 16%, 건강이 5.6로 조사되었다.

4) 자살 또는 복무이탈이 생각날 때의 대처방법

자살이나 복무이탈이 생각날 때 대처방법



<표3-56> 자살이나 복무이탈이 생각날 때의 대처방법

	직속상관과 상담	소원수리 작성	친구나 동기에 알림	부모/친지에게 알림	인터넷에 올림	마음에 담아두고 참음	실행기회를 찾음	기타	합계
빈도	81	17	54	7	24	193	4	40	420
비율	19.3	4.0	12.9	1.7	5.7	46.0	1.0	9.5	100.0

위의 표는 자살이나 복무이탈이 생각날 때의 대처방법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인원 420명중에서 자살이나 복무이탈이 생각날 때 ‘참는다’라는 대원이 193명(46%)으로서 절반에 가깝게 조사되었으며, ‘직속상관과 상담한다’는 81명(19.3%), ‘친구나 동기에 알린다’는 54명(12.9%), ‘기타’가 40명(9.5%), ‘인터넷에 올린다’는 24명(5.7%), ‘소원수리 작성’은 17명(4.0%), ‘부모와 친지에게 알린다’는 7명(1.7%), ‘실행기회를 찾는다’라는 내용이 4명(1.0%)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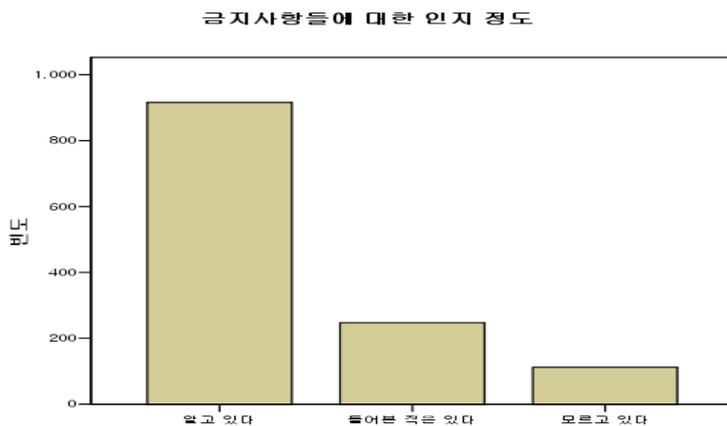
계급별 자살이나 복무이탈이 생각날 때의 대처방법은 마음에 두고 참는다라는 내용이 전대원중 1순

위로 응답하였다. 이경의 경우 61.8%, 일경 59%, 상경이 65.2%, 수경은 68.34%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직속상관과 상담한다로서 이경 24.1%, 일경 16.0, 상경 21%, 수경16.2% 이었다. 다음은 친구나 동기에 게 알린다는 응답이었는데 이경 17.2%, 일경 13.7%, 상경 14.6%, 수경 7.3%이었다. 다음은 실행의 기회를 찾는다로서 이경 9.1%, 일경 4.5%, 상경 5.6%, 수경 4.1% 였으며, 소원수리한다는 응답이 이경 10.3%, 일경 3.4%, 상경 2.4%, 수경 1.3%, 부모 친지에게 알린다는 이경 1.1%, 일경 3.4%, 상경 2.4%, 수경4.1%로 조사되었다.

부대 유형별로는 마냥 참는다는 경우 전경대 62.8%, 기동대 47.9%, 방순대 46.4%, 직속상관과 상담한다 전경대 16.8%, 기동대 21.6%, 방순대 25.9%, 친구나 동기에 상담하는 경우는 전경대 13.2%, 기동대 15%, 방순대 14.4%, 실행의 기회를 찾는다 전경대 2.4%, 기동대 6.1%, 방순대 10.5%, 소원수리한다 전경대 4.8%, 기동대 7.2%, 부모 친지에게 알린다는 기동대 2.2%, 방순대 2.8%로 조사되었다.

9. 대원 상호간 사적 제재실태

1) 금지사항에 대한 인지정도



<표3-57> 금지사항에 대한 인지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모르고 있다	합계
빈도	916	247	112	1275
비율	71.8	19.4	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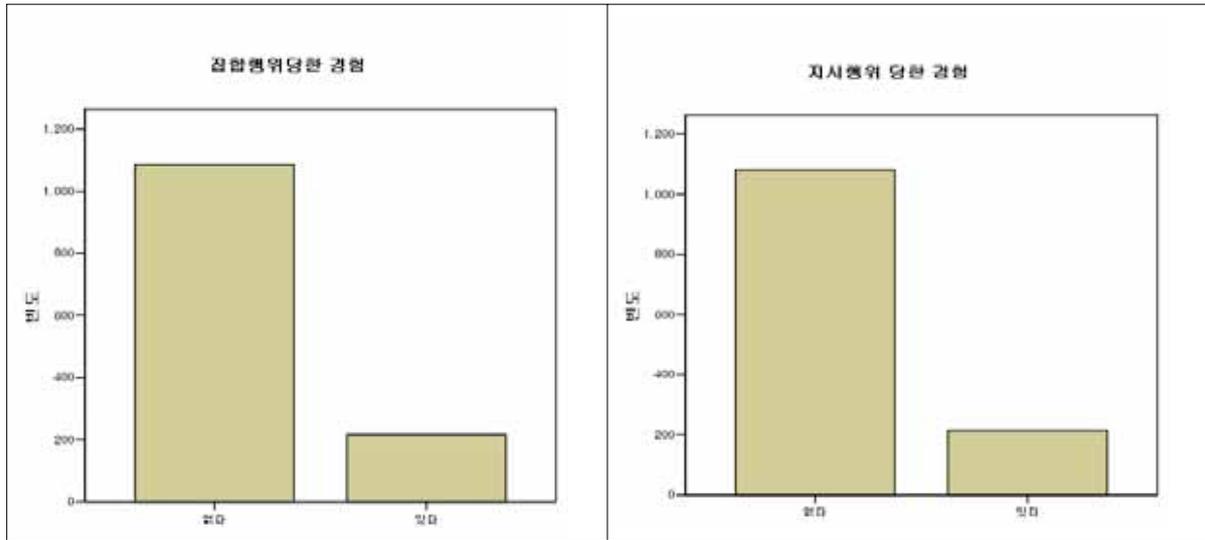
위의 표는 전·의경들의 금지사항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지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원은 916명으로서 71.8%, 잘 모르는 경우가 359명으로서 28.2%로서 직속상관과의 면담상담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급별로 보면 금지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는 총 112명 중 이경 31.3%(35명), 일경 30.4%(34명), 상경 27.7%(31명), 수경 10.7%(1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경과 일경에 많은 이유는 선임대원들보다 부대 적용이 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르는 경우를 부대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총 111명 중 전경대 근무자는 24.3%(27명), 기동대 근무자는 57.7%(64명), 방순대 근무자는 18.0%(20명)였다.

2) 집합행위와 지시행위당한 경험



<표3-58> 집합행위와 지시행위당한 경험

	집합행위			지시행위		
	있다	없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빈도	216	1085	1301	214	1081	1295
비율	16.6	83.4	100.0	16.5	83.5	100.0

위의 표는 집합행위와 지시행위당한 경험을 조사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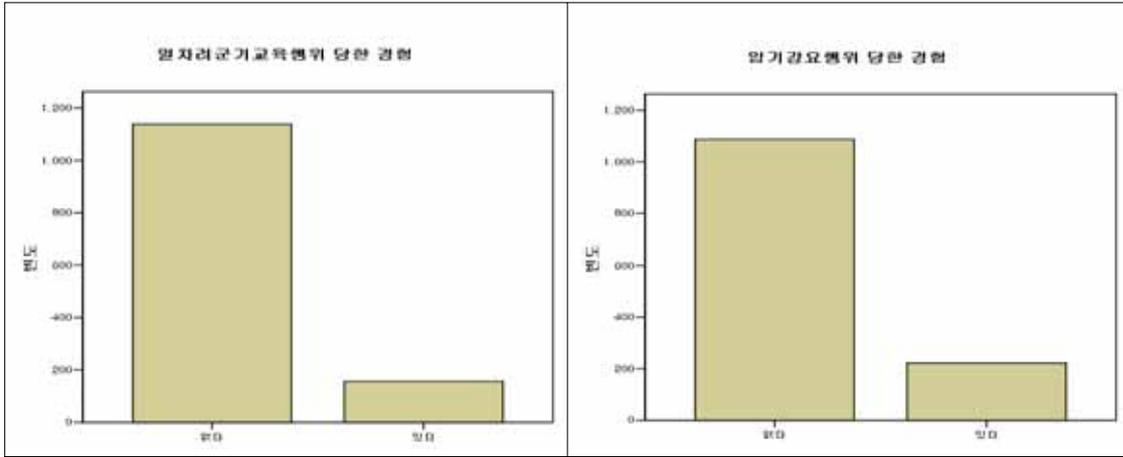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합행위의 경우 있다가 216명으로서 16.6%, 지시행위는 있다가 214명으로서 16.5%로 조사되었다.

계급별로 보면 경험이 있는 경우 총 214명 중 이경 15.0%(32명), 일경 21.0%(45명), 상경 39.7%(85명), 수경 24.3%(52명)으로 상경이 집합행위를 경험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대별로 보면 경험이 있는 경우 총 213명 중 전경대 근무자는 22.1%(47명), 기동대근무자는 52.6%(112명), 방순대 근무자는 25.4%(54명)였다. 즉 기동대 근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집합행위를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계급별로 지시행위를 경험한 경우를 보면 총 212명 중 이경 12.7%(27명), 일경 24.5%(52명), 상경 40.1%(85명), 수경 22.6%(48명)이었으며, 이들의 소속부대 유형을 보면 전경대가 28.8%(61명), 기동대가 44.3%(94명), 방순대가 26.9%(57명)이었다. 상경계급이 집합·지시행위를 당한 경험이 많은 것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이유이며, 이경과 일경의 업무 차질시 선임 대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로 파악된다.

3) 열차려/군기교육행위와 암기강요행위 당한 경험



<표3-59> 열차려/군기교육행위와 암기강요행위 당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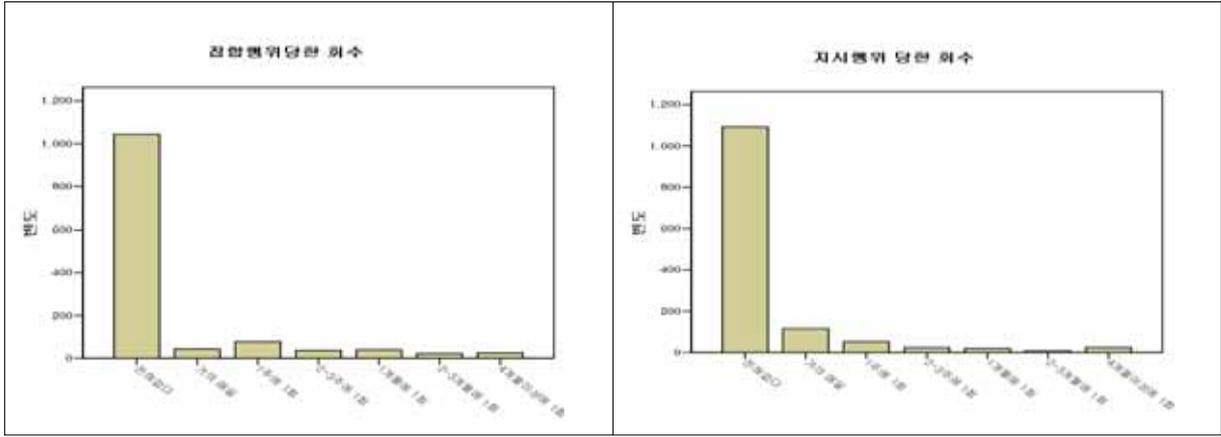
	열차려/군기교육행위			암기강요행위		
	있다	없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빈도	156	1138	1294	222	1087	1309
비율	12.1	87.9	100.0	17.0	83.0	100.0

위의 표는 열차려/군기교육행위와 암기강요행위 당한 경험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차려/군기교육 행위는 있다가 12.1%인 156명이 답했으며, 암기강요행위는 17.0%인 222명이 응답을 했다.

계급별로 보면 열차려/군기교육행위를 경험한 자는 총 155명 중 이경 18.1%(28명), 일경 19.4%(30명), 상경 38.1%(59명), 수경 24.5%(38명)이었으며, 암기강요를 당한 경우는 총 219명 중 이경 18.7%(41명), 일경 21.9%(48명), 상경 35.2%(77명), 수경 24.2%(53명)이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경 계급에서 특히 많은데 수경 등 선임대원과 이경·일경 등의 후임 대원간 업무 차질에서 오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대유형별로는 열차려/군기교육행위를 경험한 자는 총154명 중 전경대 근무자는 25.3%(39명), 기동대근무자는 52.6%(81명), 방순대 근무자는 22.1%(34명)이었으며, 암기강요를 당한 경우는 총 219명 중 전경대 근무자는 24.2%(53명), 기동대근무자는 48.9%(107명), 방순대 근무자는 26.9%(59명)였다.

4) 집합행위와 지시행위 당한 회수



<표3-60> 집합행위와 지시행위 당한 회수

		전혀 없다	거의 매일	1주에 1회	2-3주에 1회	1개월에 1회	2-3개월 에 1회	4개월 이상에 1회	합계
집 합 행 위	빈도	1043	43	77	36	39	22	25	1285
	비율	81.2	3.3	6.0	2.8	3.0	1.7	1.9	100.0
지 시 행 위	빈도	1092	116	52	23	19	8	24	1334
	비율	81.9	8.7	3.9	1.7	1.4	0.6	1.8	100.0

위의 표는 집합행위와 지시행위 당한 회수를 조사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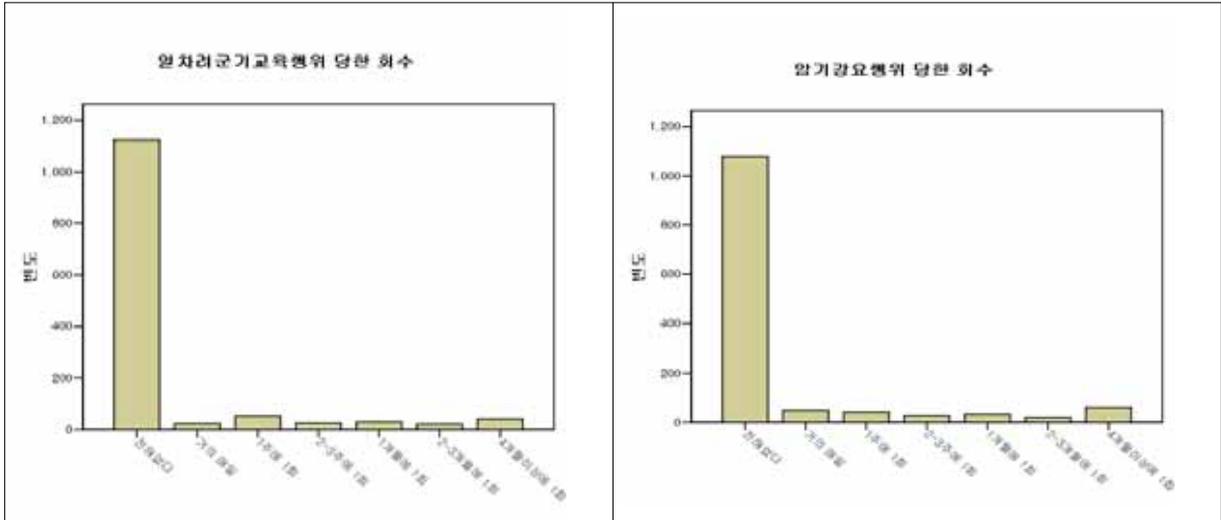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합행위 당한 회수는 1주에 1회가 가장 많은 77명(6.0%)가 응답했으며, 거의 매일이 43명(3.3%), 1개월에 1회 39명(3.0%), 2-3주에 36명(2.8%)가 응답하였다. 4개월 이상 1회는 25명(1.9%), 2-3개월에 1회는 22명(1.7%)이었다.

한편 지시행위 당한 회수는 거의 매일이 116명(8.7%)로 가장 많았고, 1주에 1회가 52명(3.9%)가 응답했으며, 4개월 이상이 24명(1.8%), 2-3주에 1회 23명(1.7%), 1개월에 1회 19명(1.4%), 2-3개월에 8명(0.6%)이라고 조사되었다.

계급별로 보면 우선 집합행위를 거의 매일이나 적어도 1주에 1회는 당한다고 한 총 117명 중 이경은 18.8%(22명), 일경은 16.2%(19명), 상경은 38.4%(45명), 수경은 26.4%(31명)이었다. 또한 지시행위의 경우도 거의 매일이나 적어도 1주에 1회는 당한다고 한 총 167명 중 이경은 16.1%(27명), 일경은 23.3%(39명), 상경은 38.9%(65명), 수경은 21.5%(36명)이었다.

부대유형별로 보면 우선 집합행위를 거의 매일이나 적어도 1주에 1회는 당한다고 한 총 116명 중 전경대 근무자는 19.8%(23명), 기동대근무자는 60.3%(70명), 방순대 근무자는 19.8%(23명)이며, 또한 지시행위의 경우도 거의 매일이나 적어도 1주에 1회는 당한다고 한 총 167명 중 전경대 근무자는 28.1%(47명), 기동대근무자는 50.2%(84명), 방순대 근무자는 21.5%(36명)였다.

5) 열차려/군기교육행위과 암기강요행위 당한 회수



<표3-61> 일차려/군기교육행위과 암기강요행위 당한 회수

		전혀 없다	거의 매일	1주에 1회	2-3주에 1회	1개월에 1회	2-3개월 에 1회	4개월 이상 1회	합계
일차려	빈도	1124	21	52	23	28	19	40	1307
	비율	86.0	1.6	4.0	1.8	2.1	1.5	3.1	100.0
암기강요	빈도	1076	49	42	27	33	19	61	1307
	비율	82.3	3.7	3.2	2.1	2.5	1.5	4.7	100.0

위의 표는 일차려/군기교육행위과 암기강요행위 당한 회수를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차려/군기교육행위과 암기강요행위 당한 회수는 1주에 1회가 가장 많은 52명(4.0%)가 응답했으며, 거의 매일이 21명(1.6%), 1개월에 1회 28명(2.1%), 2-3주에 23명(1.8%)가 응답하였다. 4개월 이상 1회는 40명(3.1%), 2-3개월에 1회는 19명(1.5%)이었다.

계급별로 보면 우선 일차려를 거의 매일이나 적어도 1주에 1회는 당한다고 한 경우가 총 73명이었는데, 이중 이경은 26.1%(19명), 일경은 13.6%(10명), 상경은 39.7%(29명), 수경은 20.5%(15명)이었다. 또한 암기강요의 경우도 거의 매일이나 적어도 1주에 1회는 당한다고 한 경우는 총 90명인데 중 이경은 30.0%(27명), 일경은 13.3%(12명), 상경은 34.4%(31명), 수경은 22.2%(20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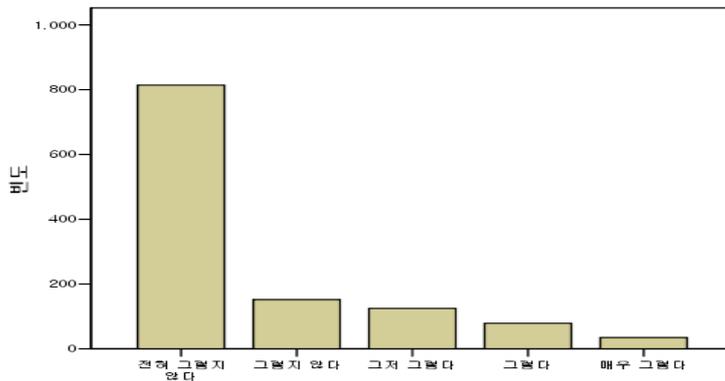
부대유형별로 보면 우선 일차려를 거의 매일이나 적어도 1주에 1회는 당한다고 한 경우는 총 72명인데, 이중 전경대 근무자는 13.8%(10명), 기동대근무자는 69.4%(50명), 방순대 근무자는 16.6%(12명)이며, 또한 암기강요행위의 경우도 거의 매일이나 적어도 1주에 1회는 당한다는 경우가 총 91명인데, 이중 전경대 근무자는 12.08%(11명), 기동대근무자는 67.03%(61명), 방순대 근무자는 20.8%(19명)였다.

10. 성적 괴롭힘실태

다음은 전·의경 부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접촉행위 내지 성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분석한 자료이다.

1) 남성간 성적 접촉에 대한 인식

남성간 성적접촉에 대한 인식-부대생활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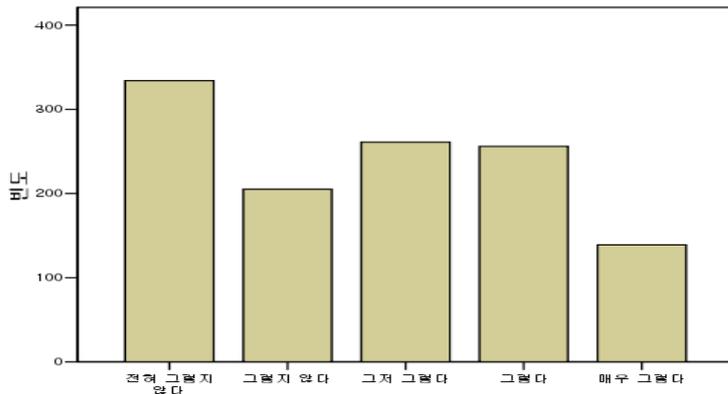
<표3-62> 남성간 성적접촉에 대한 인식-부대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빈도	814	152	125	79	35	1205
비율	67.6	12.6	10.4	6.6	2.9	10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성간 성적 접촉행위에 대하여 부대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5%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전·의경은 부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접촉행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80.2%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2)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적농담이나 성적비유나 평가는 성폭력에 해당한다



<표3-63> 성폭력에 대한 인식-불쾌한 성적농담, 성적비유는 성폭력에 해당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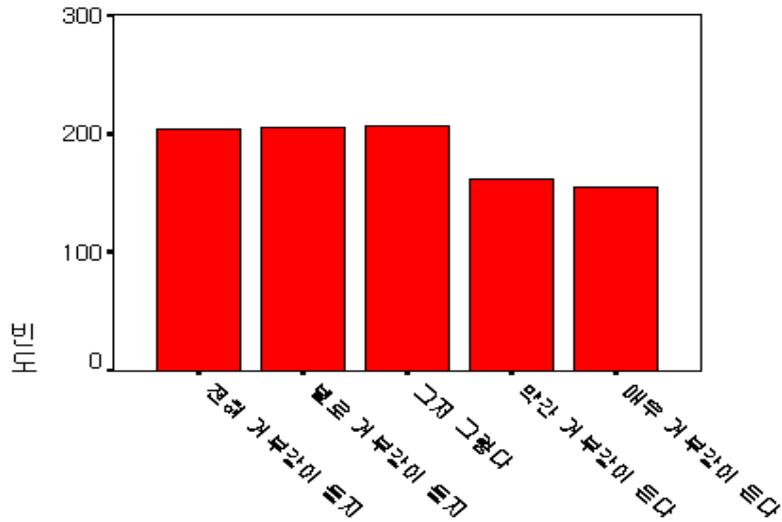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빈도	334	205	261	256	139	1195
비율	27.9	17.2	21.8	21.4	11.6	100.0

다음은 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성적 비유 등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등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45.1%이고,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답한 비율은 34%로서 언어에 의한 성희롱은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계급별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경은 37.5%이고 일경은 41.9%. 상경은 43.4%, 수경은 45.8%으로서 계급이 높은 상경과 수경집단이 성적 농담이나 성적 비유에 대하여 더 허용적이었다. 그 이유는 부대생활이 신입대원들보다 오래되어 성희롱에 대해 무감각해졌고, 단순한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부대유형별로 보면 전투경찰대는 42.4%, 경찰기동대는 39.7%, 방범순찰대는 40.5%로 전투경찰대가 가장 허용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신체적 접촉에 대한 거부감정도

신체적 접촉에 대한 거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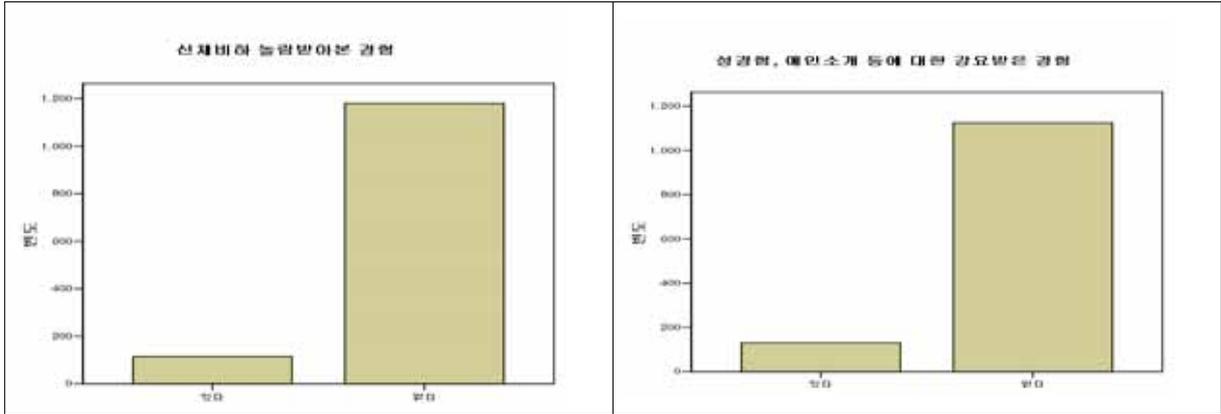


<표3-64>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성기나 몸만지기 등 신체적 접촉에 대한 거부감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거부감이 든다	매우 거부감이 든다	합계
빈도	204	205	207	162	155	933
비율	21.9	22.0	22.2	17.4	16.6	100.0

다음은 강제적이지 않지만 성기를 만지거나 몸을 어루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거부감의 정도를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부감을 느끼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약 24%이고 거부감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3.9%이었다. 이를 계급별로 보면 이경은 18%, 일경은 24%. 상경은 25.1%, 수경은 28.1%으로서 계급이 높은 상경과 수경집단이 원치않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거부감정도가 높았다. 이경과 일경이 다른 계급보다 거부감이 낮은 것은 거부 등의 표현을 할 경우 얼차려 등의 가혹행위 등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것으로 파악된다. 부대유형별로 보면 전투경찰대는 26.1%, 경찰기동대는 21%, 방범순찰대는 27.5%로 경찰기동대가 가장 허용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신체비하와 성경험담을 강요받은 경험



<표3-65> 신체비하와 성경험, 애인소개 등 강요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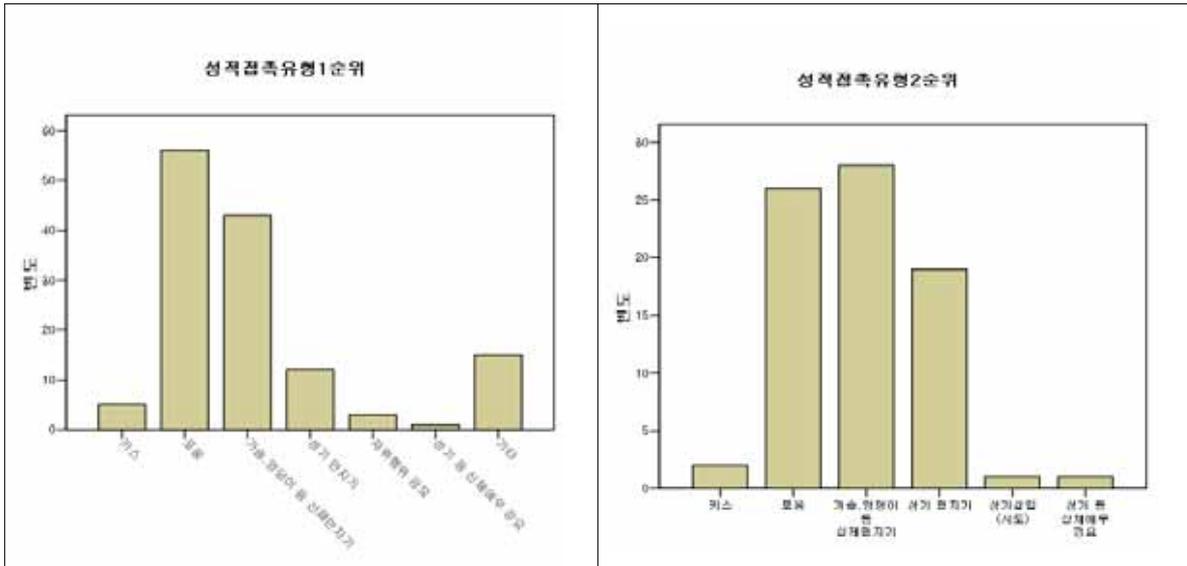
	신체비하 또는 놀림			성경험, 애인소개 등 강요		
	있다	없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빈도	114	1179	1293	130	1124	1254
비율	8.5	91.2	100.0	10.4	89.6	100.0

다음은 신체의 일부를 비하내지 성적으로 놀리거나 성경험, 애인소개 등을 강요받은 경험에 대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비하내지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약 8.5%이고, 성경험이나 애인소개 등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약 10.4%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계급별로 보면 신체비하나 놀림의 경우는 이경은 5%, 일경은 6%, 상경은 10.5%, 수경은 7.1%으로서 상경이 가장 높았다. 상경 계급의 경우 가장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신체비하나 놀림의 대상이 될 확률도 그 만큼 높기 때문이다.

부대유형별로 보면 전투경찰대는 8.4%, 경찰기동대는 7.3%, 방법순찰대는 7.5%로 전투경찰대가 다른 부대보다 경험비율이 높았다.

한편 성경험 등의 얘기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은 이경은 3.9%, 일경은 11.3%, 상경은 12.6%, 수경은 9.9%으로서 상경이 가장 높았다. 상경의 경우 휴가와 외출이 다른 계급보다 많기 때문이다. 부대유형별로 보면 전투경찰대는 8.8%, 경찰기동대는 9.8%, 방법순찰대는 10.6%로 방법순찰대가 다른 부대보다 성경험담을 이야기 하도록 하는 강요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성적 접촉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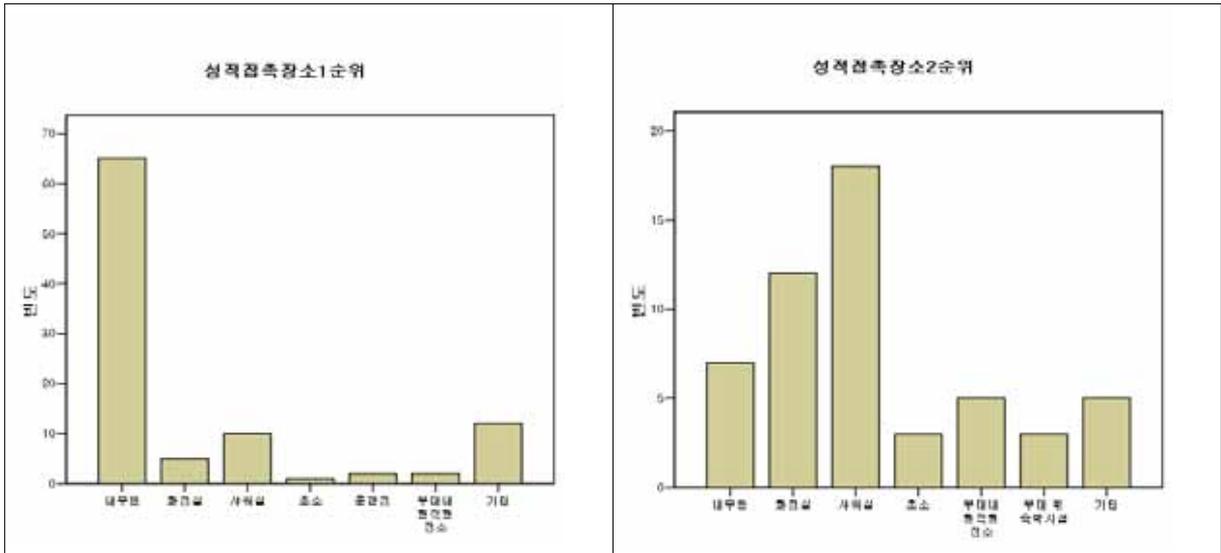


<표3-66> 성적접촉 유형

		키스	포옹	신체만지기	성기만지기	성기삽입(시도)	자위행위 강요	신체애무 강요	기타	합계
1 순위	빈도	5	56	43	12	0	3	1	15	135
	비율	3.7	41.5	31.9	8.9	0.0	2.2	0.7	11.1	100.0
2 순위	빈도	2	26	28	19	1	0	1	0	77
	비율	2.6	33.8	36.4	24.7	1.3	0.0	1.3	0.0	100.0

다음은 성적 접촉을 경험한 대원들의 성적 접촉의 유형을 1, 2순위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1순위의 성적 접촉을 보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적 접촉유형은 포옹이 4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만지는 유형으로 31.9%였으며, 성기만지기는 12명으로 8.9%가 있었고, 심지어 자위행위를 강요당한 경우도 3명이 있었다. 다음은 2순위로 응답한 성적 접촉유형은 신체만지기는 36.9%, 포옹은 33.8%, 성기만지기는 24.7%로 신체적인 접촉이 스킨쉽의 수준을 넘어서 남성간의 성적 접촉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성교육도 사고예방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교육조차 하기 힘든 실정에 있다. 가혹 행위 중 성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큰 수취심이므로 성과 관련된 교육을 부대차원에서 실시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6) 성적 접촉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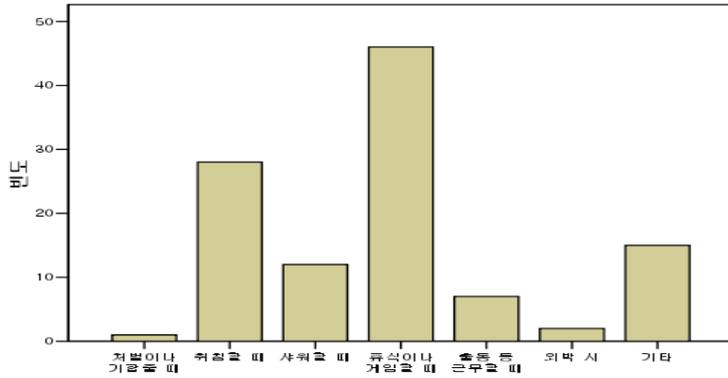
<표3-67> 성적접촉 장소

		내무반	화장실	샤워실	초소	훈련장	부대내 한적한 장소	부대내 숙박시설	기타	합계
1 순위	빈도	65	5	10	1	2	2	0	12	97
	비율	67.0	5.2	10.3	1.0	2.1	2.1	0.0	12.4	100.0
2 순위	빈도	7	12	18	3	0	5	3	5	53
	비율	13.2	22.6	34.0	5.7	0.0	9.4	5.7	9.4	100.0

다음은 성적 접촉이 이루어 지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1,2순위로 구분하여 설문을 하였다. 먼저 1순위의 성적 접촉장소는 내무반이 65명으로 67%를 보여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였으며, 이는 취침중이거나 휴식시간 등을 이용하여 빈번히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체 노출이 가장 심한 샤워실이 10명 10.3%로 많았고, 심지어 화장실 등에서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초소(1%)나 부대내 한적한 장소(2.1%), 훈련장(2.1%)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7) 성적 접촉이 발생하는 상황

성적접촉이 발생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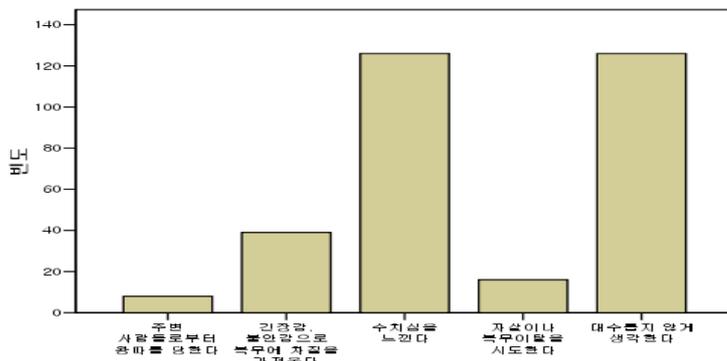
<표3-68> 성 접촉이 발생하는 상황

	처벌/기합 출 때	취침시	샤워시	휴식이나 게임시	출동 등 근무시	외박시	기타	합계
빈도	1	28	12	46	7	2	15	111
비율	0.9	25.2	10.8	41.4	6.3	1.8	13.5	100.0

다음은 성적 접촉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식이나 게임 등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시간적·장소적 상황이 있을 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취침시에 자주 발생한다는 응답이 28명으로 25.2%를 차지하여 성적 접촉을 경험한 자중 네명에 한명은 취침중에 성적접촉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외에 샤워시나 출동 등 근무시 등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8) 성적 접촉을 당했을 때의 반응

성적접촉을 당했을 때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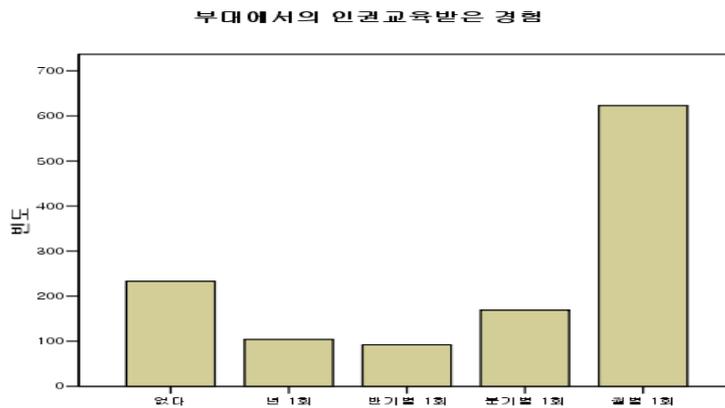
<표3-69> 성적접촉을 당했을 때의 반응

	주변사람으로부터 왕따당함	복무에 차질을 가져옴	수치심을 느낀다	자살이나 복무이탈을 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	합계
빈도	8	39	126	16	126	315
비율	2.5	12.4	40.0	5.1	40.0	100.0

다음은 성적 접촉을 당했을 때 정서적·행동적 반응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치심을 느낀다가 126명으로 40%였으며, 부대생활에 지장을 많이 느낀다(12.4%)거나 심지어 자살이나 복무이탈을 시도(5.1%), 또는 주변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한 경험(2.5%) 등 행동상의 부적응을 경험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11. 인권교육 및 태도

1) 인권교육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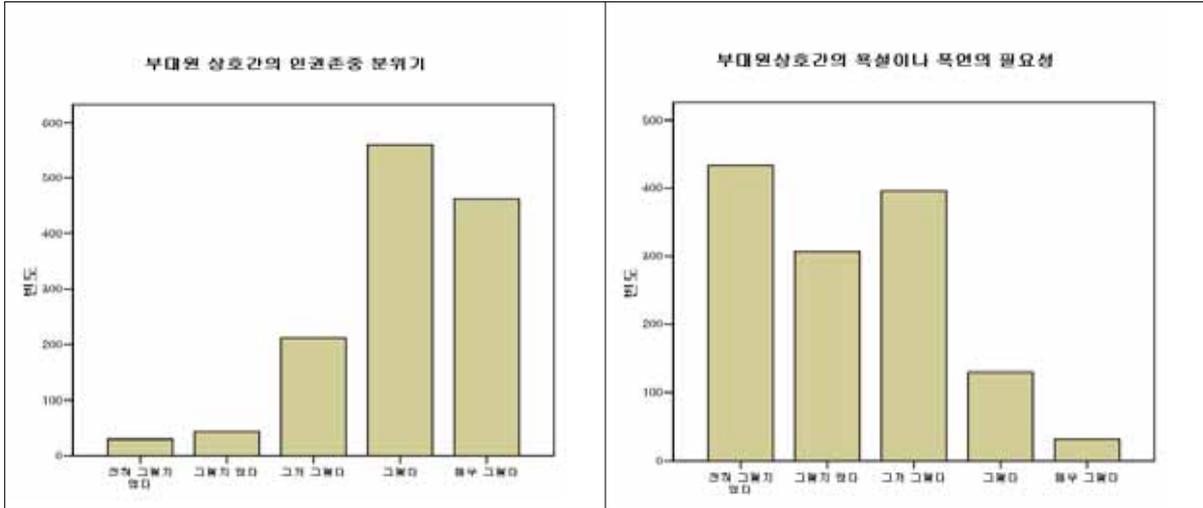
<표3-70> 부대에서 인권교육 받은 경험

	없다	년1회	반기별1회	분기별1회	월별1회	합계
빈도	233	104	92	169	623	1221
비율	19.1	8.5	7.5	13.8	51.0	100.0

다음은 부대에서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과 그 주기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인 233명이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교육을 받은 주기를 보면 월 1회 정도 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절반정도인 51%이었고, 심지어 1년 1회 정도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8.5%가 있었다. 이외에 분기별 1회는 13.8%, 반기1회는 7.5%이었다. 부대별로 인권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전투경찰대의 경우 26.8%이었고, 경찰기동대는 22.6%, 방법순찰대는 12.4%이었다.

전·의경 인력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 근무와 잦은 출동으로 인한업무량은 계속 증가하여 인권교육은 생략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욕설이나 폭언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표3-71> 인권존중분위기와 욕설이나 폭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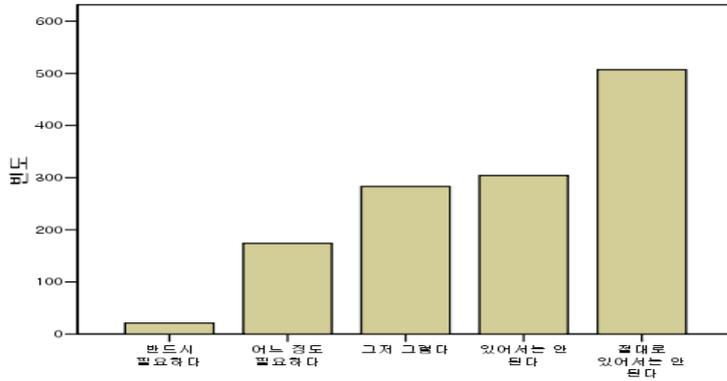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인권 존중 분위 기	빈도	30	43	212	559	463	1307
	비율	2.3	3.3	16.2	42.8	35.4	100.0
욕설 이나 폭언 의 필요	빈도	434	307	396	130	32	1299
	비율	33.4	23.6	30.5	10.0	2.5	100.0

다음은 조사대상인 전·의경의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부대에서 인권존중에 대한 분위기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조직의 위계질서와 군기를 위해서 욕설과 폭언이 필요한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권존중분위기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그저그렇다가 16.2%, 그렇지않다 3.3%, 전혀그렇지않다 2.3% 등 전체적으로 인권존중분위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1.8%이었다. 이를 부대별로 보면 전투경찰대의 경우 21.5%가 인권존중분위기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며, 경찰기동대는 24.8%, 방법순찰대는 17.5%로서 경찰기동대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한편, 조직의 위계질서를 위해 욕설이나 폭언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2.5%로서 욕설과 폭언이 부대의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수단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를 계급별로 보면, 수경의 19.3%가 욕설과 폭언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경은 11.3%, 일경은 12%, 이경은 8.7%가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계급이 낮을수록 욕설과 폭언에 부정적이었다. 한편 이를 부대별로 보면 전투경찰대는 12.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찰기동대는 13.5%, 방법순찰대는 11%로서 역시 경찰기동대가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3) 구타 및 가혹행위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구타나 가혹행위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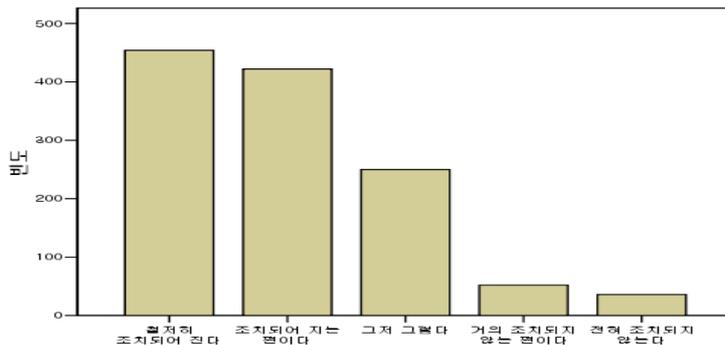
<표3-72> 구타나 가혹행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반드시 필요	어느 정도 필요	그저 그렇다	있어서는 안됨	절대로 있어서는 안됨	합계
빈도	21	174	283	304	507	1289
비율	1.6	13.5	22.0	23.6	39.3	100.0

다음은 조사대상인 전·의경의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부대에서 조직의 위계질서와 군기확립하기 위해서 구타 또는 가혹행위가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의 위계질서를 위해 구타나 가혹행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그저그렇다가 22%이고, 어느정도 필요하다 13.5%, 반드시 필요하다 1.6%로서 구타 또는 가혹행위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전체 37.1%로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계급별로 보면, 수경의 44%가 구타 및 가혹행위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경은 26.7%, 일경은 17.3%, 이경은 9.4%가 필요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계급이 높을 수록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구타·가혹 행위가 있어야 부대운용이 잘되며 선임대원의 말을 잘듣는다라는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를 부대별로 보면 전투경찰대는 32.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찰기동대는 36.1%, 방법순찰대는 34.5%로 나타났으며 역시 경찰기동대가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4) 인권보호를 악용한 부대원에 대한 조치정도

인권보호제도를 악용한 부대원에 대한 행정조치의 이행정도



<표3-73> 인권보호제도를 악용한 부대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의 이행정도

	철저히 조치됨	조치되는 편임	그저 그렇다	거의 조치되지 않음	전혀 조치되지 않음	합계
빈도	454	422	250	52	36	1214
비율	37.4	34.8	20.6	4.3	3.0	100.0

다음은 부대생활중에 인권보호적 분위기에 편성하여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나 교육을 수행하지 않는 등 인권보호제도를 악용하는 대원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적 조치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분석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그저그렇다가 20.6%, 거의조치가 되지않는다는 4.3%, 전혀조치가 이루어지지않는다는 3.0%로 전체적으로 행정적 조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이 전체 27.9%였다. 이를 부대별로 보면 26.9%, 경찰기동대는 25.4%, 방범순찰대는 30.1%로 방범순찰대가 가장 행정적 조치들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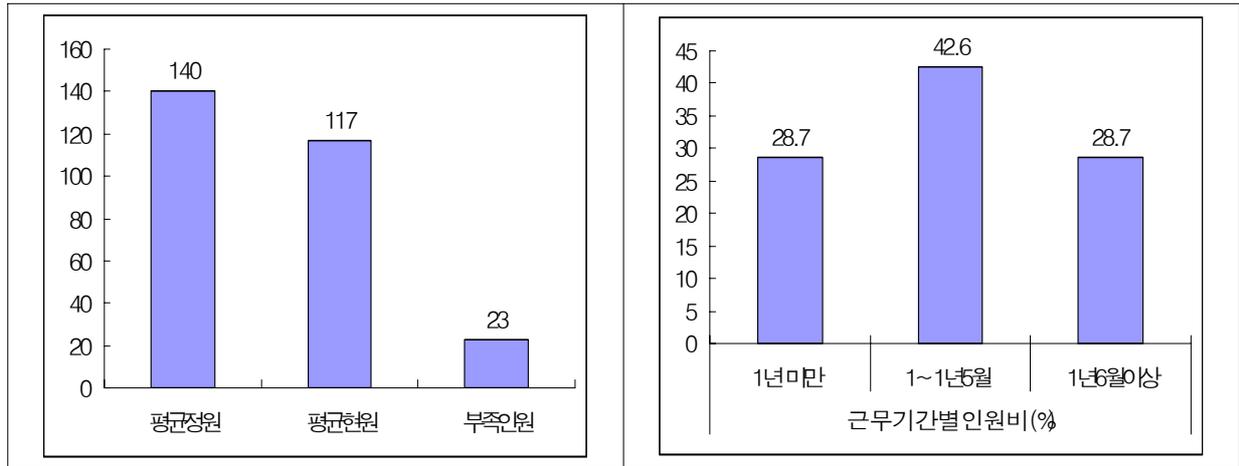
제3절 방문조사결과 및 분석

전·의경의 생활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인권적 관점에서의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방문조사의 대상은 전투경찰대, 기동경찰대, 방범순찰대로 선정하였다. 실제 조사는 연구자가 설문조사차 방문한 부대는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시설을 관찰하고 실측하는 등 직접조사를 하였고, 나머지 직접방문하지 못한 부대는 각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조사점검표를 해당부대에서 직접 작성하여 접수받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전경대는 17개부대, 기동대는 28개부대, 방순대는 26개부대 등 총 71개 중대를 조사하였다.

1. 부대별 인력운영실태

<표3-74> 부대별 인력운영실태

	전·의경						기간요원			
	평균정원	평균현원	평균부족인원	부족인원(%)			평균인원수(명)	평균근무기간(%)		
				10명이하	11~30명이하	31명이상		1년미만	1~1년5월이하	1년6월이상
평균	140	117	23	4.3(19%)	12.3(54%)	6.3(27%)	8.7	2.7(28.7%)	3.7(42.6%)	2.7(28.7%)
전경대	166	149	17	0(0%)	6(35%)	11(65%)	6	1(17%)	3(50%)	2(33%)
기동대	126	106	26	2(8%)	20(76%)	4(16%)	10	4(40%)	3(30%)	3(30%)
방순대	129	103	26	11(42%)	11(42%)	4(16%)	10	3(30%)	5(50%)	2(20%)



부대의 유형에 따라 전·의경 정원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투경찰대의 경우 평균 166명선이고, 기동경찰대는 126명이고 방범순찰대는 129명이었으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투경찰대는 정원대비 현재원이 평균 34명이 부족하였고, 기동대와 방순대는 19-20명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부대를 운용하고 있었다. 부족한 이유는 의경지원율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등 적시에 인원보충이 어렵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신입대원의 경우 정기적으로 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보충됨으로써 부대별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대원의 부족은 업무의 연속성에도 장애가 되지만 근무 및 휴식시간의 보장을 어렵게 하고, 휴가 및 외출외박 등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전·의경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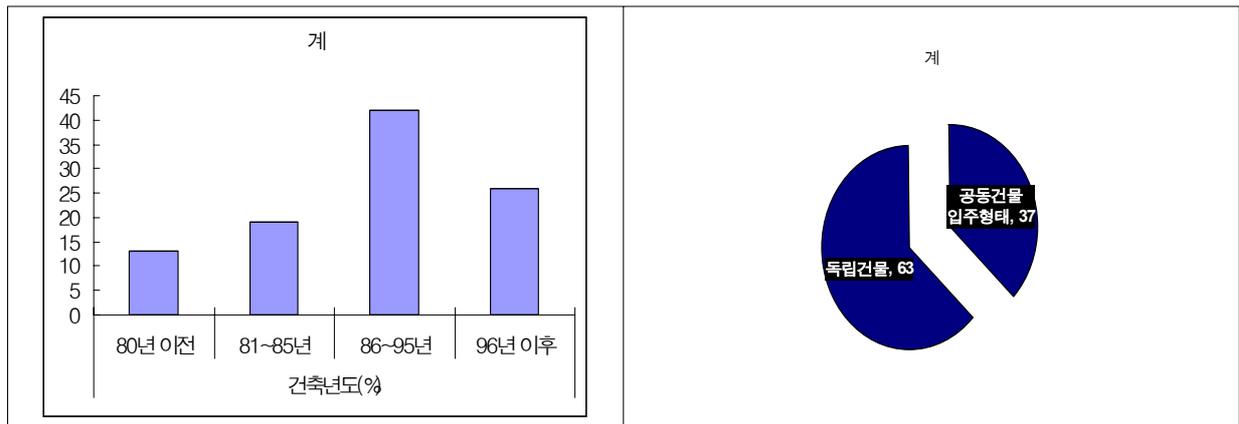
또한 전·의경의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간요원은 보통 1내지 2년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⁹⁵⁾, 실제 평균근무기간을 조사한바 1년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 복무 중에 있는 기간요원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경찰 정기인사기간인 1월과 7월에 한꺼번에 많은 기간요원의 전·출입으로 관심대원의 관리 등 부대관리에 허점을 노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2. 시설공간의 실태

<표3-75> 시설공간의 실태

	건축년도(%)					입주형태(%)		
	계	80년이전	81~85년	86~95년	96년이후	계	공동건물	독립건물
계(%)	69	9(13%)	13(19%)	29(42%)	18(26%)	71	26(37%)	45(63%)
전경대	16	0(%)	1(6%)	5(31%)	10(63%)	17	3(18%)	14(82%)
기동대	27	4(15%)	7(26%)	13(48%)	3(11%)	28	5(18%)	23(82%)
방순대	26	5(19%)	5(19%)	11(43%)	5(19%)	26	18(69%)	8(31%)

95)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11조



전·의경의 생활공간인 시설물의 건축년도와 입주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물의 건축년도를 보면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은 전체 22동이고 이중 전경대는 1동, 기동대 11동, 방순대 1동이 었다⁹⁶⁾. 실제 10년 미만의 비교적 양호한 건물은 전체 18동이고, 이중 전경대 10동, 기동대 3동, 방순대 5동에 불과하였다. 전·의경의 생활공간인 건물의 입주형태를 보면 경찰서 사무실공간과 같이 이용하는 형태는 총 26동이고, 이중 업무의 특성상 방순대가 18동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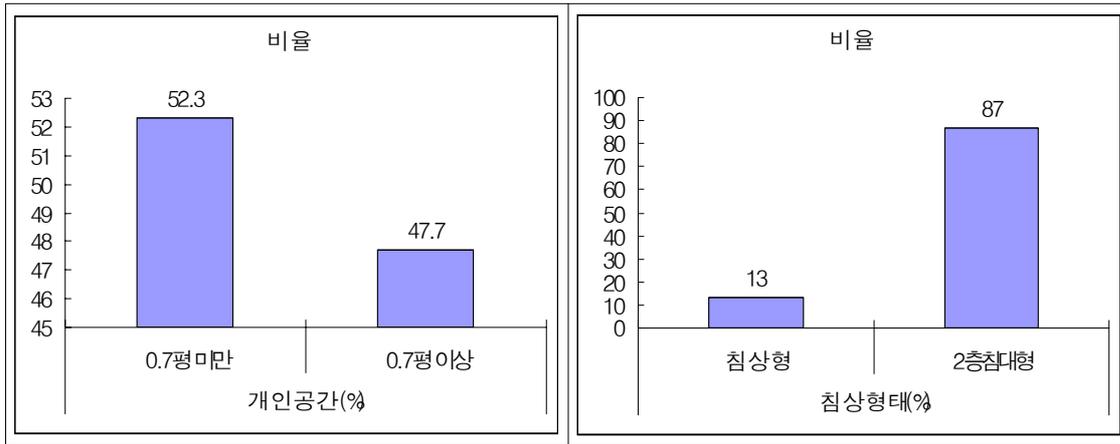
부대임무의 특성상 입주형태를 경찰서내 또는 독립건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전경대와 기동대의 경우 대부분 독립건물이 많으며, 방순대는 경찰서내가 많았다. 현지 방문조사의 결과 경찰서내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부대는 비교적 실내가 청결하였으나, 경찰서건물자체가 숙소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사무실용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방음, 조명, 내무실의 규모 등 취침시설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전·의경을 위한 외부활동 공간(축구장, 농구장 등)은 단순한 체력단련의 효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서는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 주차장 외에는 활동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3. 취침공간 실태

<표3-76> 취침공간 실태

	평균 내무실수	인원	넓이(평)	개인공간(%)		침상형태(%)	
				0.7평미만	0.7평 이상	침상형	2층침대형
평균/계	4	22	18	33(52.3%)	30(47.7%)	17(13%)	54(87%)
전경대	5	28	28	5(55%)	4(45%)	13(76%)	4(24%)
기동대	6	18	12	15(54%)	13(46%)	1(4%)	27(96%)
방순대	4	22	18	13(50%)	13(50%)	3(16%)	23(84%)

96) 부대 증설과정에서 건물수가 부족하여 사용하는 부대건물이라 해도 약 50년된 건물의 사용은 부대원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건물외에도 천장에서 비가 새는 곳도 있었으며, 건물이 낙후되어 냉·난방의 비효율적인 운영, 보수 공사를 하였으나 또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 등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많이 발견되었다.



내무시설은 다른 편의시설과 달리 취침을 하는 공간인 동시에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로서 취침의 안락함은 물론이고 사생활의 보장이 가능할 정도의 형태와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공간이다. 전·의경의 내무생활은 주로 내무반의 규모와 침상의 형태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전·의경의 생활공간인 내무실은 대부분 소대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경대의 경우 평균 내무반은 5개이며(제주도 제외⁹⁷⁾), 기동대는 6개, 방순대는 4개의 평균 내무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내무반 평균 평수는 전경대의 경우 28평, 기동대의 경우 12평, 방순대의 경우 18평이다. 방순대가 내무반 평균평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경찰서 내라는 업무 위주의 건물에 생활공간을 구성해야 하는 한계에서 온 것이며, 이는 단층보다는 2층 침대위주의 생활공간을 사용하는데 영향이 있다하겠다. 내무실의 크기에서 개인공간의 규모를 조사한바, 0.7평 미만인 부대가 전체 조사대상 내무반 중에서 33개로 52.3%를 차지하여 사적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개인공간의 부족은 단순히 비좁다는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오는 대인간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인갈등은 물론이고 심하면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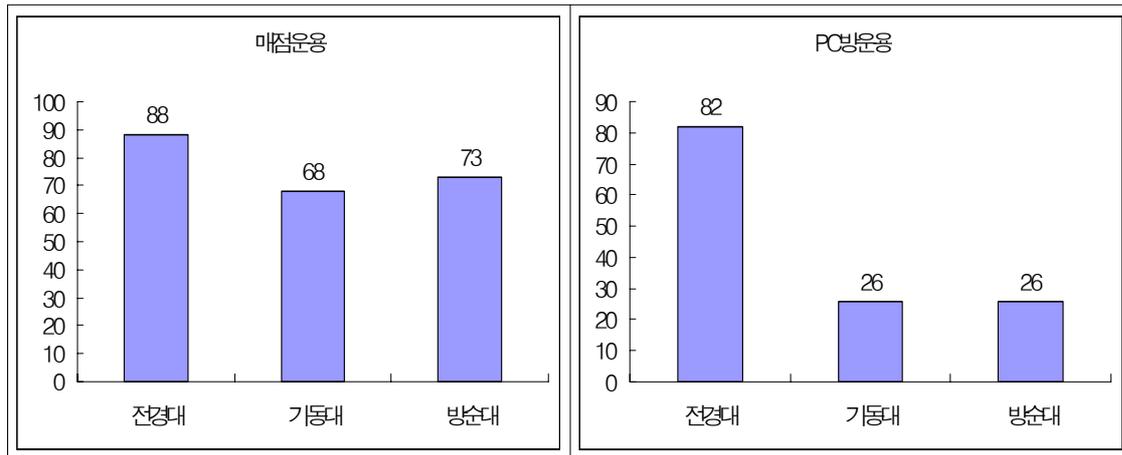
4. 편의·복지시설 실태

<표3-77> 편의·복지시설 실태

97) 제주도 전경대의 경우 해안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소대단위로 분리된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다.

98) 군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군사병의 보급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뿐아니라 소대단위침상형에서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점차 개선되어, 2008년에는 육군전체의 40%인 448개 대대에 침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침대가 보급되면 1인당 면적이 현행 침상형인 0.7평에서 2.0평으로 넓어진다 고 한다.(한겨레 2004. 9.14.)

	이발소(%)		매점(%)		면회실(%)		공부방(%)		PC방(%)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전경대	13 (76%)	4 (24%)	15 (88%)	2 (12%)	5 (29%)	12 (71%)	9 (53%)	8 (47%)	14 (82%)	3 (18%)
기동대	18 (64%)	10 (36%)	19 (68%)	9 (32%)	20 (71%)	8 (29%)	16 (57%)	12 (43%)	26 (93%)	2 (7%)
방순대	14 (54%)	12 (46%)	19 (73%)	7 (27%)	7 (27%)	19 (73%)	13 (50%)	13 (50%)	26 (100%)	0(0%)



편의 및 복지시설은 전·의경의 복무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다. 편의시설 중 이발소의 경우는 설치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대원이 자체적으로 이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의 미용학원 견습생이 자원봉사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특히 매월 이발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외출외박시에 외부 이발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매점의 경우 설치·운영되는 곳이 많았지만, 경찰서내의 건물에서 생활하는 부대의 경우 경찰서내의 매점이 대부분이었으며, 독립부대의 경우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대원의 경우 자체인원이 관리하는데, 운영상 가장 큰 애로점은 군과 같이 면세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소매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군 장병들이 받는 면세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면회실의 경우 전경대와 기동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였는데, 주말에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군과는 달리 항시 출동대기 중인 전·의경의 면회실은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매점과 휴게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⁹⁾ 공부방이 설치된 부대는 조사대상의 절반가량의 부대에서 운용하고 있었으며 주로 자유시간에 책을 읽거나 어학 및 자격증취득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평균 좌석수가 기동대 10석, 방순대 11석 등 시설의 규모가 협소하며 1좌석당 기동대의 경우 12.6명, 방순대의 경우 11.7명이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신세대 장병은 인터넷과 상당히 친숙한데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게임을 할 수 있는 PC시설의 경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대도 있었으며, 전경대는 전체 59대가 설치되어 평균 0.3인에 1대, 기동대의 경우 전체 96대가 설치되어 0.7인에 1대, 방순대의 경우 108대가 설치되어 0.8인에 1대 묶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⁰⁾ 특히 전·의경 부대에 설치된 PC방은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99) 본 자료의 경우 매점, 휴게실 병용의 면회실이 아닌 독립된 면회실의 수만 나타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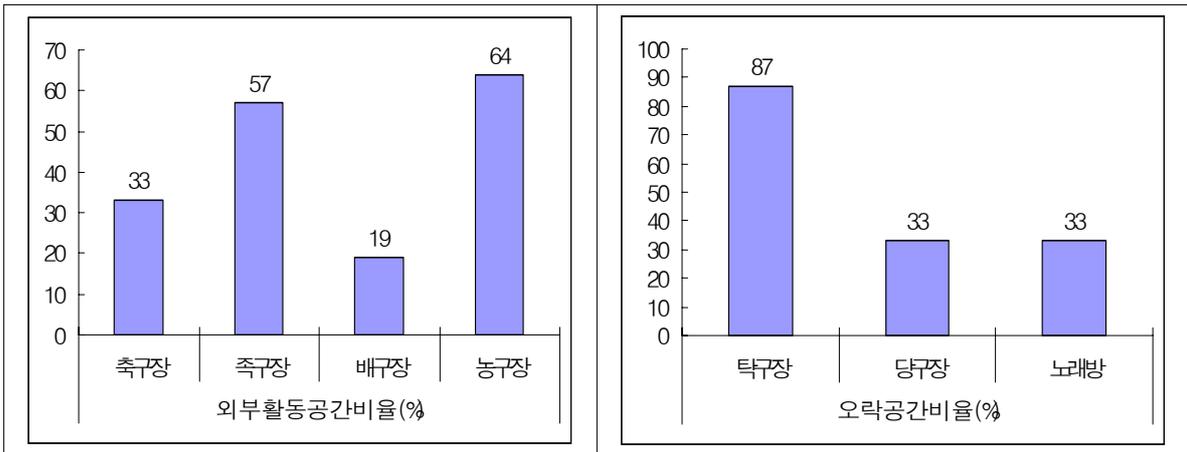
100) 특히, 부대 운영비중 일부를 전용하여 컴퓨터를 구입 한다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으며, 실제로 부대의 계급별 사용 요일을 보면 인터넷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않았다. 대부분의 부대가 부대 자체에서 중고컴퓨터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컴퓨터의 사양이 오래되었고, 인터넷이 연결된 PC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계급별 사용시간이 제한되어 간단한 이메일확인 정도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¹⁰¹⁾

5. 여가활용 공간실태

<표3-78> 여가활용 공간실태

	운동장(%)				오락시설(%)			휴게실(%)	
	축구장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당구장	노래방	유	무
계(%)	21(33%)	39(57%)	13(19%)	45(64%)	62(87%)	24(33%)	33(33%)	34(46%)	38(54%)
전경대 N=17	10(59%)	13(76%)	4(24%)	12(71%)	15(88%)	4(24%)	8(47%)	7(41%)	10(59%)
기동대 N=28	10(36%)	17(61%)	7(25%)	18(64%)	24(86%)	10(36%)	9(32%)	15(54%)	13(46%)
방순대 N=26	1(4%)	9(35%)	2(8%)	15(58%)	23(88%)	10(38%)	16(62%)	11(42%)	15(58%)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 중 하나가 운동시설로서 체력단련실은 전부대가 설치·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장과 같은 넓은 운동장은 전경대와 기동대와 같은 독립건물의 부대에 일부있었으며, 서울 보다는 지방에 주로 설치되어 있었다. 방순대가 넓은 운동장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경찰서 내라는 협소한 장소적 상황 때문이었으며, 농구장과 족구장과 같은 장소마저도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축구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도로 위에서 이용되어 아스팔트 내지, 콘크리트로 설치되어 있어서 부대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다.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은 개별 종목 별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겸용하는 곳이 많았다. 좁은 공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탁구장은 휴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급	수경	일·상경	수경	이경	수경	일·상경	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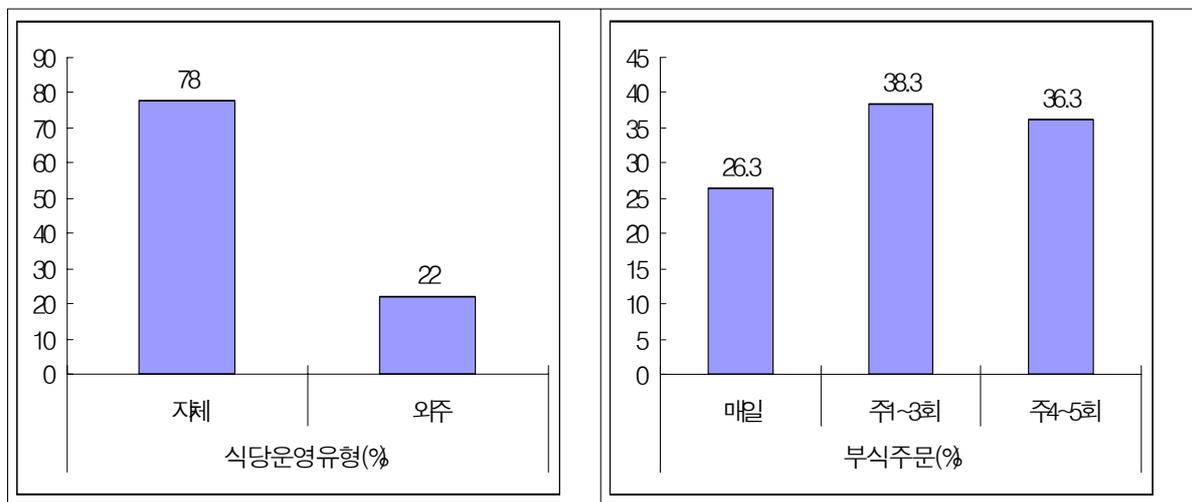
101) 제주청 산하의 한 전투경찰대에서는 매점에 유료PC(동전투입용)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계실에 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구장과 노래방 기기도 비록 적은 수이지만 설치되어 전·의경의 복지에 나름대로 노력하는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다. 휴게실의 경우 없는 부대도 상당히 있었고, 일부 부대의 경우 매점이나 면회실 등을 휴게실로 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6. 급식공간 및 운영실태

<표3-79> 급식공간 및 운영실태

	식당좌석수			식당운영유형(%)		정수기	부식주문(%)		
	좌석수	인원	1인당	자체	외주		매일	주1~3회	주4~5회
전경대	92	166	0.6	13(76%)	4(24%)	1.7개	5(30%)	4(24%)	8(46%)
기동대	126	126	1	25(89%)	3(11%)	1대	8(34%)	10(37%)	10(37%)
방순대	89	129	0.7	18(69%)	8(31%)	1.1대	4(15%)	14(54%)	8(26%)



전의경부대 대부분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좌석의 수를 보면 평균 102개로서 1인당 0.4개로서 식사를 위한 대기시간과 사용공간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의 취사의 형태는 대부분 자체 조리병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리를 담당하는 취사대원의 경우 건강하고 경험이 있는 자가 선발되는데¹⁰²⁾, 해당인원이 없는 경우 신입대원중 일부를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여 별도의 교육을 받아 취사대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외주업체에 급식을 맡기고 있는 경우는 전경대 4곳, 기동대 3곳, 방순대 8곳이 있었다. 전·의경이 일반 학교 또는 기업의 급식시설과 달리 잦은 출동으로 인하여 외주업체에 조리를 위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수기의 경우 1대에서 1.7대가 설치되어 부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정수기를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⁰³⁾ 부식주문의 경우 매일내지는 1-3일정도로 주문을 하여 비교적 신선한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단의 구성은 전·의경 대원과 기간요원들로 구성된 메뉴위원회를 중심으로 편성되는데, 3,800kcal 이상 되도록 편성되도록 하고 있다.¹⁰⁴⁾ 그러나 실질적으로 식단편성은 영양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영양을 고려한 편성이라기 보다는 대원이 선호하는 메뉴로 편성되고

102) 전투경찰순경등 관리규칙 제160조.

103) 한 부대에 많은 곳은 7대가 설치되어 있는곳도 있었으며, 정수기가 없는 부대의 경우 보리물로 대체하고 있다.

104)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54조 3항.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제4장 전·의경 인권상황의 진단과 정책적 제언

제1절 전·의경 인권상황의 진단

일반사회조직의 인권상황 진단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게재할 수 있듯이, 전·의경의 인권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일반조직과는 달리 더 많은 제약과 임무의 특수성을 띄는 전·의경조직이므로 당연한 느낌마저 든다. 대간첩작전의 일환인 해안/도서 지역의 경계경비나 다중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대처라는 특수한 임무의 수행에는 일반사회조직이 갖는 임무수행과는 분명 다른 특수성이 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의경에게는 일반사회조직원과는 다른 관리나 통제방식이 요구되고 행해지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나 관리방식은 엄격한 법치주의의 제약하에 있어야 하고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봐야 한다. 특수한 임무를 띄고 특수한 조직환경에 놓였다고 해도 전·의경은 분명 인간이고 국민의 한 사람임은 변함없다. 결국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보장을 받고 있는 지가 인권상황의 진단에 기본적 잣대가 될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구타나 가혹행위, 근무여건, 내무생활, 편의시설, 복지혜택, 부대관리, 인권교육 및 의식 차원에서 전·의경의 인권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1.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상존

구타 및 가혹행위는 대표적인 인권침해의 예임을 누구나 공감한다. 경찰당국의 입장에서도 구타나 가혹행위가 발생하여 대원이 자살하거나 탈영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곤혹스러워하며 각종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경찰청훈령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경찰청 예규 ‘전경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등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훈교육, 지휘감독강화, 대원관리철저, 화목한 부대분위기조성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일반지침을 시달하는가 하면 구타, 자살, 자해, 대민, 교통, 총기 및 안전 사고 등 유형별 사고예방지침도 시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나 시달들이 지켜지지 않는 데 있다. 아래에서는 본 조사결과 전·의경부대의 구타 및 가혹행위의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1) 그치지 않는 구타·가혹행위

전·의경 부대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빈발하며 그 피해또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즉, 부대 생활 중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전·의경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4%였다. 또한 구타를 당한 회수를 조사한 결과 14.3%인 169명의 경험자 중에서,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일에 1회’는 구타를 당한다는 응답자가 66명(5.6%)이었다. 정신적 가혹행위의 경우 응답자 1327명 중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일에 1회는 정신적 가혹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7.9%인 105명이었다. 육체적 가혹행위의 경우 응답자 1296명 중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일에 1회 당하는 경우는 5.6%인 72명이었다. 정신적 가혹행위와 육체적 가혹행위를 비교할 때 2.3%가량 정신적 가혹

행위가 많았는데, 이는 가혹행위는 주로 정신적으로 행하며 육체적 가혹행위는 구타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할 당시의 계급을 조사한 결과 이경이 전체 계급중 68.7%(전체 345명 중 237명)였다. 이는 신입대원 100일 특별 적응기간이라는 부대내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전입 후 3개월까지의 이경이 응답자의 47.5%인 164명으로 상당히 많았다. 다음은 일경으로서 83명당(24.0%), 상경이 20명(5.8%), 수경이 5명(1.4%)으로써 계급이 낮을수록 구타 및 가혹행위를 많이 당함을 알 수 있었다.

발생기간의 경우는 '일석점호나 일조점호'가 응답자 364명 중 46.7%인 170명으로 가장 많고, '시위진압 대기 중 혹은 출동전후'가 39.0%인 142명, '휴게시간이나 취침 중 혹은 심지어 식사전후'가 14.2%인 52명이었다. 구타에 이용되는 도구의 경우 '손/발 등 신체'가 응답자 296명 중 83.8%인 2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위진압용 도구'가 6.4%, '청소용도구와 부삽'이 각각 3.0%, 1.7%였다.

이러한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했을 때의 심정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폭행하고 싶었다'거나 '가해자를 죽이고 싶었다' 등 가해자에 대한 응징 내지 보복하려는 심정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복무이탈이나, 자살 및 자해의 심정도 조사되었다. 결국 구타나 가혹행위는 대원들의 복무이탈이나 자살 및 자해 등의 제2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사적 제재의 빈발

부대생활 중 부대원 상호간에 행해지는 집합행위, 지시행위, 얼차려/군기교육행위, 암기강요행위 등 사적 제재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사적 제재를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집합행위 16.6%, 지시행위 16.5%, 얼차려/군기교육행위 12.1%, 암기강요행위 17.0%를 각각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적 제재를 당한 회수를 조사한 결과, 집합행위의 경우 전체 242명 중 1주에 1회가 가장 많은 31.8%인 77명이었고, 거의 매일이 17.8%인 43명이었다. 또한 지시행위도 전체 242명 중 거의 매일이 47.9%인 116명이며 1주에 1회가 21.48%인 52명이었다. 얼차려/군기교육행위도 전체 183명 중 1주에 1회가 28.4%인 52명, 거의 매일이 11.5%인 21명이며, 암기강요행위 또한 231명 중 거의 매일이 21.2%인 49명, 1주에 1회가 18.2%인 42명이었다. 즉 사적 제재를 당하는 경우는 그 회수가 거의 매일이거나 적어도 1주에 한번이상인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 성적 인권침해가 여전

성적 괴롭힘이 여전하며 대원들의 인식 또한 성적 접촉에 따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무더웠다는 것이다. 부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성간 성적 접촉행위에 대하여 '부대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5%인 114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성적 비유 등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등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45.1%인 539명이었고, 부정하지 않는 21.8%까지 합하면 전체 66.9%가 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성적 비유 등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나 성관련교육 및 인식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강제적이지 않지만 성기를 만지거나 몸을 어루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거부감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3.9%인 409명이 '거부감이 들지 않거나 전혀 들지 않는다'하였다. 또한 실제로 '신체비하 내지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5%였고, '성경험이나 애인소개 등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4%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인 접촉에 따른 인권침해가 실존한다는 반증이며, 대원들의 성적 관련 인권의식을 유추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 보여진다. 따라서 실제 발생하는 성적 접촉유형을 보면 포용이 4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만지는 유형으로 31.9%였으며, 성기만지기는 12명으로 8.9%가 있었고, 심지어 자위행위를 강요당한 경우도 3명이 있었다.

이러한 성적 접촉 내지 괴롭힘이 존재할 때, 단순히 '수치심을 느낀다'가 126명으로 40%정도지만,

‘부대생활에 지장을 많이 느낀다’(12.4%)거나 심지어 ‘자살이나 복무이탈을 시도’(5.1%)하거나, ‘주변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한 경험’(2.5%) 등 행동상의 부적응을 경험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므로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이다.

4) 금전각출의 강요

부대의 상급자로부터 금전각출을 강요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금전각출을 당한다는 경우는 4.3%인 55명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여겨진다. 금전각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부대회식시’가 가장 많은 43.5%, ‘선임병 전역시’가 21.6%, ‘외근 중 휴게시설을 이용하거나 식사비용을 지급할 경우’가 21.1%에 달했다. 또한 ‘선임병의 2주년 행사시’ 등 기타의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각출행위에 따라 부대에서 지급받는 봉급 및 수당을 제외하고 부모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개인사비의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즉, 개인사비로 15만 원 이상 사용한다는 경우도 조사대원 중 6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찰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전·의경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집합/지시/열차려/군기교육/암기강요 등 사적 제재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성적 괴롭힘도 상존하며 대원들의 인식 또한 성적 접촉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기케 한다. 뿐만 아니라 상급자로부터의 금전각출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육체적/정신적/물질적 차원의 인권침해가 현존함을 알 수 있었다.

2. 열악한 근무여건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입비준시 최우선조건으로 하는 8개 기본협약사항 중 전쟁시 강제노동을 제외하고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병역법에 의한 공익요원,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한 전투경찰을 들고 있다.¹⁰⁵⁾ 즉 전·의경은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병역의무이외의 치안행정에 강제 동원되는 ‘강제노동자’라는 입장이다. 강제노동이라는 오명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준하는 근로조건과 임금의 지급이 있어야 하지만, 군인신분에 준하는 보수만이 지급되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당 40시간, 1일당 8시간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4시간 당 30분 이상, 8시간 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전·의경의 경우는 야간 불침번을 제외하면 공휴일과 1일 8시간복무가 보장되는 군인보다도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있다. 이하에서는 근무여건과 관련된 복무생활 불만족 요인, 하루평균 근무/휴게/수면시간과 그 만족도, 야간근무회수, 출동회수와 출동에 따른 부상회수, 부상 후 치료 및 휴식보장, 부대정비의 날의 보장정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과도한 근무시간

전·의경은 전체적으로 과도한 근무시간과 부족한 휴게·수면시간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근무시간의 경우, 하루평균 7-8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1108명중 50.3%인 557명이지만 11-12시간을 근무한다는 응답도 24.9% 276명이었고, 심지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원도 1.1%인 15명이나 되었다. 즉 9시간 이상 과다 근무하는 대원들이 조사대원 1108명 중 35% 3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무시간은 똑같이 의무 복무하는 군과 비교할 때 과다함을 알 수 있었다.

105) 허창영, “위헌논란, 강제노동 전·의경제 폐지해야”, 제4차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토론집, 2005, pp. 66-67.

휴게시간의 경우, 휴게 시간이 '전혀 없다'가 1.6%(21명), '1시간 미만'인 경우가 11.8%(151명)이고 '1-2시간'인 경우가 28.4%(364명)으로 총 응답자 1282명 중에 41.8% 인 536명이 2시간 미만의 휴게/자유시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면시간의 경우,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도 6.3%(79명)이고 5-7시간의 수면시간을 갖는 경우가 조사대상 1254명 중 54.7%(68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전의경의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무/휴게/수면시간들에 대한 만족정도로,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가 각각 62명(4.7%), 143명(10.9%),

2) 야간근무와 잦은 출동

전·의경 근무의 특성 상 야간근무나 집회/시위 진압 등을 위한 출동 및 출동에 따른 부상 및 그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우선 '한 달 평균 야간근무회수'는 응답자 1274명 중 거의 대부분(83.2%인 1060명)이 3회 이상이었으며 15회 이상도 21.5%인 274명이나 되었다. 한편 '한 달 평균출동회수'도 3회 미만인 경우는 11.1%에 그쳤고 4일에 1회 꼴인 7회 이상이 대부분인 68%였고 심지어 2일에 1회 이상인 15회 이상도 19.1%나 되었다. 출동 시에는 야간근무가 동반되며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출동 후 부상당한 경우가 전체 1277명 중 19.9%인 257명이었는데, 부상 후 치료 또는 휴식보장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거나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총 응답자 1085명 중 18.1%인 197명이었다.

3) 과중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

근무여건의 열악성은 우선 복무생활불만족 원인을 조사하면 쉽게 파악된다고 하겠다. 전체 943명의 응답자 중에서 복무생활불만족 원인으로 '집회/시위의 진압 등 업무가 힘들기 때문'이 47.4% 447명으로 가장 많고, '휴게 및 자유시간의 부족'이 13.1% 175명으로 다음이며, '사역의 과다'가 7.4% 70명이었다. 즉 응답자의 약 68%가량이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불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조사 대상부대들의 현재인원은 정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었다.(전경대 평균 34명 부족, 기동대와 방순대 19-20명 정도 부족)

이러한 대원의 부족은 업무의 연속성에도 장애가 되지만 근무 및 휴식시간의 보장을 어렵게 하고, 휴가 및 외출외박 등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전·의경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결국 과다한 근무시간 및 예측할 수 없는 출동 등의 과다 및 부상의 위험성에 따른 부상과 그 치료 및 휴식보장의 불충분 등이 전·의경의 근무관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3. 내무생활여건 불비

내무생활이란 중대단위 이상 집결부대에서는 소대단위로 편성되고, 본부 및 기타 치안부서 등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부서인원을 통합하여 서/대별로 편성하는 내무반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의미한다.¹⁰⁶⁾

내무생활여건에는 취침 시 침상 선택이나 내무반 청소의 시행실태, 사생활의 보장 등에서부터 내무반 등 내부생활공간과 훈련장 등 외부생활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내무생활여건들이 보장정도에 따라 전·의경의 인권보호실태 또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선임대원과 후임대원이 공존함에 따른 서열주의, 열외 등 업무전가, 우선선택권, 각종 비공식조직의 존재 등을 분석한다. 또한 내무생활공간인 시설공간의 실태와 외부활동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

106)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206조.

로 논의하겠다.

1) 계급에 따른 서열주의

선임과 후임이 공존함에서 오는 각종 현상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내무생활 중 취침 시 침상의 선택에 대해서는 선임병의 임의대로 시행하는 경우가 14.7%였고, 내무반 청소의 경우도 계급별로 담당구역을 정하여 한다는 응답이 전체 43.2%였다. 내무반청소와 관련하여 바닥조나 침상조, 다리미조 등 비공식조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청소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계급별 서열주의에 따라 선임병의 열외나 편리한 업무우선선택의 기회보장과 후임병에 대한 업무전가 등 비인권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내무반의 사생활보장정도를 조사한 결과 32.8%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불만이거나 그저그렇다’고 하여 사생활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더구나 부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급품을 선임대원이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후임대원이나 신임대원에게는 자신들이 사용하거나 오래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기타 불만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내무생활공간의 열악

전·의경의 내무생활을 위한 시설공간과 외부활동공간 등이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 전·의경의 내무생활공간인 시설공간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시설물의 건축년도를 보면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전체 22동이고 이중 전경대는 1동, 기동대 11동, 방순대 10동이었다. 또한 건물의 입주형태를 보면 경찰서 사무실공간과 같이 이용하는 형태가 총 26동이고, 이중 업무의 특성상 방순대가 18동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독립건물이 아닌 경우 건물자체가 숙소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사무실용도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방음, 조명, 내무실의 규모 등 취침시설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전·의경을 위한 외부활동 생활공간(훈련장, 축구장, 농구장 등)은 단순한 체력단련의 효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피로 등을 해소할 소위 ‘짧음의 분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부대들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주차장 외에는 활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그나마 비좁은 장소를 외부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무반은 다른 편의시설과 달리 취침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로서 취침의 안락함은 물론이고 사생활의 보장이 가능할 정도의 형태와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무반 평균 평수를 조사한 결과, 전경대의 경우 4개 내무반에 각 28평, 기동대의 경우 6개 내무반에 각 12평, 방순대의 경우 4개 내무반에 각 18평이다. 즉 방순대가 상대적으로 내무반 평균평수가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서 내라는 업무 위주의 건물에 생활공간을 구성해야 하는 한계에서 온 것이며, 이는 주로 2층 침대위주의 생활공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내무반 개인공간의 규모를 조사한 바, 0.7평 미만인 부대가 전체 조사대상 내무반 중에서 33개로 52.3%를 차지하여 사적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인공간의 부족은 단순히 ‘비좁다’는 의미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오는 대인간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인갈등은 물론이고 심하면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편의 및 복지 분야의 미흡

1) 식사 및 보급품관련 문제점

전·의경의 편의 및 복지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은 무수히 많지만, 우선 식당의 운영, 식단의 구성 절

차와 만족 수준, 식당의 청결상태들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부대들이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데, 건강하고 경험이 있는 취사대원을 선발하고¹⁰⁷⁾, 해당인원이 없는 경우 신입대원 중 일부를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여 별도의 교육을 받아 취사대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외주업체에 급식을 맡기고 있는 경우는 전경대 4곳, 기동대 3곳, 방순대 8곳으로 소수에 불과하였다. 전·의경이 일반 학교 또는 기업의 급식시설과 달리 잦은 출동으로 인하여 외주업체에 조리를 위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식단의 구성은 전·의경 대원과 기간요원들로 구성된 메뉴위원회를 중심으로 편성되는데, 3,800kcal 이상 되도록 편성되도록 하고 있다.¹⁰⁸⁾ 그러나 실질적으로 식단편성은 영양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영양을 고려한 편성이라기보다는 대원이 선호하는 메뉴로 편성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전문가에 의해 식단이 구성되지 못함으로써 영양소의 고른 섭취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식당의 청결상태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32.3%로 많은 대원들이 식당의 청결상태를 지적하였다.

부대에서 지급되는 속옷, 근무복, 단화, 양말, 체육복, 운동화, 칫솔/치약 등 생활필수품의 수량과 품질에 대한 만족정도를 분석한 결과 수량이나 품질면에서 그저 그렇거나 불만인 경우가 대략 25.0%정도로 네 명중 1명은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품의 수량과 질에서 많은 향상이 있지만, 새것에 대한 선호심리에 따라 신입대원이 후임대원의 보급품을 빼앗는 경우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의복류를 공동 세탁하기 때문에 세탁과정에서 분실되고 선임병이 가져간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도 어쩔 수 없는 경우 등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세탁이나 계급별로 내무생활을 하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종교활동보장의 미흡

기동대 등 경찰기관은 목사·승려·신부 등을 위촉하여(경목·경승·경신으로) 소속경찰관의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사업과 신앙적 교화사업 및 경찰행사시 필요한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⁰⁹⁾ 그리고 경찰기관장은 경목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즉 경목사무실은 '경목실', 경승사무실은 '경승실', 경신사무실은 '경신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목 또는 경승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을 소수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실정이다.¹¹⁰⁾ 또한 경목 등의 위촉을 임의사항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실제 이 조사에서도 부대생활 중에 종교의 자유로운 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그저 그렇다'가 21.4%, '잘되고 있지않다'가 12%, '전혀 보장되고 있지않다'가 9.1%로 전체 42.5%가 종교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3) 외출/외박/휴가관련 문제점

외출/외박/휴가 등의 원칙적 시행은 대원들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편의제공이라 할 수 있다. 외출/외박/휴가 등이 원칙적으로 시행되고, 이 시기에 공적인 임무를 수행케하지 않으며, 귀대 시 물품반입을 강요하지 않는 것들이 대원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출/외박/휴가 등이 원칙적으로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응답자 1308명 중 부정적인 반응이 19.5%인 255명이었다. 또한 외출/외박/휴가 시 공적 업무를 수행한 경우나 귀대 시 물품을 반입하도록 강요받은 경우는 많지는

107) 전투경찰순경등 관리규칙 제160조.

108)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54조 3항.

109) 경찰위촉 목사·승려·신부운영규칙 참조.

110) 경목 등의 정원은 1. 경찰청 4명 이하, 2. 시도지방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4명 이하, 3. 경찰서, 기동대 5명 이하 등이다(경찰위촉 목사·승려·신부운영규칙 제4조).

않지만 각각 3.1%(응답자 1296명 중 41명), 5.9%(응답자 1299명 중 79명)가 존재하였다.

4) 이발소·매점·면회실·공부방·pc방관련 문제점

이발소, 매점, 면회실, 공부방, pc방 등은 전·의경의 복무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다. 이번 조사결과 조사 대상 전·의경 부대들의 편의시설 중 이발소가 설치된 곳은 상대적으로 많았다.(전경대 17곳 중 13곳, 기동대 28곳 중 18곳, 방순대 26곳 중 14곳) 하지만, 소위 ‘문관(부대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고, 대원들 자체적으로 이발하거나 지역 미용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거나 혹은 별도로 책정된 이발비로 외출/외박시에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이발기술이 전문한 대원들을 활용하거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한창 외모에 신경 쓸 신세대 대원임을 감안할 때, 보다 개선된 이발시행계획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매점의 경우는 공동건물은 주로 경찰서내의 매점을 이용하지만 독립건물은 자체대원을 배치해야 하므로 상시 운영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운영상 가장 큰 애로점은 군과 같이 면세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소매가격으로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군 장병들이 받는 면세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면회는 일과시간 내에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 면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한다.¹¹¹⁾ 즉 원칙적으로 면회실의 설치는 의무사항인 것이다. 그런데, 조사결과 전경대의 71%(17곳 중 12곳), 방순대의 73%(26곳 중 19곳)가 면회실이 없었다. 면회제도는 내무생활을 하는 대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때, 전 부대의 면회실설치 및 제도보장이 급선무라 하겠다.

공부방의 경우 설치된 부대는 조사대상의 절반가량으로 주로 자유시간에 책을 읽거나 어학 및 자격증취득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평균좌석수가 기동대 10석, 방순대 11석 등 시설의 규모가 협소하여 1좌석 당 기동대의 경우 12.6명, 방순대의 경우 11.7명이 이용해야 하였다. 결국 형식적으로 공부방을 설치하였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이용이 극히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신세대 장병은 인터넷과 상당히 친숙한데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게임을 할 수 있는 PC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대도 있어 문제였다. 전경대는 전체 59대가 설치되어 평균 0.3인에 1대, 기동대의 경우 전체 96대가 설치되어 0.7인에 1대, 방순대의 경우 108대가 설치되어 0.8인에 1대 꼴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의경 부대에 설치된 PC방은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PC방을 운영하는 부대도 대부분 부대 자체에서 중고컴퓨터를 확보하여 운영하므로 컴퓨터의 사양이 오래되었고, 인터넷이 연결된 PC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결국 계급별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간단한 이메일확인 정도 외에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5. 형식적 부대관리

1) 면담·상담기회의 부족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에 의하면 관심요구 전·의경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신상면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1차와 2차 감독자는 월 2회, 3차 감독자는 월 1회 신상면담을 원칙으로 하고 신임·전입대원은 전입 즉시 중대장이 면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나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의경의 부대생활 중 애로사항들에 대해 부대차원에서 적절히 조치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가 각각 19명(1.5%), 76명(5.8%), 252명(19.3%)으로 총 26.6%(347

111)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97조 참조.

명)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속상관과 원하는 시기에 면담이나 상담이 가능한지를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12.2%(159명)였다. 그리고 평균 면담상담회수도 '4개월 이상에 1회'인 경우가 응답자 1282명 중 12.0%인 153명이었고, 심지어 '전혀 없었다'는 응답도 2.0%(25명)였다. 결국 응답자 1303명 중 12.2%인 159명은 원하는 시기에 직속상관과 면담이나 상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집합행위, 지시행위, 열차려/군기교육행위, 암기강요행위 등 선임대원들로부터 사적 제재를 당했을 경우 분대장, 소대장 등 직속상관과 상담하는 경우는 응답자 565명 중 26%인 147명에 불과하고 71.3%인 403명이 동기나 친구, 가족/친지와 상담하였다. 또한 사적 제재가 발생했을 때의 직속상관에게 보고한 경우는 응답자 319명 중 7.83%인 25명에 불과하였고, '못 본척 참았다'는 경우가 63.9%인 204명, 친구나 동기에게 알린 경우가 22.25%인 71명으로, 사적 제재가 발생해도 대부분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타 및 가혹행위자에 대한 미온적 처리

구타나 가혹행위의 경우 우선 그 행위자가 문제이지만 행위자에 대한 불충분한 처리도 문제이다. 즉 경찰청에서 제시한 구타 및 가혹행위 건수와 행위자의 처리현황을 보면 구속되어 형사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군인의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자들 대부분이 형사 처벌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즉 구타나 가혹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부대차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 중 25.6%인 85명은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대원들 대부분은 즉 약86%가량은 구타나 가혹행위를 목격했을 때에도 '못 본 척 참았거나'(304명 중 가장 많은 65.5%로써 199명임), '친구나 동기 또는 부모친지에게 알렸지'(20.4%인 62명), 소원수리 하거나 직속상관에 보고한 경우는 11.8%인 36명에 불과하였다.

3) 기간요원의 잦은 교체

전·의경조직은 다른 경찰조직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즉 내무생활을 하는 전·의경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리·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간요원들의 잦은 교체는 관심대원을 비롯한 많은 대원들의 관리·운영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부기간요원은 3년, 비간부기간요원은 2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대장을 제외한 기타간부와 비간부는 전원교체를 금지시키고 그 교체 시기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¹¹²⁾

하지만 실제 이 조사결과 '1년 미만'의 짧은 복무기간을 갖는 기간요원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경찰 정기인사기간인 1월과 7월에 한꺼번에 많은 기간요원의 전·출입이 발생하였다. 즉 과중한 업무량과 대원의 부족 및 잦은 기간요원의 교체들은 인권교육은 물론 전반적인 인권침해적 상황을 적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형식적 부대관리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6. 미흡한 인권의식 및 태도

전·의경의 인권의식 및 태도에 따른 문제점은 '구타나 가혹행위의 발생원인', '구타나 가혹행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욕설과 폭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타나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인권존중의 부대분위기' 및 '인권교육의 실태' 등을 조사함으로써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구타나 가혹행위의 발생원인으로 '맞아야 말을 잘 듣는다는 선임대원의 인식'과 '특별한 이유 없이' 등이 지적된 것과 심지어 '구타나 가혹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대원들이 21명이나 조

112)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1조, 제12조 참조.

사되었다. 또한 정신적 가혹행위의 수단이며 구타나 육체적 가혹행위에 동반되는 ‘욕설이나 폭언’의 경우도 필요성을 어느 정도 긍정하거나 확신하는 경우가 응답자 1299명 중 43.0%인 558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짐작컨대 전·의경의 인권의식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편 구타나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의 40%인 177명이 전·의경들의 인권의식 미흡을 지적한 것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전·의경들이 생활하는 부대분위기가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인지를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응답이 21.8%로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전·의경들의 인권의식 부재의 원인은 인권교육의 불충분내지 형식적인 교육에 있다고 본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부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경우가 응답자의 19.1%였으며, 6개월에 1회 혹은 1년에 1회 교육받는 경우가 16.0%였다. 결국 응답자 중 35.1%는 6개월 이상에 1회나 전혀 인권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권교육의 부재한 현실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중대 단위에 경위급이상 간부를 정훈관으로 지정하여 대원 정신교육과 상담요원으로 활용하는 정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훈관들이 전문적인 인권교육이나 상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2절 정책적 제언

1. 내무실 등 생활공간의 개선

1) 취지

전·의경 시설물의 건축연도의 경우 20년 이상 전체 조사부대 110개 중에서 37곳인 34%에 달할 만큼 노후화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천시 비가 새고, 냉·난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명과 소음 등 취침 및 생활시설로서는 부적당한 곳이 많은 실정이다. 내무반 공간을 보면 40여명 이상의 대원이 한 내무반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1인당 개인공간이 0.7평 미만인 부대가 52.3%로서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생활공간보다는 수용형 공간으로서 사생활 보장 등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같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군대의 경우 “내무반”이라는 명칭을 “생활관”으로 변경하고, 내무생활을 “통제형”에서 “자율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¹¹³⁾ 소대 규모의 ‘수용형 내무반’에서 분대 규모의 ‘주거형 내무반’으로, 기존에 사병들이 자는 침상형에서 별도의 침대와 탁자 등을 갖춘 공간으로 바꾸고 사병이 생활하는 공간도 현재 0.8평에서 2.0평으로 넓혀 장병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바 전·의경의 경우에도 그러한 정책이 적극 도입 되어야 할 것이다.

2) 노후시설의 전면적인 신·개축

기존 노후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노후건물은 신축을 하고 기존건물도 리모델링을 통하여 전·의경의 주거 및 생활공간으로 개축이 필요하다. 신·개축시 내무반을 안락한 생활공간화하기 위해 소음·조도·환기·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113) “선진 병영문화 VISION”, 2005년 10월 27일, 병영문화 개선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의경의 생활동선을 고려하여 휴게실, 운동시설, PC 방 등의 편의·복지시설 등이 한 건물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3) 내무실의 소단위화와 ‘침대형’으로 개선

내무반의 구성인원은 7-8명 내외의 소단위로 충분한 개인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세대 대원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침대형’으로 설치하는 등 내무반 구조를 변경하여 쾌적한 환경의 생활공간과 개인 사생활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무실의 개인공간은 최소한 1인당 2.0평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내무실의 개인공간에는 침대는 물론이고 책상, 옷장 등 개인사물함과 간단한 독서 등이 가능하도록 세트화 하는 등 신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가 되도록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전·의경의 복지혜택의 현실화

1) 취지

신세대 장병들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의 불비로 PC 시설의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대도 있었고, 설치되어 있는 부대 또한 인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써 계급별로 요일을 정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병들에게 인터넷과의 단절로 인한 정보격차를 줄여줌으로써 군과 사회의 단절감을 해소 및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는 4,730원으로 일반인의 한끼 식대도 안되는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 더구나 소규모로 운영되는 전·의경 부대의 메뉴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영양사의 계획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식단은 부대원들의 취향 위주로 임의로 작성되고 있어 ‘1인 1일 3,800kcal 이상의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¹¹⁴⁾’라는 규정을 준수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있다.

전·의경에 지급되는 월급여의 경우 수경 34,000원, 상경 30,700원, 일경 27,800원, 이경 25,600원을 받고 있으나, 사회와 자주 접하는 만큼 돈을 쓸 일이 많아 5-15만원 정도를 집에서 사비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있을 정도의 급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전·의경의 경우 부대시설내에 면세점이 운용되지 않고 있어 생활필수품 등의 이용을 위한 매점 운영은 도심의 마트에서 구매하여 판매하는 소매점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면세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경우 식단은 대량구매로 비용절감을 하고 있으며, 복지매장의 이용으로 면세혜택을 보고 있어 비슷한 급여를 받는 전·의경 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하에 근무하고 있다. 군의 경우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학점은행제도 등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의경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¹¹⁵⁾

2) PC방 설치

114)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54조 본문

115) “선진 병영문화 VISION”, 2005년 10월 27일, 병영문화 개선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이외에도 인터넷 PC를 활용한 외국어 e-러닝 학습체계구축과, 어학전담 교관제 운영, 어학 동아리, 영어내무반 운영 등 「3차원 Blended Learning System」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와 협약하여 영어마을 우수 프로그램과 콘텐츠 지원을 위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PC방의 설치는 군복무로 인한 사회의 단절감 해소 및 가족, 친구 등과의 메일교환과 화상 통화로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군의 경우 ‘사이버 지식 정보방’ 이라하여 중대단위 150명을 기준으로 PC16대를 설치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용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전·의경 부대의 경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PC방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PC방 운용 관련 예산확보를 통해 인터넷을 활용할 있는 컴퓨터장비의 설치 및 상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3) 영양사 배치 및 식비와 급여의 대폭 인상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전·의경 부대의 경우 중대별 영양사의 배치하거나 지방경찰청별로 배치하여 전·의경의 영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영양사를 통하여 메뉴를 작성하고 주기적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식비의 경우에도 현재 1끼당 1,405원에서 최소 2,500원 이상 정도로 인상하여 전반적인 급식의 질을 향상 해야 한다.

지금까지 군복무라는 이유로 값싼 비용으로 전·의경을 치안유지에 동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수경기준 월 44,200원을 근로자의 최저임금인 월 496,000원으로¹¹⁶⁾ 대폭 인상되어야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월급여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¹¹⁷⁾

4) 생활필수품의 면세혜택 부여

전·의경들에게도 군대처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매장의 설치가 필요하다. 군의 경우 복지근무지원단을 중심으로 면세품 관련 업무 등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에서는 전·의경들의 면세품 관련 업무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는 없다. 단독으로 면세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면 군(軍)과의 계약을 통해 육군 복지근무지원단을 통하여 전·의경 부대에 면세물품을 수급 받아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5) 자격증과 학점취득 등 자기개발 방안강구

부대 생활 중에 개인 시간을 보장하여 각종 자격증 취득과 학점은행제도를 도입하여 군복무로 인한 사회와의 격차를 해소함과 아울러, 대재 이상의 학력자들이 91.6%임을 감안해 볼 때 사이버 교육을 통해 전·의경 업무와 대학의 관련이 있는 과목의 경우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전 대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인터넷 교육프로그램(e-러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여건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이버/방송통신대 강좌, 대학의 온라인강좌 수강허용, 학점은행제 방식으로 소속 경찰관서의 교육훈련 및 인근대학(교)나 전문교육기관의 수강과목 대학 학점 인정을 들 수 있다. 또한 전·의경이 복무 중 습득한 전문기술에 대해 사회에서 활용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각종 전문경력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공인을 확보하고 사회진출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어야 한다. 먼저 간부나

116) 노동부 고시 제2005-18에 의거 시간당 3,100원, 주40시간을 기준으로 1일 24,800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117) 현재 일반 사병의 월 급여는 현재 병장 계급을 기준으로 4만4200원이며 2006년에는 6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2007년에는 8만원으로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지휘관의 의식전환교육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교수 등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가칭 ‘가치관 연구 센터’를 설립하여 대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킨다면 전·의경 복지혜택을 기본으로 인권이 함양된다고 본다.

3. 근무 및 휴식의 철저한 보장 : 주 40시간 · 교대근무제의 시행

1) 취지

현재 전·의경의 근무/휴게/수면시간 및 휴무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규화된 바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군인/군무원에 준하여 혹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생각한다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그 준거 규정으로 볼 수 있다.¹¹⁸⁾ 하지만, 내무생활이 강제된 전·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근무/휴게/수면시간 및 휴무일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

이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하루 평균 ‘11-12시간’을 근무한다는 응답이 24.9%, 심지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원도 1.1%나 되었다. ‘9시간 이상’ 과다 근무하는 대원들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원 1,108명 중 35%로 나타났다. 휴게시간의 경우, 총 응답자 1,282명 중에 41.8% 인 536명이 ‘2시간미만’의 휴게/자유시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면시간의 경우,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도 6.3%이고 5-7시간의 수면시간을 갖는 경우가 조사대상 1,254명 중 54.7%(6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과다한 근무시간과 휴게 및 수면시간의 부족현상은 똑같이 의무 복무하는 군과 비교할 때도 과다하다고 하겠다.

특히 군인의 경우 일요일은 물론 토요일 휴무제가 정착된데 반해 전·의경은 1주일에 1일 ‘부대정비의 날’이 휴무로 주어지지만 이마저도 출동 등의 이유로 연기되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조사결과 전·의경의 복무생활불만족요인으로 업무과다 및 휴게시간의 부족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근무시간을 줄여주고 충분한 휴식과 자유시간의 보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주40시간 · 교대근무제의 실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전·의경을 국가공무원법상 군인/군무원에 준하여 혹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생각한다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출동시기나 규모 등을 예상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특성상 명확한 근무시간이나 교대시간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발생한다. 사실상 전·의경을 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시간을 부여하지는 않는 현실이다. 철야근무는 물론 1주일에 하루 ‘부대정비의 날’로 휴무케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인 것이다. 특히 유사하게 의무복무에 종사는 군인의 경우 토요일 휴무까지 보장하고 1일 8시간 근무제가 정착된 것과 비교할 때도 전·의경의 열악한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주40시간 근무제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안은 이미 경찰청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우선 시위규모와 빈도, 발생시기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의경으로 하여금 경비경찰업무를 계속하게 할 것이라면 부족한 대원들의

118)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충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위 등 대원들의 출동이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정인원만 출동시키고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공휴일/주말 등을 보장하거나 당시 출동할 수밖에 없는 대원들은 익일 혹은 출동 후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치안행정의 일선을 담당하는 생활안전경찰활동이 종전의 전일제 내지 2교대제에서 3교대제가 가능했던 실례가 있기 때문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경비경찰은 생활안전경찰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즉 교육훈련이나 부대내에서의 일상적인 업무이외의 실질적인 경비활동이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무유무하게 많은 경비인력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적정한 경비인력이 산출될 수 있다. 결국 같은 중대에서도 소대별 교대제로 휴무나 휴식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4. 의료체계의 개선을 통한 의료권 보장

1) 취지

일반 사병들과는 달리 전·의경 대원들은 시위·집회 등 외부활동으로 인해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전·의경 경찰병원 치료 현황을 보면 외래환자의 경우 정원의 4.2배, 입원은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¹¹⁹⁾ 일반 개인병원이나 중대별 민간 지정 병원을 이용한 부상자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전·의경 부상자중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원의 경우 경찰병원에서의 치료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과 근거리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경상도, 전라도 등의 원거리 지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의경 부대내에 ‘공중보건의¹²⁰⁾를 의무관으로 운용할 수 있다¹²¹⁾’라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운용하는 경우는 없다.¹²²⁾ 그리고 ‘가벼운 부상이나 질환을 자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의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¹²³⁾’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어 전·의경의 의료체계에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의무관 확보 및 시위진압 현장 응급 의료진 배치 의무화

공익의무관을 상시 배치 운용함으로써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고¹²⁴⁾ 부상이 많은 전·의경 대원들에게는 적시적인 진료와 의료 상담 등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보장될 수 있다. 공익의무관은 순회 진료 및 질병 예방 등을 통해 전·의경들의 건강한 병영생활도 보장이 가

119)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48호, 2005. 7. p. 361.

120) 공중보건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중보건 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하는데, 현재는 전국의 모든 군보건소, 읍·면 보건지소뿐 아니라 산간벽지·오지, 낙도 특수지, 의료기관 단체, 의료원, 민간병원 등지에서 지역사회 의 1차 보건의료 및 예방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121)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70조 본문

12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의 경우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전·의경 부대에서 의무관으로 운용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법률 개정을 통해 군의관 파견근무 내지, 자체 선발하여 군 대체복무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123)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68조 본문

124) 시위·집회 현장에 의료진, 구급차등 응급의료 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전·의경 부상자와 시위참가자 중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불가능하여 실명, 사망 등 심각한 부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능하므로 지방경찰청 단위에 공익의무관을 의무적으로 배치 할 수 있는 강행규정을 제정하여 반드시 설치하도록 예산등 필요한 제반사항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규정대로 가벼운 부상이나 질환을 치료 할 수 있도록 의무실을 하루 빨리 설치 운영해야 한다.

3) 경찰병원의 지방분원 설치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복무하는 전·의경들은 서울의 경찰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복무 전·의경의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전라권 및 경상권에 경찰병원의 지방분원으로 설치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¹²⁵⁾. 의료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지방소재 전·의경 대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가 가능하며 지방에 근무하는 경찰직원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효과도 있으므로 지방에 경찰분원을 설치해야 한다.

4) 의료비 예산 증액과 민간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전·의경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는 월 5,400원으로서, 실질적인 치료비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다. 전·의경 대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비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전·의경 대원 50,000명중 60% 정도가 시위·집회 현장에 출동하고, 상당수가 경미한 부상부터 중상까지 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민영보험의 가입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시판되고 있는 민간보험의 경우 최소 가입비는 20,000원으로 한번 가입으로 제대까지 상해 등에 대해 보장해주고 있는데, 부대차원의 전액 대납 방식, 또는 일정액의 지원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 전·의경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5. 전·의경 인권보호법(안)의 제정

1) 취지

가. 전투경찰대설치법상의 벌칙조항에 대한 보완필요

현재 전·의경의 복무와 관련된 법규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기동대관리규칙, 방범순찰대관리규칙 등이 있으나, 이들 내용에 인사 및 복무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리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1982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내지 제10조에 벌칙조항을 삽입하여 복무이탈자의 처벌, 명령위반자, 상관폭행자, 상관면전모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이는 부대지휘권 확립을 위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전·의경 상호간의 폭행 및 가혹행위, 성폭력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¹²⁶⁾. 또 동법 제11조에는 위의 법제9조 내지 제10조의 위반행위도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조항만 보아도 지휘권 확립차원의 내용이지 대원 상호 간에 발행하는 구타 등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군조직에는 강력한 지휘권의 확립과 병상호 간에 발생하는 범죄를 차단

125) 참고로 군의 경우 전·후방 각 지역(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원주, 마산 등지)에 군병원을 설치하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장병들이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126) 전경구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1993.9.1제정, 경찰청예규제109호)에 의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다.

하기 위해 군무이탈죄, 근무태만죄, 항명죄, 폭행·협박·상해죄, 추행의 죄 등에 대하여 일반형법에 우선하는 특별형법이 운용되고 있으나 전·의경의 경우에는 특별형법의 제정 없이 일반형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동법의 보완보다는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벌의 위화효과의 제고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전·의경의 처벌도 엄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04년도를 기준으로 구타로 적발된 건수는 총 156건으로 이중 형사입건된 건수는 불과 6건(구속1건, 불구속5건)으로 형사입건율은 0.4%에 불과하다. 복무이탈의 경우는 전체 92건 중 형사입건은 23건(구속15건, 불구속8건)으로 형사입건율은 25%였으며, 부대 내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은 전무한 것으로 보아¹²⁷⁾ 법규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한 형벌의 특별예방과 일반예방효과가 극히 미흡한 실정인바 새로운 처벌법규의 제정과 엄정한 처벌을 통한 부대내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일반적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경찰당국은 전·의경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들어, 부대정비의 날이 있으나 실질적인 휴식의 보장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의 과다로 인한 피로누적 등 근로시간에 대한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부상자에 대한 의료혜택의 미비, 내무환경의 열악 등 전·의경의 일반적인 인권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전·의경 징계의 종류 중 영창제도¹²⁸⁾에 의한 인신구속의 인권침해가능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인권보호대책의 강구도 필요하다. 이에 전·의경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인권보호법(안)의 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2) 전·의경 인권보호법(안)의 기본방향과 기대효과

가. 기본방향과 내용

법안의 기본방향은 전·의경의 복무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상황에 따른 인권보호방안이 전반적으로 포함하면서 구타 등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인권의식함양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법안의 내용에는 인권침해행위를 한자에 대한 처벌조항(구타, 가혹행위, 성적괴롭힘 등), 복무이탈자의 처벌조항(군대내 군무이탈자에 준하는 처벌수준), 전의경 범죄피해자의 보호, 피해사실 인지시 신고의무, 인권전담조직설치, 근무 및 휴식시간의 보장, 휴가, 외출, 외박 등에 대한 보장, 의료권의 보장, 내무생활에 필요한 기본환경 등 일반적인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항과 경찰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제정한다.

나. 기대효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한 기대효과는 먼저, 가칭 전·의경 인권보호법의 제정은 전·의경의 인권

127) 국정감사자료(박찬숙의원 요구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 1건이 있었으나 2002년, 2003년, 2004년 7월현재 한건도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128)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제99조내지제110조 참조

보호의 당위성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형벌을 통한 일반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의경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6. 전·의경 인권보호 전담기구의 설치

1) 취지

가. 기존 경찰인권보호센터의 역할과 문제점

현재 경찰에서는 인권을 전담하는 기구로 2005.2.22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였다. 인권보호센터는 경찰청 수사국 소속으로 총경을 센터장으로 하여 인권보호계와 피해자대책계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상담요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의 주요업무는 경찰의 인권 정책, 제도 법령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조상 수사국에 소속되어 있어 경찰기능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인권보호 장치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청 차장의 직속으로 경무관급을 장으로 하는 인권보호관리관을 신설하는 안을 제기하기도 하였다.¹²⁹⁾ 현재 설치 운영되는 인권보호센터는 경찰의 수사나 조사과정에서 범죄피의자, 피해자, 유치인, 기타 사건관계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결국 이 기구는 전·의경의 인권보장과는 관련이 없는 제도이므로 전·의경의 인권보호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나. 독립된 인권보호전담기구의 필요

경찰당국은 전·의경의 사고예방을 위해 신상면담제도, 소원수리, 지도점검, 예방교육 및 자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의경 상호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규칙 제77조에서 이를 각급 지휘관의 임무로 규정하고 '전경구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이라는 특별규칙까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칙에 의할 때도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시키도록 지방경찰관서 및 소속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계획과 감독하도록 하거나, 동 행위관련자의 처벌 및 포상규정과 사고발생시의 보고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사고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이 전무하다. 또한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각종 사고유발자에 대한 징계 및 기율교육대의 경우도 기사고자에 대한 처벌 내지 재발방지에 목적이 있지 사전적 예방교육이 아니다. 결국 전·의경인권과 관련하여 교육 및 대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관리·감독할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전·의경 인권보호 전담기구의 설치

가. 전담기구의 편제와 기능

전·의경 인권보호까지 포함하는 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참모기구로 인권보호관리관이 신설된다면 그 소속하에 편제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인권보호관리관의 신설이 장기적인 경찰행정의 발전을 위한 과제이고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129) 안재경, “인권친화적인 경찰활동이 경찰의 미래다”, 경찰개혁 연속정책토론회 종합토론, 2005, pp. 46-47.

따라서 우선 경찰청 경비국 산하에 전·의경 인권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즉 경비국 산하에 ‘전·의경인권보호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설된 인권보호 전담기구가 경찰관만으로 운영된다면 각종 인권침해사건의 해결에 있어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의경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있는 자들로 가칭 ‘인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보호과’와 상호 균형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도 경비과에 ‘인권보호계’를 두어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면 될 것이다.

신설되는 ‘인권보호과’는 전·의경 인권에 관한 정책의 총괄,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단위의 인권보호전담기구의 지도·감독, 가칭 ‘인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도 등의 기능을 갖게 한다. 또한 가칭 ‘인권보호위원회’는 전·의경의 인권과 관련된 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자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전·의경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기능을 맡도록 한다.

나. 기대효과

이러한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은 전·의경인권보호의 중요성과 그 보호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일이다. 즉 기구의 설치만으로 경찰의 개혁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전·의경의 인권보호가 형식적인 관리·감독에 그쳤다면 신설되는 전담기구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7. 전·의경 전문상담관제의 상설화

1) 취지

가. 전문상담·면담능력자의 필요

전·의경의 부대적응이나 근무 중의 애로사항 등의 처리를 위해 상담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에 의하면 관심요구 전·의경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관리 등 제반 사고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신상면담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¹³⁰⁾ 1,2차 감독자는 월 2회, 3차감독자는 월 1회 신상면담 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상면담제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다. 우선 일선에서 전·의경을 지켜보아온 직속상관인 기간요원이 상담·면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이 전문상담능력을 가지느냐가 문제이다. 또한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대원들의 입장을 얼마나 존중하느냐하는 자세 또한 문제이다. 결국 제3의 입장에 있으면서 대원들이 당한 부당한 대우나 애로사항들을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상담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나. 정훈관의 역할을 포함한 새로운 상담관의 필요

전·의경의 각종 사고예방차원에서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61조 이하에서 정훈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정훈교육은 충성심, 국가관, 경찰정신을 기르고, 건전한 인성 및 윤리교육 등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함과

130)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73조 참조.

동시에 전·의경의 자체사고 방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정훈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훈관을 두고 정훈관을 보조하기 위해 정훈경을 두고 있다. 또한 정훈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정훈관이 전문적인 상담·면담능력은 물론 인권교육능력을 갖지 못한데 있다. 결국 기존의 정훈교육을 포함하여 전·의경의 인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도록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상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2) 전·의경 전문상담관제의 상설

가. 상담심리전문가의 상설화

모든 사고는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서 적합한 예방대책이 나올 수 있다. 철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인을 발견했어도 그 예방책을 모르거나 알아도 적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결국 수년간 각종 인권침해의 원인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신 청소년지도사, 상담·심리전문가, 기타사회교육가 등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상담심리전문가를 상근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방법은 전·의경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할 수는 장점이 있다.

나. 경목 등 종교가의 상설(전·의경 조직에 군종장교제도의 적용)

위에서 지적한대로 현재 전·의경들은 종교활동이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신앙상담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위촉 목사·승려·신부운영규칙에 의해 경목 등을 위촉하고 경목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¹³¹⁾ 전·의경조직에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군대는 군종장교를 두어 군의 종교집회나 병사들의 신앙 활동은 물론 신상상담 및 인격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의경조직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군의 군종장교제도와 유사한 가칭 ‘경종관(警宗官)제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와 각종 종교단체와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전·의경 종교담당관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상근직전문가의 활용과 병행하여 지역사회의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통하여 전·의경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훨씬 많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의경 어머니회 등과 같이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정신병원 전문의, 심리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각종 경찰학과/범죄학과/청소년학과/심리학과 교수 및 전문가 등 지역사회 자원들을 시간급으로 주 1회 혹은 월 1회 part-time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8. 전·의경 징계영창제도의 폐지

1) 취지

131) 경찰위촉목사·승려·신부운영규칙 참조.

최근 국회에서 군의 징계영창제도 폐지를 주요골자로 한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¹³²⁾ 의무소방대원의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국회 내에서 징계영창제도의 폐지논의가 있다. 이는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가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의 군사법개혁분야에서 징계영창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문이 그 발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전부터 군의 징계영창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¹³³⁾.

전·의경의 경우에도 군사병과 마찬가지로 징계영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영창, 근신이 있으며¹³⁴⁾, 징계입장자의 수는 2002년 349명, 2003년 301명 등 매년 약 300여명이 징계입장처분을 받고 있다¹³⁵⁾. 사실 헌법상 체포나 구속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권한이 없는 경찰지휘관이 내부징계의 하나로써 영창이라는 인신구속의 결정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경찰은 영창제도 외에 파면, 해임 등 전·의경의 기강확립과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징계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전근대적인 과잉형벌이자 자의적 구금의 원칙위반, 징계기준의 모호, 기소사건의 징계처분으로의 악용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의경의 징계영창제도는 인권보호적 관점에서 완전폐지하거나 인권침해의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2) 전·의경 징계영창제도의 폐지

전·의경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여 징계영창제를 완전히 없애고 합리적인 대체징계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의경의 경우 중앙경찰학교에 중앙기울교육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대체 징계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의경의 업무수행상 기강확립과 지휘권의 보장이라는 징계벌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 징계제도가 유일한 실효적 수단이라고 한다면, 전·의경의 징계영창제도를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징계영창제도의 공정성이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의 영창제도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에 있어 법률유보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벼운 비행의 경우 영창처분의 제한, 징계혐의자에 대한 고지·청문·변명 등의 방어기회의 보장 등이 전체되어야 하며, 가장 확실한 공정성 확보방법으로 판사에 의한 영창처분 집행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³⁶⁾.

9. 전·의경 계급제의 폐지

1) 취지

현재 전·의경의 계급은 초임계급인 이경으로부터 일경, 상경, 수경, 특경으로 구분한다.¹³⁷⁾ 일경은 입영일로부터 5월, 상경은 일경으로서 6월, 수경은 상경으로서 7월의 최저 복무기간이 주어진다. 특경은 수경 중 전투경찰대의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진급된다.¹³⁸⁾

132)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임종인의원 등56인, 2005. 4. 12.

133) 이행규,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한 제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통권제53호, 2003년 7/8월호에서 발췌.

134)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93조 내지 제102조.

135) 2004년 국정감사자료(박찬숙의원요구자료)

136)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군의 경우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군판사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137)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3조 참조.

그런데 이러한 계급제가 전·의경의 각종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조사결과에서도 구타나 가혹행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선임대원의 지시에 불응’이었다. ‘업무외적인 사역이 많다’거나 ‘휴게/자유시간이 부족하다’는 복무생활 불만족이유 등은 계급이 높은 선임대원들의 후임대원들에 대한 강압적 업무전가의 결과 들이다.

즉 구타나 가혹행위, 근무전가행위는 물론 심한 욕설이나 폭언, 금전각출, 귀대 시 사제 음식 등 물품반입 강요, 침상 선택시 우선권, 보급품착취, 성적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 각종 전·의경의 인권침해들은 상급자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계급제를 완전폐지하고 대원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동등한 업무량을 수행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 계급제의 완전폐지

계급제의 완전폐지는 서열의식과 그로 인한 폐해에서 기인하는 구타나 가혹행위, 자살, 복무이탈 등 각종 인권침해행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이다. 최근 군은 소위 ‘선진병영문화 VISION’의 하나로 계급간의 서열의식을 줄이고 동료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4계급을 2-3계급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군이 이러한 개선책을 고려중인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는 바탕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 2-3계급도 서열이긴 마찬가지다.

군과는 달리 전·의경조직은 적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며,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급제의 완전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제 전투경찰순경 중 의무경찰은 계급에도 불구하고 ‘의경’으로 호칭하도록 한 호칭규정¹³⁹⁾을 볼 때도 전·의경대원간의 계급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현실적으로 계급제가 주는 장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대원들 중 경험과 능력을 갖춘 소수 대표자를 선발하여 가용직책을 신설하여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10. 경비전문특기제의 신설(전·의경관리전담경찰)

1) 취지

초임경찰관의 보직규정에는 순경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관은 최하급 경찰기관에 보직하되, 수사 및 정보업무를 제외한 외근부서에 보직하도록 하고 강제하고 있다.¹⁴⁰⁾ 외근부서는 전투경찰대, 순찰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 기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등이므로, 결국 전·의경에 대한 관리기술이나 경험이 거의 전무한 신입순경이 기간요원으로 전·의경부대에 배치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리책임자인 기간요원의 부대별 평균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대부분이었다.¹⁴¹⁾ 특히 정기인사기간인 1월과 7월에 한꺼번에 많은 기간요원의 전·출입이 발생하므로 업무의 연속성, 관심대원에 대한 관리문제 등 부대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결국 전·의경 관리를 전무특기로 하고, 기간요원들의 부대별 근무기간을 확장하여 경비경찰의 특수성 및 전문성에 부합하도록 조직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경비전문특기제의 신설(전·의경관리전담경찰)

138)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139)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6조 참조.

140)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3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 31조 참조.

141) 간부 기간요원 복무기간 3년, 비간부 기간요원 2년

전·의경 관리의 효율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비경과와 경비전문특기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19조 제4호의 특수경과에 경비경과를 신설하고, 동 규칙 제20조 1항 2호에서 경비전문특기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경비경찰 특히 전·의경관리 기간요원은 전·의경의 교육, 관리 등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경비경과와 가칭 ‘전·의경관리 전문특기’ 등이 신설된다면 전·의경의 관리·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의경 출신자들을 경비경찰요원으로 활용한다면 전문능력의 활용 및 업무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특수경과와 전문특기로 임용된 기간요원들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2조 전보제한의 예외를 삭제하여 전·의경 부대에 일정기간 계속해서 근무하게 하여, 전·의경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1. 전·의경부대의 통합운용을 통한 근무여건의 개선

1) 취지

현재 전·의경 부대들이 분산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1980·90년대에 시위·집회등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에 따라 부대를 증설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다.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대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체육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약간의 운동공간이 있다 해도 대부분 외부민원인과 직원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대를 중대단위로 분산 운용함으로써 인하여 시위상황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부대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시위상황의 대처도 계획된 행사인 경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만큼 거리상의 제한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산운용으로 인한 과다근무와 휴식시간의 미보장, 운동공간의 협소 등 전·의경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이 확보할 수 없는 현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도심지 부대의 경우에는 통합운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광역시 관할 지방청의 기동대와 전경대의 통합운영

방순대의 경우 치안보조업무가 주 임무로써 경찰서 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으나, 시위진압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가 주 임무인 기동대와 전경대의 경우에는 부대유형별로 한 장소에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군대의 경우 대대단위로 부대를 배치하고 작전상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독립중대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의경부대도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인천,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광역시 도심에 산재해 있는 지방경찰청 관할 전·의경부대를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하여 집중 운용함으로써 전·의경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심지 부대의 통합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① 근무 및 휴식시간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인력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집회·시위 출동, 방법 순찰 등 필수 인원 외에는 휴식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자기 시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간확보가 가능하다.

도심에 있는 부대의 경우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변변한 운동장등의 체육시설이 없었고, 또한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러 부대가 한 곳으로 집중 운용된다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이 확보 될 수 있다. ③ 예산 절감을 통한 궁극적으로 전·의경의 복지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부대의 운영비를 일괄 운영하면 중복된 업무의 단일화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부대 생활품의 대량구매로 인한 예산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고 절감된 예산은 전·의경의 생활복지의 수준향상에 사용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전·의경 인권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 론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로 운영되는 우리의 전·의경 제도는 그 존재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성문법규를 근거로 합헌성을 주장하는 가 하면 ILO기준을 들어 위헌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 보고서는 창설 당시의 목적에서 벗어나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 현실을 부정하고 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 속에서 내무생활상, 업무수행상 겪게 되는 전·의경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전·의경제도의 폐지논란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전·의경의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의경 대원의 구타 및 가혹행위, 그로 인한 복무이탈과 자살사고의 발생, 알몸 사진의 인터넷 유포, 각종 시위현장에서의 부상 등에서 보듯이 전·의경의 복무 중 사고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군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발생율에 견주어 결코 적지 않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전·의경의 복무는 각종 시위진압작전에서의 투입, 야간방범순찰, 상황대기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군이 실전(實戰)없이 훈련 상황인 것에 비하면 전·의경의 상황은 급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전·의경의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이러한 특수한 조직상황과 업무특성 등으로 전·의경은 구타·가혹행위 등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이는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살·복무이탈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의경조직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전·의경의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통하여 인권상황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기본적인 인권침해상황은 물론이고 내무생활, 근무관계, 복지 및 의료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관한 것들이 망라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조사의 방법은 설문에 의한 조사와 현장실사를 통한 방문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설문의 구성과 방문조사의 항목은 관련 문헌과 전·의경에 관한 선행연구, 사전면접조사, 군의 인권상황과 관련된 선행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우선 설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의경의 인권상황을 파악하였다. ① 현재 전·의경의 불만요인, ② 전·의경의 근무관계와 내무생활 ③ 편의 및 복지시설, ④ 구타·가혹행위의 가해 및 피해경험 ⑤ 자살 및 복무이탈 ⑥ 부대 내의 남성간의 성적접촉 ⑦ 인권교육과 의식 및 종교활동 ⑧ 보급품과 대원개인의 사비지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진단하고 나름대로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다만 이 조사는 현재 복무 중에 있는 전·의경대원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인권상황의 현재적인 실태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이 복무 중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설문응답의 불성실과 왜곡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전·의경 조직 같은 특수조직의 조사에는 관계기관의 자료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친 연구진의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자료가 전무하여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조사는 현재 복무중인 전·의경을 조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설문·방문조사차 방문한 부대의 부분적인 자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1. 국내단행본

- 강성철 외, 새 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7.
강영훈·이규찬, 군사법개설, 서울: 세경문화사, 1996
경찰청, 전경사고 예방점검 지침서, 서울: 경찰청, 1990.
경찰청, 경찰반세기 그격동의 현장, 서울 : 대한문화사, 2001
경찰청,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1995-2004.
경찰청, 전경관리요령 -신지식 경찰관 육성-, 서울: 경찰청, 2000.
김영성, 인사행정기구, 충남대학교 출판부, 1991.
손수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와 사회, 서울: 아카데미북, 1998.
이상현, 범죄심리학, 서울 : 박영사, 2005.
_____, 소년비행학, 서울 : 박영사, 2005.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 법문사, 2001.
이윤호, 범죄학개론, 서울 : 박영사, 2005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8.
이황우외, 경찰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2003.
임준태, 범죄통제론, 서울 : 좋은세상, 2003.
조영갑, 한국 민군 관계론, 서울: 도서출판 한원, 1993.
최용렬, 경찰행정학, 서울 : 경찰공제회, 2005
홍두승, 한국군대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1996.

2. 국내논문

- 고기환, "육군 폭행사건의 실태와 예방대책",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권봉주, "군 조사기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육군헌병 조사기관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권지관, "경찰공무원의 근무형태와 사기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길진환, "군 폭행사건의 원인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김광재, "군 조직의 사기진작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김경래, "군 사고 예방을 위한 병사의 의식구조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보환, "경찰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 연구보고서, 2001.
- 김일제, "군사건의 원인분석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김진혁, "군 내에서 자살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1999.
- 문만재, "군대내에서의 구타에 관한 인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박기배, "군조직의 민주화에 따른 효율적인 리더쉽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박경훈, "군 사고의 특성과 그 예방에 관한 연구-인간관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박광치, "전경의 사기 및 의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전경을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박영조,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박평환, "청소년비행에 따른 군범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서창원, "군 조직문화 재정립을 통한 군사고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군조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서춘구, "경찰 공무원의 사기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손성환, "군범죄의 발생요인과 예방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신동운 외, "인권구속제도를 둘러싼 법 적용의 왜곡과 그 해결방안",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 106('98.5) pp.17-59
- 신성원, "전·의경 사기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북 지방경찰청 산하 전·의경을 중심으로" 원광대 대학원논문집, 2004.
- 유명현,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이경재, "경찰공무원의 사기 실태분석",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이상호, "경찰관 사기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1995.
- 이철구, "전·의경 사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임국민, "한국 경찰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장재혁, "경찰 공무원의 사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장태준, "군인의 자살사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전충현, "조직문화와 복지환경이 군인의 복무염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조태명, "군사고 발생원인 분석과 그 예방에 관한 연구 - 군기사고를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진준두, "육군의 폭행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채봉식, "군 조직내 병사들의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허남식, "군 사고예방을 위한 자치관 역할에 관한 연구 ", 종합적 사고 관리모델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3. 국내자료

경기지방경찰청, "진압경비실무교재", 경기도지방경찰청, 2002.

경찰사편찬위원회, 경찰50년사, 경찰청, 1995.

경찰종합학교, "경비실무", 경찰종합학교, 2004.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제48호", 경찰청, 2004.

경찰청, "제2의 도약 인권경찰"[비디오 녹화자료], 경찰청 멀티미디어

경찰청, 전경사고예방 : 자살과 자해(서울: 경찰청, 1999).

경찰청, "불법집회 시위사범 처리지침", 경찰청수사국, 2004

교도소인권모임,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2001.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길라잡이-경찰편-"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가인권위원회, "군내 구급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파악",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민일보, 2005년 10월 17일자. "전의경이 군대보다 편하다고?"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수사실무편람", 국방과학연구소, 1999.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국방부, 2001.

국방부, "02 국정감사요구자료(Ⅰ),(Ⅱ)", 국방부, 2002.

국방정신교육원, "바람직한 21세기 군대문화의 정립", 1997.

국정브리핑, 2005년 7월 19일

김종혁, "경찰", 월간중앙 통권185('91.6) pp.220-230

김광일, "경찰" 연구,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7,10('86.10), pp.250-264

김상균, "병영스트레스가 군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육군제3사관학교 충성대연구소, 2001.

김영길, "경찰도 학생도 아니었다", 월간조선. 7,1('86.1). pp.256-265

경찰고시사, "지·과출소에서의 외근 의무경찰관 업무처리요령: 근무중의 자체사고방지", 경찰고시 245('85.3) pp.63-69

나권일, "이리 채이고 저리 맞고" 전투경찰은 괴로워 : 시위 출동 등 격무에 구타 사고도 잇달아 전·의경 제도 폐지 등 검토 필요", 시사저널 통권548호(2000.4.27)

박선섭 외, "군사관련 법체계 정비방향 관한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구보고서, 1988.

서울지방경찰청, "집회시위대처메뉴얼",2004.

송기춘,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시민의신문/인권실천시민연대, 경찰개혁연속정책토론회제4차발표자료집, 2005.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의 활동보고서", 2002.

이계수,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군사와 치안의 착종과 민군관계의 전도, 공법연구제31집 제4호, 2003.

인권운동사랑방,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자료", 2001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전·의경 관리지침",인천지방경찰청,2005

인천지방경찰청, "부대적응을 위한 신입대원 부대생활 길라잡이", 2004

인천지방경찰청, "2005년도 전·의경 예산집행 기준"

울산지방경찰청, "전·의경 관리개선 종합대책"

울산지방경찰청, "선진 전의경 문화 추진계획 하달"

울산지방경찰청, "2005 전·의경 무궁화 포럼 실시 계획"

육군본부,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시행지침서", 1993.

육군본부, "병영생활지도지침서- 분대장 이상 초급간부용 -",1994

육군본부, "병영 스트레스 원인과 대책", 1999.

육군본부, "자살사고예방",2000

육군본부, "주요사고예방기획시리즈모음집-자살,교통,총기강력,폭행사건사례교훈-",1999

정균환, 경찰행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 : 동방기획, 1994

장영달,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실태와 인식", 2002 정기국회여론조사 결과분석 보고서, 2002.

정인환, "전·의경은 경찰봉이 서럽다" : 밤낮 없는 근무에 청춘시드는 최전선의 공권력, 깁간한 근무, 잡다한 임무 등에 자살·탈영 잇따라, 한겨레 21 통권437호 2002.

제75회 국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제114회 제10차 국회본회의 (1982년10월12~13일) 회의자료

최창동, "전투경찰제 개혁하고 위수령 폐기해야", 월간 말지 1998년 8월호

하경근, "역사의 순리가 아닌 진실의 은폐" 김훈중위 사망사건 진상규명 활동보고서, 1999.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2.

한국일보 2005년 6월29일자 '군에 영창 대신 구치소 설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폭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황지연, "전경치안보조요원 근무방법 (상)(중)(하), 경찰고시 198('81.4) pp.76-83

PD수첩 552회, "전·의경 내무반, 구타에 명들다" (주)문화방송 2003. 7.29

<외국문헌>

水島朝鏞(미즈시마 아사호), 現代軍事法制の研究, 日本評論社, 2000

Werner Scherer/ Richard Alff, Soldatengesetz, 7판, München, 2003

Wolfgang Steinlechner / Dieter Walz, Wehrpflichtgesetz, 6판, München, 2003

<인터넷 사이트>

독일 군사법자료사이트 <http://www.deutsches-wehrrecht.de>
평화헌법연구자 일본 미즈시마 아사호 교수의 홈페이지 <http://www.asaho.com>
J.Galtung교수의 홈페이지 <http://www.tranfscend.org/>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위원회 <http://www.friedenskooperative.de/>
Bonn에 있는 國際軍民轉換센터 <http://bicc.de/>
Bonn 평화연구 워크샵 <http://priub.org>
건설적 분쟁처리 연구센터 <http://berghof-center.org/>
비군사적·시민적 분쟁해결 <http://fridensdienst.de/konfliktbearbeitung/>
비폭력적인 사회방지를 위한 연대 <http://www.soziale-verteidigung.de/>
브란트 수상 기념 평화재단http://www.bicc.de/sef/mics/links_friden.html
독일의 징병거부단체http://www.bicc.de/sef/mics/links_friden.html
독일 평화단체네트워크 <http://www.friedenskooperative.de/home.htm>
비군사적 재난방지조직=연방기술지원대(THW) <http://www.thw.org/>
안티밀리터리즘<http://www.userpage.fu-berlin./deEami/>
국제평화여단(PBI) <http://www.peacebrigades.org/>
유럽안보협력기구 <http://www.osce.org/>
스위스 민방위대<http://www.protectioncivile.admin.ch/>
군대없는 스위스 <http://www.gsoa.ch/>
연방군연맹(군인조합) <http://www.dbwv.de/dbwv/interd.nsf/d/strarta>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1,list1,4.html>

<부록>

전·의경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지

본 설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천안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의경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개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은 없으며, 답변하신 내용은 오로지 통계적인 목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개인적인 의견이 타인에게 알려질 염려는 없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현재 전·의경으로 복무하는 동료들과 후배들을 위해서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천안대학교



질문을 잘 읽어 보시고 해당하는 번호에 V 혹은 O 해주시고, 기타 답변은 직접 내용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57-1. 구타행위의 유형	표기 (○)
① 발로차기(무릎 꿇어 앉혀놓고 발로 머리를 차고 쓰러지면 짓밟기)	
② 식판던지기(근무 시간 중 마음에 안든 후배기수를 저녁시간 대 설거지 사역으로 취사장에 불러 놓고 식판을 던지거나 때리는 구타행위)	
③ 릴레이식 구타(취침시간대 기간요원의 눈을 피해 조를 짜서 릴레이식으로 하급기수를 때리는 행위)	
④ 진압봉구타(훈련을 빙자하여 단봉, 중봉, 장봉 등 진압봉 길이 순서대로 구타하기)	
⑤ 수하나에 의한 구타(수하나(기울경)에 의한 신입대원의 훈련 시 근화로 차고 봉으로 머리 등 전신 구타행위)	
⑥ 출동버스 속 구타(출동버스 속에서 앉은 채로 두 다리를 들게 하거나 주먹으로 머리 때리기)	
⑦ 출동버스 속 천정봉 이용 구타(출동버스 속에서 일어서 부동자세를 취하게 하고는 버스천정의 손잡이나 봉을 잡고 이동하며 순차적으로 무차별 차거나 밟는 행위)	
⑧ 기타()	

57-2. 가혹행위의 유형	표기 (○)
① <u>알몸신고식</u> (전입 혹은 진급 신고시에 추억남기기 등을 이유로)	
② <u>찬물속 집어넣기</u> (겨울에 팬티차림으로 찬 물속에 들어가게 하기)	
③ <u>세면장 푸샵</u> (취약시간대 (02:00~04:00)에 세면장으로 불러 찬물 끼얹고 푸샵 실시)	
④ <u>부동자세 세우기</u> (신발 닦는 것을 빙자하여 오랫동안 부동자세 세우기)	
⑤ <u>고개 숙이고 있게 하기</u> (선임고참이 상급고참에게 지적받을 시 하급대원은 고개숙이고 있게 하기)	
⑥ <u>침상에서 다리·고개 들기</u> (취침시간대 하급기수를 침상에 드러눕게 한 후 다리와 고개를 들고 있게 하기)	
⑦ <u>근무전가행위</u> (불침번 등 야간근무 시 하급기수를 취약시간대 (02:00~04:00)에 배정한 후 교대를 늦게 하거나 안 해주는 근무전가 행위)	
⑧ <u>과도하게 근무세우기</u> (고참들의 스티커 등 업무를 하급기수에 전가하여 과도한 근무를 서게 하는 행위)	
⑨ <u>사적부담행위</u> (음식점이나 휴게실 출입 시 음식값을 하급기수에게 내게 하는 사적부담행위)	
⑩ <u>심한 욕설과 폭언행위</u> (출동버스 속에서 부동자세를 취하게 하고 움직이거나 눈을 돌리면 “눈깔을 파버린다”, “대가리를 갈아마신다” 등 심한 욕설과 폭언하는 행위)	
⑪ <u>오토바이자세</u> (출동버스 속에서 엉덩이를 들고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자세(일명 ‘호랑이자세’ 혹은 ‘오토바이자세’)를 하게 하는 행위)	
⑫ <u>금품빼앗기</u> (신임대원의 흉장을 고참이 절취하여 보관 후 흉장제작비로 고액의 금품을 빼앗는 행위)	
⑬ <u>보급품빼앗기</u> (신임대원의 군화 등 보급품을 빼앗는 행위)	
⑭ <u>귀대 시 음식물 반입강요</u> (하급기수가 휴가·외박 후 귀대 시 고가 혹은 맛있는 먹을거리를 사오게 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 괴롭히거나 왕따(집단따돌림)시키는 행위)	
⑮ <u>하급자 옷 빼앗기</u> (하급기수의 옷을 빌려 입고 외박 나가 집에 벗어 놓고 와서 돌려주지 않는 행위)	
⑯ <u>단체머리박기</u> (치약뚜껑에 머리박기, 머리박고 전·후진)	
⑰ <u>단체기합</u> (동료와 어깨 끼우고 좌우 굴리기, 앞뒤로 취침, 한강철교)	
⑱ <u>부동자세</u> (선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곳만 바라보게 하는 행위)	

유형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저 그렇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1	속옷				
2	근무복				
3	단화				
4	양말				
5	체육복				
6	운동화				
7	칫솔·치약				

87. 보급품(속옷, 근무복, 단화 등)의 착용감(품질)에 만족하십니까?

유형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속옷				
2	근무복				
3	단화				
4	양말				
5	체육복				
6	운동화				
7	칫솔·치약				

88. 귀하는 부대에서 지급되는 보급 및 수당 외에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비용(용돈)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5만원 미만 ② 5~10만원 ③ 10~15만원 ④ 15~20만원
 ⑤ 20~25만원 ⑥ 25~30만원 ⑦ 30만원 이상

89. 주 1회 '부대 휴무(정비)의 날'이 잘 보장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0. 부모·친지 등의 면회 신청 시 자유롭게 면회가 보장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1. 귀하는 병원 진료 시 개인 사비로 의료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92. 기타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가:
 나:
 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 검 표

항 목	내 용	작성요령
1. 대원 총원	정원() 현재원()	편제인원과 현재배치된인원
2. 기간간부의 수 (평균근무년수)	명(월)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와 전체평균 근무개월수
3. 건축년도	년	대원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의 건축년도
4. 시설형태	경찰서 내(), 독립건물(√)	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형태
5. 내무반 수(인원)	개 (내무반인원: 명)	대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전체 내무반의 수와 내무반평균인원
6. 내무반 넓이	(가로:)(세로:) 개인공간 (평)	내부반중에 한곳을 선정하여 실측
7. 내무반침상형태	2층침상() 단층침상()	
8. 내부반 냉·난방 시설	중앙냉·난방(), 독립냉·난방() (에어콘: 평형)(선풍기: 대)	
9. 휴게실	유 · 무	
10. 매 점	유 · 무	
11. PC방	유 · 무, 인터넷유무, 운용대수() 모니터(인치), 본체()	행정용 외에 PC방으로 설치된 곳 의 활용가능한 시설의 유무, 본체 는 586등 본체의 성능을 기재
12. 목욕탕(샤워실)	유 · 무, 샤워기(개), 온탕()냉탕()	온냉탕은 유무만 기재
13.세탁실	유 · 무, 세탁기(대) 찢순이(대)	
14.공중전화기	대	
15.체력 단련실	(평), 품목:	품목은 활용 가능한 헬스기구의 품목을 기재
16.오락시설	유 · 무, 탁구장, 당구장, 노래방	
17.식당(좌석수)	평, (석)	
18.정수기	유 (개) / 무	
19.부식 주문	주 / 월 회()	
20.이발소	유 · 무	
21.운동장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22.공부방	유 · 무	
23.면회실	유 · 무	
24.정훈관지정유무	유 · 무, 교육회수(), 정훈관의 계급()	교육회수는 월별회수를 기재
25. 부대유형	기동대(), 방순대(), 전경대()	조사한 부대의 유형에 체크(√)